

國富資料

NO. 1.

1973. 6.

國富統計調查便覽

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長期經濟開発計劃에 必要한 資本存在量을 把握하고자 1968年末을 基準으로 1969年에 当院과 韓國銀行・韓國產業銀行・中小企業銀行이 共同으로 第1次 国富統計調査를 實施 하였습니다.

其後 飛躍的인 經濟發展으로 우리나라의 經濟構造가 顯著하게 变模하였으므로 앞으로 第4次 經濟開発 5個年計劃에 必要한 国富資料를 產生하고자 第41次 統計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第2次 国富統計調査를 實施할 것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資料는 第1次 調査의 經驗을 土台로 第2次 国富統計調査의 計劃樹立을 더욱 効果적으로 推進하는데 利用할 수 있도록 国富의 意義・範圍・評価方法・調查方法・利用分野 등을 詳述하였으므로 調査關係者가 国富統計調査의 輪廓을 把握하고 業務에 參考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73年 6月 日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長 張新奎

目 次

머 리 말

第 1 章 総 説	3
第 1 節 国富의 意義	5
第 2 節 国富推計의 目的 및 資産의 範囲	10
第 3 節 国富統計의 沿革	17
第 2 章 国 富 的 評 價	27
第 1 節 資産의 評價	29
第 2 節 資產評価의 一般的 方法	61
第 3 節 資本資產의 評価	80
第 3 章 国富調査의 方向	111
第 1 節 日本의 国富調査	113
第 2 節 우리나라의 国富調査	136
第 4 章 国 富 的 利 用	173
第 1 節 国富利用의 方向	175
第 2 節 分析上 利用範囲	183
第 3 節 部門別 産業別利用面	188
第 4 節 国富의 社會計定	192
第 5 章 附 表	201
第 1 節 物価倍率	203
第 2 節 資産分類 및 耐用年数表	232
(附 錄)	243
第 1 次 国富統計調査 各部門別 調査概要	245

第 1 章 總 說

第1章 總 說

第1節 國富의 意義

1. 富의 概念

「富란 広意로 말하면 人間이 必要로 하는 財貨와 用役을 生產하는데 寄与하는 모든 生產的 資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自然的인 것과 人力에 依한 것을 모두 包括한다」(註: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刊 "Measuring the Nations wealth" P3 & 11)

따라서 富속에는 여러가지 形態의 物的 有形資源뿐 아니라 無形資產 나아가서는 金融債權까지 包括하게 된다. 그러나 富의 形態가 多樣한 反面에 모든 富는 하나의 重要한 性格을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富가 所得을 發生시키는데 寄与함으로써 價值創造의 源泉이 된다는 点이다. 富가 價值創造의 源泉이 된다는 것은 富가 未来에 所得을 發生시킬 수 있다는 点이며 이와 같은豫想所得은 現在의 貨幣單位로 換算할 수가 있다.

앞에서 富가 「生産的」 資源이라고 한 것도 이것을 뜻한 것이다며 따라서 "富란 停止된 狀態의 財源"이라는 点에서 "고임 (Stock)"이라고 말하며 所得이란 그 財源을 利用한 結果 產生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흐름 (Flow)"이라고 말하게 된다. 生產 또는 所得이 富를 使用함에는 富의 一部가 消耗되는 것이므로 實質的인 富의 變化를 알려면 이 消耗分을 除去하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곧 一定

時點에서의 純概念에 依한 富가 되며 그로써 發生되는 所得도 純概念으로 보자면 同一한 問題를勘案하여야 한다.

近代英國의 經濟學者인 해로드 (R.F.Harrod)는 富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富란 売買가 可能한 것, 다시 말하면 市場에서 貨幣化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個人의 富라고 하면 그가 事業目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土地, 建物, 機械, 資財, 現金 및 株券 其他 債權뿐 아니라 그의 自宅이라든가 家具, 美術骨董品, 書籍 其他 所藏品등의 販売意思가 없는 것 까지도 市場価値를 가지고 있으면 富가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富라고 하면 이를 価値를 總合한 것이 되며 一國의 富도 이와 같은 方法으로 計算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交換価値가 있는 것이면 모두 富라는 意味인데 実上 이와 같은 概念의 富가 實際 富의 研究에서 可能한 것인가 또는 意味가 있는가 하는 点에서 問題가 된다.

例를 들면 人的資源 즉 人間의 技術이나 지혜가 未来의 所得發生에 寄与하는 価値의 源泉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을 現在의 価値로 表示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아니라 人間을 經濟的인 価値로 나타낸다는 것은 人間性 本然에 비추어 困難한 것이다. 따라서 富의 實際 調查研究에서는 人的資源을 除外하게 된다.

그러면 富의 分析에 實際로 包括시켜야 할 限界는 무엇이냐 하는 問題가 題起되는 데 이것은 그 富의 調查目的이 調查時點 또는 調查主体등에 따라 各已相異한 것이므로 이를 明確하게 規定하는 것은 客觀性을 欠如하게 되지만 国富調査의 發展과 함께 一般的인 分析目的의 共通点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그 限界도 比較的 明示되어 가

고 있다.

2. 国富의 定義

一般的인 富의 概念을 考察하는 가운데 一国의 富를 構成하는 要素는 市場化할 수 있고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데 寄与하는 総資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나 国富調査 또는 国富統計라고 할 때 国富의 定義를前述한 바와 같은 一般的이고도 広範한 概念을 直接援用하는 것은 아니다. 国富調査를 実施하는 것은 国家間의 資源比較, 一国 国民經濟의 構造와 成長分析, 国民所得과의 関係 또는 開發計劃目的에 必要한 資源의 分布狀況등을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国富의 概念은 이와 같은 利用目的에 더욱 有用托록 이를 設定하고 있다.

즉 国富推計를 為하여 国富를 定義함에 있어서는 包括될 国富資產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国富資產은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產이어야 한다.

둘째 国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본 資本投下해야 한다.

세째 人間能力에 依하여 產生된 資產中 有形資產에 限한다. 단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国富에 包含시킨다.

먼저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產이란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嘗為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經濟主体에는勿論 家計나 企業, 政府 및 非營利團體까지 모두 包括하게 된다.

企業이 經濟活動을 為하여 保有하고 있는 財貨란 例를 들면 事務所라든가 工場, 機械設備, 備品, 車輛運搬具, 製品, 貯藏品 또는 原材

料等이 있을 것이며 家計가 經濟活動을 嘗為하기 為한 것이라면 生計를 目的으로 하는 것, 즉 住宅, 家具, 衣類등을 말한다.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為한 手段으로 財貨를 取得하려면 資金 또는 資本이 所要된다. 이렇게 볼 때 經濟의 意味를 갖는 資產이란 各 經濟單位가 經濟活動을 為하여 投下한 資本을 具体化 된 形態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骨董品이나 書畫등의 芸術品, 天然記念物 또는 其他 文化財가 價值 (Value) 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 없으나 그 價值를 經濟的 價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除外하게 된다. 오늘날 이와 같은 物品도 商品化되고 더우기 그 去來가 企業化됨으로써 交換可能商品으로서의 財貨의 性格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이 事実이지만 그와 같은 價值는 評価上에서 客觀性을 欠如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價值創造를 為하여 投下된 資本이 國民經濟 全體面에서 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經濟的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產이란 生產活動에 直接關係가 있는 資產과 國民生活을 嘗為함에 必要한 財貨라고 要約할 수 있다.

國民經濟란 概念은 個別經濟와 区分됨을 意味하는 데 그것은 個別經濟에서 資產으로 看做되는 것도 國民經濟面에서 볼 때는 資產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個人이 購入所藏하고 있는 財化가 모두 國富資產에 包括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國富에 包括될 資產은 그 資產을 取得키 為한 資本投下가 國民經濟面에서의 資本投下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国民經濟란 概念은 또 한가지의 意味를 内包하고 있는 데 그것은 国富所在의 範圍를 規定한 것으로서 国富에 包括될 資產의 所在는 經濟活動의 本拠을 国民經濟内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国富는 国內의 經濟單位가 所有하는 資產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国내의 經濟單位는 国内의 居住者를 뜻하는데 国内居住者所有의 資產이란 所在面에서 볼 때 国内에 있을 수도 있고 国外에 있을 수도 있다. 国内居住者資產이 国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反對로 外國居住者의 資產이 国内에 있을 수 있음을 뜻하며 国家와 国家間의 関係로 볼 때 前者は 對外에 대한 債權이 되어 国富에 加算하게 되고 後者は 對外負債가 되어 除外하게 된다.

세째로 国富에 包含된 資產은 人間能力의 產物中 有形資產에 限한다고 하였는데 먼저 產物이라는 것은 그 資產이 人力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야 된다는 말인데 具体的으로는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도 一国의 富를 構成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이것은 人力이 미치지 않은 것이고 資本投下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具体化된 經濟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埋立地나 干拓地가 이들과 区分되는 것은 勞動力과 資本을 投下한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能力의 產物이란 人力으로 再生産이 可能함을 뜻하므로 国富資產은 再生産可能資產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다음에 国富에 包含할 資產은 有形資產에 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実体的인 資產만이 国富에 計上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地上権, 鉱業権, 水利 및 嘗業権의 無形資產은 計上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資產은 私企業이나 또는 個別 經濟面에서 볼 때 모두가 資產임에는 틀림없지만 国富調査에 包括시킬 資產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對外的인 関係에서 國家와 國家間에 存在하는 無形資產은 國民經濟全体의 資產으로 看做하여 国富에 包含시킨다. 즉 無形資產은 對外關係에 限하여 例外로 한다.

以上에서 国富調査를 함에 있어 그에 包括될 資產의 性格 또는 限界를 中心으로 国富의 定義를 考察하여 보았는데 이것을 다시 要約하여 보면 「國富란 國내에 所在하는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產의 總額에 對外純債權을 合한 國民資產의 純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国富調査를 為하여 定義된 이와 같은 国富의 概念이 반드시 原則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約束에 不過함에 留意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国富를 調査함에 있어서도 上記와 같은 概念은 반드시 適用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資料事情이라든가 調査目的에 따라 그 包括範圍를 中心으로 한 새로운 概念設定도 可能한 것이다.

第2節 国富推計의 目的 및 資產의 範圍

1. 国富推計의 目的

国富推計의 目的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學者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区分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主로 Kuznets의 說에 따라 다음과의 4個項目으로 要約하겠다.

첫째, 一定時期에 있어서 여러나라의 国力의 國際比較를 하기 위

한 것이다. 여기서 国力이라는 概念은 正常的인 經濟活動에 関聯 시켜 規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戰力등은 正常經濟活動에 関聯된 經濟的 国力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한 国家에 있어서 異時點間의 富의 蓄積程度를 測定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結局 어떤 期間과 期間中의 資本蓄積의 速度 (Tempo)를 把握하려는 것이다.

세째, 富의 存在量과 國民所得과의 関係를 解明하기 위함이다.

富 (Stock)는 所得 (Flow)의 源泉으로써 이 両者間に 어떠한 関係가 있는지를 分析하고자 하는 것인데 最近 이 両者の 関係에 있어서 특히 注目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資本係數의 相對的 安定性이라는 것이다.

네째, 国富의 種類別構成 및 富의 分布를 把握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国富를 生產財와 消費財, 耐久財와 非耐久財등으로 区分 把握할 수도 있으며 富의 所有者別로 企業保有의 資產, 家計保有의 財產등으로도 把握하여 그 變動推勢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2. 国富推計上의 資產範囲

国富推計의 測定範囲는 그 推計目的에 依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国富의 測定目的이 明確하게 決定되지 않는限 그의 測定範囲를 具体적으로 規定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国富의 國際比較라는 目的보다도 国富의 構造를 把握하고 長期的인 經濟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目的을

둔다는 観点에서 国富의 推計範囲를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產에 局限시키고 있다.

再生産不可能한 有形資產인 土地, 自然林, 埋藏鉱物等 까지를 包含하는 国富推計는 国力의 國際比較의 利用에는 適合할지 모르나 国富構造의 解明이나 經濟政策의 立案을 위한 基礎資料로는 適當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一般的으로 国富의 推計範囲를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產에 限定시키고 있는 것은 国民所得 乃至 国民生産物을 生産하기 위한 源泉으로서의 国富의 把握 즉 資本蓄積과의 関聯에서 国富問題가 重要視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国富로서의 資產의 概念

1) 国富에 包含되는 資產은 어디까지나 經濟的 意味의 資產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企業이나 家計등의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嘗為하기 為한 手段으로서의 財貨 즉 經濟的 価値를 가지고 있는 物体를 말한다. 例를 들면 企業이 企業活動을 為하여 所有하고 있는 工場, 機械, 自動車, 原料, 製品, 貯藏品등이며 家計에 있어서는 生活을 為한 住宅, 家具, 衣類등이 여기에 該當되는 것이다.

따라서 芸術品 天然記念物과 같은 文化財, 骨董品, 図書등은 經濟的 活動과는 無關한 存在이기 때문에 經濟的 資產에는 包含되지 않는다. 그러나 上記 骨董品, 図書등이 經濟的 意味로서의 資產, 換言하면 商店에서의 去來對象이 될 경우에는 国富로서 捕促되어 진다.

2) 国富에 包含되는 資產은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嘗為하기 為하여 投資한 資本의 具體的 形態라야 한다. 이것은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為한 手段으로써 財貨를 所有하여야 하고 이들 財貨의 取得을 為하여는 純粹한 資本投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国富에 包含되는 資產은 人力으로 만들어진 再生産可能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土地, 天然資源등은 含包되지 않는 것이 原則이나 土地에도 開墾, 干拓등에 依한 造成된 土地나 改良에 依한 土地의 改良部分은 그 投下資本金만큼 國富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天然의 土地와 改良된 土地의 區分은 實際로 매우 어렵다.

한편 埋藏鉱物, 天然林과 같은 天然資源도 土地와 같이 人力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國富에서 除外되어 開發된 鉱石, 原木으로 採掘, 採伐生產된 것은 國富에 含包하고 있다.

3) 國富에 含包되는 資產은 國民經濟라는 全體立場에서의 資產으로 보아야 한다.

즉 私經濟面으로는 資產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國民經濟 全體的立場에서는 資產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企業會計에 있어서 貸借對照表의 借邊에 企業資產을 表示하고 있는 것과 같이 各 經濟單位의 資產도 全國民에 對하여 總括的으로 把握한 뒤에 國民經濟 全體에 關하여 考慮된 國民貸借對照表에 表示되는 資產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鉱業權, 工業所有權과 같은 無形固定資產은 私經濟에 있어서는 그의 獨占的 權利能力으로 보아 資產으로 取扱될 수도 있으나 國民經濟 全體로 부터 생각한다면 資產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 理由로 營業權, Good - will, 地上權등도 國富에 含包되지 않는다.

단지 이들 權利關係가 國民經濟의 範疇속에서 停止하고 있는 限 國富로서 取扱되지는 못하나 國民經濟 相互間 즉 對外的 關係가

發生한 경우에는 그 國民經濟全体의 資產으로서 國富에 含包되는 것이다.

즉 無形資產은 對外的 關係를 가지지 않는 限 國富로서 取扱이 되는 않는다.

나. 國富에 含包되는 資產

國富에 含包되는 資產과 除外하여야 할 資產은 다음과 같다

含包되는 資產	除外되는 資產
A. 固定資產	A. 非經濟財
I. 建物	芸術品, 天然記念物, 骨董品, 圖書
(1) 住宅	
(2) 非住宅	
II. 構築物	
(1) 交通施設	
(2) 治水灌溉施設	
(3) 其他	
III. 機械 및 裝置	
(1) 動力設備	
(2) 作業設備	
(3) 運搬設備	
(4) 其他	B. 再生産不能財
IV. 船舶	土地, 埋藏鉱物, 天然林等의 天然資源(但, 開発毛鉱石)
(1) 鋼船	

含包되는 資產	除外되는 資產
(2) 木船	原本은 國富로 含包)
(3) 無動力船	
(4) 其他	
V. 車輛 및 運搬具	C. 私經濟的 資產
(1) 鐵道車輛	鉱業權, 工業所有權, 営業權, Good-will, 地上權(但 無形資產 이라도 對外的 關係를 가지는 것 은 國富로 含包)
(2) 航空機	
(3) 自動車	
(4) 其他의 諸車	
VI. 工具, 機器具 및 備品	
VII. 造成土地, 改良土地	
VIII. 建設仮計定	註. 이번 國富統計調查에서 土地는 原則的으로 國富에서 除外하는 方向으로 土地資產의 比重이 크 므로 (特히 農業分野)現在 研究 檢計中에 있음
IX. 大動植物	
X. 一般世帯의 所藏財貨	
XI. 其他	
B. 流動資產	
I. 在庫資產	
(1) 原料	
(2) 半製品 및 在工品	
(3) 完成品 및 商品	
C. 對外資產 負債의 差額	

다. 國富의 所在範圍

國富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国民經濟가 全體
로서 가지는 純粹한 資產 즉 具體的으로는 各個의 經濟單位體가
所有하고 있는 純粹한 資產의 總計를 말한다.

그러면 現實的으로는 國富로서의 資產의 所在 즉 國內에 있는

資產은 全部 國富에 合包될 것인가 또는 國外에 있는 資產은 全部 國富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인가를 明確히 規定하여 주어야 할必要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國富의 所在範圍는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純粹한 資產의 合計를 말한다.

즉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의 國內에 있는 資產뿐만 아니라 國外에 있는 資產도 全部 國富에 合包시키는 것이고, 國內에 있는 資產이라도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 所有하는 資產은 全部 除外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國內에 있는 모든 資產에 國內居住者가 所有하는 對外資產을 더하고 外國居住者의 對外資產을 빼는 結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國富의 所在範圍에 對한 區分을 좀 더 明確히 하기 위하여 그 基準이 되는 居住者의 概念을 밝혀 둘 必要가 있다.

居住者란 個人은 勿論 法人, 政府機關 民間非營利團體와 같은 모든 經濟主体를 包括하는 概念이다.

居住者와 非居住者를 區分하는 一般的의 基準은 國籍에 關係없이

- ① 經濟主体의 永住地
- ② 經濟主体의 業務遂行地
- ③ 顧僱主의 永住地

등 3個 條件을 設定하고 이 中 2個 以上의 條件을 滿足시키는 경우 이론上 多數決 原則에 따라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를 判斷한다

그러나 實際的의 分類作業에 있어서는 그 限界가 暫昧한 경우가 많음은 勿論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領土內에 있는 非居住者的 資產은 우리나라의 對外負債가 되므로 國富에서 除外되고 우리나라居住者가 外國領域內에 所有하고 있는 資產은 對外資產으로 써 國富에 合包하게 되는 것이다.

第3節 国富統計의 年革

1. 国富統計의 起源

国富統計調査의 始源은 17世紀末 英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윌리암 페티卿 (W. Petty) 이 1679年의 英国 国富를 2億 5千万파운드로 計算 發表한 것이 国富調査의 起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W. Petty가 計算한 国富의 内訳을 보면 土地 144 百만파운드, 家屋 30 百万파운드, 船舶 3 百万파운드, 牛馬其他 36 百万파운드로 土地가 總国富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W. Petty의 調査에 이어 킹 (G. King), 데카 (M. Decker), 베크 (H. Beeke) 등의 經濟 및 統計学者가 英国의 国富를 調査하였으며 1850年에는 처음으로 英国政府가 公式的인 国富調査를 實施하였다.

그 밖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이태리 등 諸國도 前後하여 国富를 調査發表하게 되었으며 1920~30年 사이는 그밖의 各国에서도 国民所得推計와 함께 国富調査를 實施함으로써 널리 普及하게 되었다.

2. 国富統計의 發展

17世紀末 英国의 Petty에 起源을 둔 国富統計는 그以後 各国의 政府 및 經濟学者와 統計学者들에 依하여 繼承發展하게 되었는데 主로 論議의 対象이 되고 問題된 点은 国富統計의 対象,範圍, 調査의 方法論, 나아가서는 利用目的에 関한 것 등이었다. 対象範圍에 関한 問題는 国家資產의 物質性에 関한 것과 交換可

能性에 関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前者は 곧 非物質性 財貨 즉 各種의 權利가 調査對象에서 반드시 除外되어야 하는가 하는 点과 人間의 才能을 어떻게 取扱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國富資產의 交換可能性 問題는 곧 資產의 價值論에 関한 것인데 初期만 하여도 主觀的 價值論이 支配적이었으므로 使用價值와 抽象的 價值와의 区分이 明確히 될 수 없었다.

價值가 内包하고 있는 移転性 問題와 稀少性 및 効用性 問題는 論議의 中心이 되어 왔다. Petty는 人間의 價值를 貨幣로 評価하였는데 그것은 富로 부터 發生되는 所得을 勞動價值라 보고 이것을 資本化한 것이다.

즉 Petty는 2億5千万파운드의 物的 国富를 算出한 다음 그로부터 發生되는 年間의 總收入을 計上하고 同收入에서 年間 總消費를 除하여 나온 것을 勞動價值라 看做하고 이것을 다시 資本으로 還元하여 英国人을 4億17百万파운드로 評価한 것이다.

人間價值을 評価한 Petty의 計算이 興味로운 方法임에는 틀림 없다. 富와 人間과의 関係를 볼 때 人間의 能力은 價值發生의 源泉으로 되며 富에 人間의 能力이 作用하여 創出되는 所得은 그一部가 새로운 富를 形成하여 既存의 富에 加算된다는 見地에서는 이와같은 人間價值의 計算이 試圖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国富資產으로서의 人間價值은 아닌 것이다. 人間의 才能, 技術 또는 人間價值增大를 為하여 投入된 資本 즉 教育費 支出등에 대하여는 이들을 資產으로 看做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一般的의 見解이다.

調査方法面에서 볼 때 W. Petty에 起源을 둔 英国의 国富調查가 物的方法인 데 反하여 歐洲大陸諸國의 調査는 人的方法을 取했다는 点에 留意하여야 한다.

즉 Petty의 調査는 国富를 土地, 家屋, 船舶, 家畜類 貨幣用地金物品 및 商品 등으로 大別하고 각 項目的 個個 単価를 計算하고 이에 總数量을 適用하여 国富總額을 算出한 것이다.

Petty의 物的方法은 킹 (G. King)에 이르러 大幅的인 改善을 보였다.

이와같이 英国의 物的方法에 對하여 이태리, 도이취, 오스트리아 등이 大陸諸國에서는 人的方法으로 国富를 調査하였는데 여기서 利用된 資料는 主로 財產稅統計와 相統稅統計였다. 財產稅統計를 利用한 具體的인 例는 독일의 휠헤릭히가 調査한 1911年 독일 国富調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프로시아 課稅財產總額 1,040 億마르크를 基礎로 하여 脱稅財產額을 課稅財產의 20%로 보고 免稅點以下 財產額 155 億마르크 非課稅財產額 150 億마르크 合計 1,553 億 마르크를 若干 늘여 同年の 프로시아 私人財產總額을 1,600 億마르크로 推算하여 여기서 프로시아의 人口 1人當財產을 4,000 마르크로 計算하였다.

그는 다시 이 1人當 財產에 独逸總人口를 곱하여 独逸私人財產總額을 2,600 億마르크로 算出하였다.

여기서 官公純財產 250 億마르크를 合算하여 独逸의 国富를 2,850 億마르크로 算出하였다.

그 다음에 火災保險統計와 余他 資料에 依하여 求한 国富
3,310 ~ 3,370 億마르크와 앞에서 算出한 2,850 億마르크와의 平
均值인 3,100 億마르크를 1911 年의 独逸国富額으로 發表하였다.
国富의 概念問題라든가 調査의 方法論 등에 對하여 學者間에 伝
統的인 論議가 歐洲諸國에서 繼續되어 온 가운데 新大陸인 美州
에서는 보다 實質的인 面에서 国富가 調査되고 發展되었다.
여기서 美國의 国富統計小史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美國의 国富調査는 大體로 1850 ~ 1922 年間과 1922 年以後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最初의 調査인 1850 年統計를 為始하여 前期間中에는 都合 9 回
의 国富調査가 實施되었으나 모두가 概算資料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當時의 統計가 調査方法面에서나 對象資產을 規定함
에 있어 単純하였다는데 緯由한다.

즉 1850 年과 60 年 및 70 年의 3 個調査는 그 對象範圍를
"課稅對象이 되는 모든 動產과 不動產"으로 하고 推計節次를 보
면 두 段階로 要約되는데 먼저 各郡 (Counties) 에서 모든 動
產과 不動產의 課稅標準額을 國勢調查局에 報告도록 하고 다음에
地方法務官들을 通하여 別途로 調査한 市価와 課稅標準額과의 平均
比率을 이에 適用하여 市価를 評価하였다.

1970 年調査의 경우에는 課稅資料에서 누락된 免稅資產의 価額을
加算하여 누기 위하여 地方法務官들의 판단에 따른 調整이 있었다.

이 와같은 初期調査의 利点은 첫째로 市価에 依한 資產評価를
期하였다는 点과 둘째로 洲單位 (1850 年 및 60 年) 또는 郡單位

(1870年 및 80年)로 調査되었다는 点을 들 수 있는 反面에 그들 調査가 内包하는 欠点으로는 첫째로 免稅資產에 関한 基礎資料의 欠如로 国富로 捕捉되지 못한 有形資產이 있었다는 点과 둘째로 地方稅吏의 課稅標準鑑定上 劇一性을 期하기 어렵다는 事夷나아가서는 動產의 分類上 各郡間에 統一性을 欠如하였다라는 点에서 세째로 郡에 따라서는 抵當權과 같은 無形資產까지 調査하였다는 事實이다.

1880年度 調査時には 不動產의 評価에 새로운 接近方法을 導入함으로써 調査方法上 약간의 進展이 있었다고 보겠다.

즉 課稅標準額을 市価로 換算하는데 適用한 比率을 従来는 単純히 地方法務官의 報告資料로 하였으나 이때 부터는 中央의 国勢調査局이 直接推定하여 그것을 利用하기에 이를 것이다.

이와같은 初期 美国의 国勢調査는 모두가 特別法에 依拠 實施되었으며 1902年 国勢調査法의 制定以後는 同法에 依拠하였다.

연방通商委員會 (Federal Trade Commission) 가 主管이 되어 實施한 1922年 国勢調査는 調査對象範囲의 策定이라든가 基礎資料利用面에서 劇期的인 進展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自然土地와 開墾土地 (造成土地) 와의 分離 免稅對象不動產의 機極的인 捕捉方法을 適用하였으며 評価問題에서는 帳簿價格을 經常再調達 価格으로 換算하는 方法을 導入하였다.

聯邦通商委의 調査에 이어 対象年度를 1922, 30, 38年으로 하여 實施한 Robert R. Doane의 調査는 美国의 国富調査를 더욱 體

系化 시키는데 공헌한 바가 크다.

Doane의 調査結果는 "美國 国富의 構造 (The Anatomy of American Wealth)"로 發表되었다.

그 以後 国民經濟調查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後援을 얻어 Alvin B.Tostlebe , Leo Grelber , David Blank , Simon Kuznets , Daniel Creamer등의 調査가 美国国富推計의 精度向上에 寄与하였다.

특히 Raymond Gold Smith는 그의 著 "A Perpetual Inventory Wealth"에서 恒久在物調查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 提示함으로써 国富의 評価方法上 새로운 方案을 創案하여 오늘날 各国에서 利用되고 있다.

즉 골드 스미스의 恒久在物調查法은 国富의 調査方法 選定에 確固한 基準을 提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国富가 国民所得의 一定分 즉 흐름으로서의 国民所得中 投資支出이 累積된것이 곧 国富라 보고 이를 追跡捕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国民所得과 国富는 投資와 資本消耗 및 新投資 등 3段階循環過程이 繼続되는 面에서 両者는 不可分의 関係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国富에 包括될 資產의 性格에 對하여도 従来 繼續되어온 論爭을 배제하고 国富資產은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產 (Reproducible Tangible Asset) 으로 規定하였다.

이렇게 볼 때 欧洲에 起源을 두고 發展되어 온 國富統計調查는 美國의 글드. 스미스에 와서 더욱 体系化되고 開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아에 있어서는 日本의 國富調查가 상당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즉 日本의 國富調查는 1841年度부터 實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當時 여러 日本 學者들과 外國의 經濟學者들이 各處에 分散되어 있는 既存資料를 概括的으로 審集推計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 公式調查라고는 볼 수 없다. 体系的인 國富調查는 日本銀行이 調査한 1905年(明治38年)의 國富調查라고 하겠다.

日本銀行은 繼續해서 1910年과 17년의 國富를 調査 發表하였으며 그 다음은 國勢院 主管으로 1913年과 1919年度를 調査하고 1924. 30. 35年度는 内閣統計局이 調査함으로써 戰前까지 8回의 公式推計가 있었다. 當時의 調査資產의 内容을 보면 土地. 天然森林資源 및 地下資源, 生產者保有財. 家計保有財. 金. 骨董品. 圖書館備置書籍, 博物館所藏美術品, 其他 審集品 및 對外純債權 등으로 되어 있어 國富의 概念規定을 넓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5年 調査는 國民所得推計와 併行實施하였는데 當時의 國民所得推計는 單純한 生產接近方法에 依拠한 매우 原始的인 것이었으므로 國富推計도 그 精度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후 大戰으로 因하여 日本의 國富推計는 1955年까지 중단되었으나 終戰直後 戰災에 依한 損失調查가 한번 實施되었다.

즉 1947年에 經濟安定委員會(現 經濟企劃廳)는 「太平洋戰爭의

戰爭被害調查를 実施. 發表하였는데 이것은 日本의 戰中 國富變化研究에 重要的 資料가 되고 있다.

經濟企劃廳의 主管으로 實施된 1955 年 日本의 國富調查는 1953 年度부터 須備作業을 하여 1957 年度에 最後結果가 나왔는데 이 調查는 그 規模에 있어서 가장 크고 調查의 方法과 國富의 概念設定등에 있어서 日本國富調查史上 가장 精度를 期한 調査라고 볼 수 있다. 本 調査를 為하여 日本政府는 1953 年에 計定이나 會計學等에 조예가 깊은 政府官吏, 學者 및 民間人 都合 24 名의 會員으로 構成된 國富調查會議를 構成하고 基礎資料의 集集. 分析 國富의 定義, 調査의 方法論 등 廣範圍한 研究를 實施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國富調查會議의 建議事項中 一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55 年 調査의 主目的은 國民所得과 國富와의 關係를 明白히 하고 政府의 經濟政策이나 計劃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過去와 같이 國富調查의 目的을 여러가지로 設定하여 애매한 것이 되지 않도록 集約的인 目的으로 轉換하여야 한다.

둘째 調査에 包括될 資產은 經濟活動에 依한 產物이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日本國 居住者의 所有物이어야 한다. 즉 國富資產은 U N의 "國民計定体系와 그 附表(S. N. A)"에서 定義된 資產에 限한다.

세째 資產의 評價는 徒來 報告資料를 集計함에 不過한 主觀的인 方法으로 할 것이 아니라 客觀的인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즉 再調達價格으로 評價하여 야 한다.

네째 調査結果는 S.N.A의 勸告案과 같이 產業別로 區分하여 야 한다.

다섯째 調査는 使用者別 基準에 依할 것이 아니라 所有者 基準에 依하여야 한다.

여섯째 劃一的인 資產分類方式을 制定하여 야 한다.

일곱째 家計의 福祉生活程度變化를 調査하기 위하여 家計保有 耐久財도 調査하지만 最終統計表에서는 이를 區分 整理한다.

國富資產의 概念과 資產의 評價方法 및 調査의 目的을 明示한 위와같은 國富調查會議의 建議事項은 1955年 日本의 國富調查가 크게 發展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55年 調査의 規模를 參與人員과 予算額으로 보면 監督者級이 800名. 調査員이 7,952名이고 最終集計에 勤員된 人員은 延人員 140,000名에 達하며 總經費는 134.4百萬圓에 이르렀다. 1955年 調査의 具體的인 事項은 第3章에서 詳細히 考察될 것이다.

1955年 調査에 이은 1960年度 調査는 지난 5年間의 國富資產變化推移를 보기 為하여 實施된 것인데 家計部門(건축물은例外로 調査함)이 除外된 것 以外는 1955年調查와 同一한 概念, 分類方式을 따랐다.

다음에 1965年度에는 國民經濟計算体系 整備의 一環으로 企業部門의 有形固定資產만을 調査한 特別調查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資產의 調査를 純概念과 總概念으로 區分하였다. 이 調査는 企業을 國營, 地方公營, 法人 및 個人企業으로 4大別하고 國營企業에는

14 個의 特別會計 (造弊局, 印刷廠等) 와 13 個의 政府關係機關 (專賣公社, 國有鐵道等) 과 其他 政府企業 (住宅, 道路公團等) 14 個를
包含시켜 自計申告에 依한 全數調查를 하고 地方公營과 法人 및
個人企業에 對하여는 各各 標本調查에 依하였다.

第 2 章 國 富 の 評 價

第 2 章 国富의 評価

第 1 節 資産評価

1. 資産評価의 意義

資產評価 (Valuation) 란, 一定時点에서 企業이나 經濟的 価値를 所有한 諸單位가 所有하고 있는 諸資產의 經濟的 価値를 評価時点의 貨幣価値로 評価하는 것이다.

評価時期에 따라 一般企業에서는 取得価格으로 評価되는 開業時의 評価와 廃却時価 또는 処分価格으로 評価되는 破産 및 清算時의 評価, 그리고 収益力이 基礎가 되는 合併 및 讓渡時의 評価, 繼續企業에 있어서 決算期의 評価가 있다.

또한 再評価法에 依한 評価와 任意의 評価, 資產單位別 評価와 繼續企業全体를 單位로 하는 評価等 利用者の 目的, 評価時期에 따라 많은 評価方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評価對象의 中心이 되는 것은 會計學上의 評価와 直結되므로 會計學上의 評価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會計學의 主流를 形成하는 原価主義理論에 基礎한 資產評価는 企業實體 (The Business Entity) 概念을 背景으로 한 繼續企業 (The going concern, 企業은 일단 設立하면 企業体 自体가 株主나 其他 出資者와는 別個의 独立된 人格으로서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永続한다는 仮定) 的 基本的 仮定을 認定하는 限 資產의 經

濟的 價值를 評定하는 것이 아니라 正確한 期間損益計算必要上
繼續되는 営業活動中 이미 消滅한 原價와 살아 남은 原價를 区
別 計算하여 消滅한 原價는 期間費用에 살아 남은 原價는 資產
에 計上하는 것이다.

會計理論에서 先給費用과 建物, 機械等의 有形固定資產을 同一한
原價要所平을로 解析하는 理由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節次에 依하면 販売가 目的이 아닌 永續되는 数期間의
營業活動에 依하여 그 原價가 徐徐히 消滅되는 固定資產은 正確하
게 同額이 減価된 資產의 中古品 市場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經
濟的 價值評価는 不可能하고 살아 남은 原價와 消滅한 原價를 人
為的인 減価計算節次에 依하여 区分하는 것이다. 그러나 国富推
計上의 資產評価는 一般會計處理上의 評価와는 性質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国富推計上 資產이란 基準時點에서 그 資產의 収益生
產力에 基礎하여 評価한 經濟的 意味의 資產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여기에서 經濟的 意味의 資產이란 經濟活動上 資本스톡 (Stock)
으로서 機能을 가지고 帳簿上 評価된 単純한 資產價值와는 다른
그 資產이 지니고 있는 市場價格으로 評価된 것을 意味한다.

다만 国富를 構成하고 있는 大部分의 資產이 市場去來와 無緣
한 狀態에 있으므로 真正한 市場價格으로 評価하는 것은 어려운
難点이 많다.

이러한 難点을 解決하기 위하여 우리는 會計學上の 評価方法을

援用할 수도 있고 餘他 特殊評価方法을 利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国富推計上 資產評価가 經濟活動上의 資產으로서, 換言하면 所得 (Flow) 과 関聯한 資本量 (Stock) 을 評価한다는 基本的인 思考를 忘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 評価基準

資產価額은 評価基準이 相異함에 따라 同一한 經濟的 価値을 가진 資產이 相異한 価額으로 評定될 수 있으므로 特別한 研究가 必要하다.

會計學上 原価·時価·低価·時価以下等 여러 評価基準이 있으나 近代會計學의 主된 호름이 原価로 一貫되어 왔음은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債務弁済의 可能性이 있는 即 換金化될 수 있는 資產만을 資產으로 認定하는 商法에서는 時価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利用目的이나 評価時期等에 따라 評価된 結果值가 다르므로 本稿에서는 国富統計調查의 目的에 비추어 通常의으로 援用되고 있는 評価基準은 列舉說明하고 資產種類別 適用限界性 推計上の 問題点等을 緩和 除去할 수 있는 複合的인 評価基準을 提示하고자 한다.

가. 原価基準 (Cost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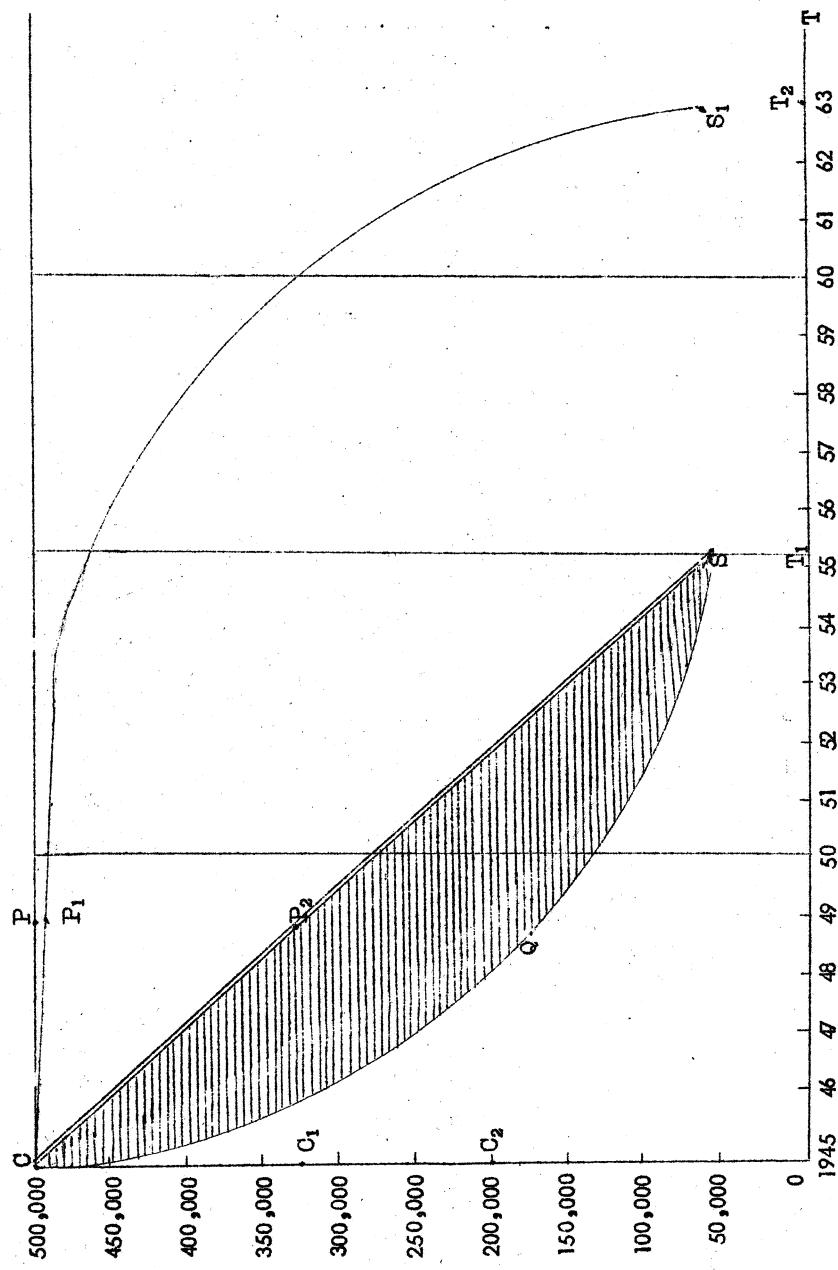
資產을 原価로 評価하는 것을 會計學上 原価主義 實費主義라

부르고 있다. 이에 依하면 原価는 實際去來에서 나타난 檢証可能한 客觀的 事實이기 때문에 時價評價에서 犯하기 쉬운 恣意의 判斷이介入할 餘地가 없고 또한 時價로 評價하면 投資者的 實際出資額을 表示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原價는 計算도 便利하며 時價에 比하여 有用한 評價라 主張한다.

美國會計學을 代表하는 W. A. Paton, A. C. Littleton과 独逸의 Schmalenbach, E. 等은 原價主義를 強力히 支持하고 있으며 近代會計학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物價가 比較的 安定된 先進諸國에서는 그妥當性이 認定될 뿐지 모른다 우리나라와 같은 經濟與件下에서는 難點이 많고 특히 會計學上의 評價와는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國富推計上의 立場에서 볼 때 原價는 많은 欠陷을 内包하고 있다.

<図表1>

資産引減価値曲線



1. 定額法 $D = \frac{C - S}{n}$ D ... 期間減価費

C ... 取得価額

S ... 残存価額

n ... 推定耐用年数

γ ... 減価率

2. 定率法 $\gamma = 1 - \sqrt[n]{\frac{S}{C}}$ D = 帳簿残額 × γ

$\gamma = 0.20567$

機械 A の 年減価額

n	定額法	定率法
1	45,000	102,835
2	45,000	81,684
3	45,000	64,885
4	45,000	51,540
5	45,000	40,940
6	45,000	32,520
7	45,000	25,831
8	45,000	20,519
9	45,000	16,299
10	45,000	12,947
計	450,000	450,000

例를 들어 法定耐用年数는 10年이나 實際 18年間 使用한後 廃棄处分한 機械 A를 1945年에 500,000원에 購入하였다고假定하자.

<図表1>은 機械 A의 減価 및 残留原価를 表示한 것이다. 物価가 不變이라 假定하여도 法定耐用年数와 實質耐用年数가一致하지 않아 T_1 과 T_2 間에는 8年이란 差異가 나타난다. CS曲線은 機械 A의 生產力變化를 나타내고 CS線은 法定耐用年数와 定額法에 基準하여 計算된 減価線이며 CS曲線은 法定耐用年数와 定率法에 依한 減価曲線이다.

資產의 經濟的 価値는 期待한 去來収益을 資本現物化한 것이므로 時間의 経過에 따라 그 価値가 減耗하는 것이다.

資產의 減価計算을 經濟學的인 側面에서 考察할 때 1949年末의 減価額은 PP_2 (180,000원)이나 PQ (341,884원)가 아니라 PP_1 (10,000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企業体에서 定額法이나 定率法의 妥當性에 立脚하여 어느 하나를 適用하는 경우는 드물다.

定額法은 資產의 価値減少가 純全히 使用期間에 基因한다고假定하지만 經營革新·技術開發·當該資產이 生產하는 製品에 對한 嗜好·變化·政府의 政策, 管理의 程度, 偶發의 天災地變等에 依하여 發生하는 減価는 어떻게 表示할 것인가?

그리고 定率法의 假定은 購入初年度에는 資產의 価値 減耗度가 높고 後年度에는 낮다고 보는데 初年度에는 修繕費等의 所要額이 적고 後年度에는 많기 때문에 減価費와 修繕費의 合計

額이 每年 同一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保守主義原則上
初年度에 많이 計上하여 企業의 安定을 期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購入初年度에 減耗度가 높지도 않고 修繕費가
낮지도 않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上記 保守主義原則도 国富推
計의 評価에는 問題点이 있다.

定額法 (Straight - line Method), 定率法 (Reducing
charge Methods), 比例法 (Production or working hours
Methods), 年數合計法 (Sum of the years' digits Methods)
廢棄 및 更新法 (Retirement and Replacement Systems), 加
速償却法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中 그 어느
하나를 利用하여도 評価結果는 同一資產에 대하여 각各 相異하
게 나타난다.

勿論 그 適用對象은 資產의 性格이나 形態에 따라 다르겠지
만 이런 結果는 會計學上 減值計算의 自体矛盾을 反映한 것이
可 할 수 있으며 理論的妥當性을 가질려면 <図表1>에서
S와 S'의 時差가 없어야 한다.

- 다음 原價基準을 使用할 때 그 欠陷과 問題点을 살펴보면
- 1) 推計上의 問題点은 別問題로 하더라도 經濟的 價值가 同一
한 資產일지라도 取得時期나 製作時期가 相異하면 評価된 價
值가 다르게 나타난다.
 - 2) 物價變動等 經濟與件에 变化가 甚할 때는 資產의 實質的
價值을 나타내지 못하며 物價指數에 依하여 数值得修正한다
하더라도 技術 및 經營革新 偶發의인 價值減耗等을 反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物価指數를 求하기 힘들고 作業이 複雜하다.

- 3) <図表1>에서 S와 S' 사이는 8년의 時差가 나타난다. 即 現行法規上의 耐用年数는 10年인데 實際 18年을 使用하였으므로 現行法規를 改正하지 않는限 또는 이의 補完策이 講究되지 않는限 物価나 經濟与件이 不變이라도 減耗分을 差減한 残留価値와 現実의인 資產価値는 一致할 수 없다。 現行法規는 企業會計上 強制性이 賦与되어 있으므로 影響力이 크다。 故로 原価主義에 立脚한 帳簿価値는 國富推計上의 資產評価와는 距離가 멀다。
- 4) 原価基準을 一貫하면 取得原価가 없는 国家나 地方公共團体 또는 個人 等으로부터 無償으로 賦与받은 資產은 評価不能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 5) 会計帳簿에 記錄된 原価는 期待한 未来収益의 資本換価額 即 時価以外에 会計實務上 慣行이나 保守主義立場에서 正當化 되는 価額이 加減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与件이 不變이더라도 資產의 實質価値를 反映하지 못한다。
- 6) 原価는 取得時點에 따라 記錄되어 있기 때문에 適切한 物価指數로 換算하지 않는限 異時點間의 富의 比較가 不可能하다는 欠陷이 있다。
- 7) 上記 몇 가지 問題가 解決된다고 하더라도 現実의인 問題로서 法人体는 法規의 強制性으로 帳簿組織을 保有하고 있으나 個人企業体는 帳簿을 거의 保有하고 있지 않다。 資產의 取

得時期 및 価格이 不分明하여 適用可能성이 적다.

勿論 最近에 取得한 資產은 所有主가 記憶에 依하여 對答할 수도 있겠으나 資產種類가 많고 取得時期가 오래 된 것은 把握하기가 困難하다.

以上 列挙한 外에도 여러가지 制約이 있다. 그러나 原価基準은 一般企業에서 利用할 수 있는 確実한 資料가 될 수 있으며 代置原価의 算定 時価推定의 資料가 될 수 있다. 이 러한 現実的 利点이 国富推計上 日本을 비롯한 몇몇 国家에서 原価基準을 採択한 主要理由가 되었다.

4. 時価基準 (Market-Price or Current-Value Basis)

時価란 一定時點에서 市場에서 販売者와 購買者間의 合意에 따라 決定된 価格으로서 買入時価와 販売 대지 売却時価로 区分되나 一般的으로 会計学에서는 買入時価 即 再買時価를 意味한다.

時価는 理想의인 資產評価基準으로 財貨의 合當한 時価가 그 財貨에 對한 購買者の 適切한 滿足度를 表示하듯이 市場에서 形性되는 資本財 即 有形固定資產의 時価도 그 資產取得者が 그 資產을 経済活動에 使用함으로써 實現할 수 있으리라豫想되는 収益의 適切한 現在価値를勘案하여 取得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未来収益을 資本現価化한 時価는 利用目的에 따라 時點別 部門別 富의 比較가 可能하며 評価의 共通共分母가 一定時點의 時価이므로 国富推計의 目的에 合當한 評価基準

이라 할 수 있다.

時価의 理論的 根柢를 들어 보면 大概 原価基準의 欠陷에서
부터 始作된다.

- 1) 時価는 資產의 價值變動을 招來하는 諸要因 即 正常的 磨滅, 自然現象과 風化作用에 依한 腐敗腐蝕, 不可抗力의인 天災地變, 市場与件, 流行스타일, 需要構造 等의 變化에 따른 陳腐化 經營 및 技術革新 等으로 일어나는 資產의 廢化 需要增加 製造方法變更 政府의 政策等으로 蒙起하는 不適應等 機能的 物理的 要因이 自動的으로 正確히 反映되어 나타난 資產의 現在 實質價值를 그대로 나타낸다.
- 2) 時価는 理論的으로 볼 때 去來双方이 売買目的資產에 對한充分한豫備知識을 가지고 双方合意下에 形成된 市場價格이므로 오히려恣意의 要素의 介入可能性을 좁혀 준다.
- 3) 原價基準에 따라 評価하면 相異한 價格으로 評価되는 資產도 經濟的 價值가 同一한 資產이면 評価額의 利用目的 取得時期 取得方法 等이 相異하더라도 完全한 競争与件만 造成되면 同一價格으로 나타난다. 具體적으로 稅源捕捉을 目的으로評価한 資產價格과 投資者가 投資目的으로 評価한 資產價格은 同資產일지라도 差異가 発生하여 原價基準에 依하면 収益力見地에서 經濟的 價值가 同一하더라도 取得時期가 相異하면 帳簿價格에 差異가 나타난다. 그러나 時価로 評価하면 이러한 欠陷이 除去 緩和된다
- 4) 代置原價나 再取得原價를 算定하려면 該當資產의 物價指數가 必要한데 現實的으로 그 求得이 容易하지 않다. 物價가 安

定된 条件下에서는 代用物価指数를 使用하더라도 큰 差異가 発生하지 않겠지만 激甚한 物価变动이 있을 경우에는 代用物価指数는 意義를喪失하게 된다. 또한 物価指数를 求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計算이複雜하다. 그러나 時価에 依하면 上記 労苦를 멀수 있고 그 数值도 比較的 正確하다.

5) 会計帳簿에 記錄된 價額은 記錄以前에 会計担当者가 내린 会計의 判断에 依하여 記錄된 것이다. 이 때 会計担当者の個人的意見은 時価에 依하지 않는限 除去할 수 없다.

그리고 帳簿價(原價)는 資產의 經濟的 價值와는 無關한 会計慣習이나 保守主義原則上 正當化되는 價額이 加減되어 있는데 이것도 時価에 依하면 除去할 수 있다.

上述한 것 外에도 時価의 論拠는 많다. 그러나 時価가 実查上 難点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企業을 評価할 때 個別資產을 獨立的으로 評価한 額을 合計하여 그 企業의 價值로 보는 方法과 各種資產의 集合体인 繼續企業을 全體의 으로 評価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前者の 경우 個別資產을 각각 獨立的으로 評価하여야 하는데 萬若 販売가 이루어 진다면 모르되 有形固定資產은 ① 販売가 目적이 아닌 資產이 大部分인데 어떻게 時価를 決定할 것이며 ② 販売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技術開発 經營革新 正確한 減価計算은 評価에 어떻게 反映시킬 것인가 그리고 評価目的上 各種資產을 比較的 同質의 단位로 集合分類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中古品市場이 組織化되어 있지 않거나 全無한 狀態下에

서合理的인評価基準을 어떻게設定할것인가는問題가아닐수없다.具体的으로恒常市場價格이形成되는在庫資產은問題視되지않겠으나建物이나構築物等은市場이極히發見하기어렵고機械및裝置도經營革新이나技術開發에依하여製作된初期에는去來量이많으나時日이經過함에따라漸減되는것이一般的인現象이다.또한理論上評価하려는特定時點에各種保有資產을全部市販할경우理想的인時値가나타날수있는데이것도不可能한일이며企業이나其他資產單位가新品資產만을保有하고있는境遇는거의없고또한所有하고있는資產과正確히同量이減價된同一資產의市場은現實적으로存在하지않는다.

前記의兩評価方法으로評価한時値額은서로一致하는경우가거의없을것이다.個別資產의理想的인時値評価가可能하다하더라도역시그렇다.個別資產評価의合計額과収益力이基礎가되어綜合評価된繼続企業의値值는同一業체를同一評価者가同時評価하여도一致하지않는것이當然하다。理由인즉繼續企業評価에는他企業에比하여超過収益力を나타내는營業權(goodwill)營業및製造上の秘密이나獨占關係特許權商標權等의無形資產의作用機械의配置等에따라生產力이달라질수있는데資產別評価에는前記事項들이値值로反映될수없기때문이다。業체가確保한市場占有나立地条件도마찬가지이며無形資產을評価對象에서除外함을原則으로하고繼續企業을한unit로

評価할 때 無形資產의 帳簿価額 自体는 除外되더라도 他資產에 그 価値의一部가 転価됨이 不可避한 경우가 많다。

특히 時価는 現実의으로 発見하기 어려운 資產(建物構築物等)이 많으므로 推定에 不過한 경우가許多하여恣意의 인 要素가 介入할 餘地가 많다.

以上과 같이 時価도 國富推計上 原価와 같이 많은 欠陷을 내包하고 있으며 推定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推定時価를 實際 市場에서 去來되는 理想的 時価에近似시키려면 技術条件 市場条件 物価等 一般經濟條件이 正常의어야 한다는 仮定이 必要하며 對象資產의 需要供給狀態, 価格変動, 技術水準等에 專門의인 知識이 要求된다.

다. 代置原価基準 (Replacement Cost Basis)

有形固定資產을 評価하는데 있어서 가장 理論의이며 理想의인 基準은 時価이나 現実의인 制約性을 考慮할 때 이에 代身할 수 있는 方法이 時価를 推定하는 것이며 이 推定時価를 計算하는 一般化된 方法이 減価累計額을 差減하여 代置原価를 算定하는 것이다. 그 合理性与否는 後述하기로 하고 그 算式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text{總代置原価} = \text{取得原価} \times \frac{\text{評価時点의 当該資產의 物価指數}}{\text{取得時点의 当該資產의 物価指數}}$$

2) 代置原価 = 総代置原価 - (減価累計額 ×

$$\frac{\text{評価時点의 物価指数}}{\text{取得時点의 物価指数}} \times \text{当該資産의 物価指數}$$

이것은 原価基準의 修正에 依한 方法으로 結論부터 말하면 現実性을 감안하여 考察할 때 어느 程度 合理性이 認定되나 그 計算이 複雜하고 制約性이 많다. 總額概念 (gross) が 総資產을 時価로 推定하는데 있어서 物価変動을 考慮하여 取得原価를 総代置原価로 評定하고 該當物価指數로 修正한 減価分을 控除하여 代置原価를 算定한다. 이 計算을 위하여는 物価指數가 必要하다. 이것은 評価対象인 資產单位가 무엇인가에 对하여 直接 問題를 溝起시킨다.

이 問題는 資本財의 物理的 特性이나 그 生産力의 變動함에 따라 同時に 資本財產業의 生産性이 變하는 動態經濟下에서는 重要하다.

이 問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Cl'dward Dension의 所說에 依하면 評価单位는 物理的 特性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고, 分類된 単位間의 差額은 新旧資產 사이에 나타난 實際生産原価의 差額과 相關關係가 成立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美國勞動統計局이 使用한 理想의 方法이라고 主張하고 이어서 이 方法에 依하려면 資本財의 物理的 単位를 그 資本財의 生産費 (時間의 経過에 따라 低下되는 것이 上例) 나 性能 (生産力, 技術革新等으로 時間의 経過에 따라 좋아지는 것

이一般的임)과混同하지 않도록注意를 嘘記시키고 있다.

처음번混同은容易하게避할수 있다. 어떤機器가物理的特性이나生產能力은異時點間에不變인데產出面에서生產性이2倍가되었다고假定하자(機械當實質的인資本投入必要額이半減되었음) 이것은資本設備의數量이半減된것이 아니며事實 아무런變化도發生하지 않았기 때문에機器의生產性이2倍가되었다는것을意味할뿐이다。機器數量은機器를生產한特定期間의技術水準(生產性)下에서所要된機器의實際原價를나타낸다。

時日이經過함에 따라 어떤特定機械를生產하는데效率이높아졌다면 그機械價格은利潤을包含한平均要素價格의變動과當該機械生產에所要되는要素의平均生產性의變동이一致하지 않는程度까지 움직일 것이다。

다음機械의모델(model)이變함에 따라資本財의物理的性能과生產力의變動한다면實際原價에配分된要素의比率에따라機械의實際原價를調整하여야한다고Dension은主張한다。 만약新舊資產의實際原價差異가基準期間에도適用될수있다면이方法에依하여表示된價格은基準期間의技術水準下의資產原價 또는投下量으로서實際原價의意味를갖는다。

이方法은그效果가物價指數의性格如何에따라左右됨은勿論이다。 1960年末同年에設置한新規有形固定資產價格이100,000원이고, 1960年以前에生產하여아직在庫로保有하

고 있는 資產이 있는데 1960 年에 新品으로 再生産하는데는 2,000,000 원이 所要되지만 現在 生産에 寄与하는 거와 꼭 같은 現技術을 利用하여 代置하는 데는 1,500,000 원이 所要된다고 하자 前述한 方法에 依하면 1960 年末 資產總額은 1,600,000 원이 아니라 2,100,000 으로 評価될 것이다. 換言하면 旧資產은 生産力에 依하여서가 아니라 同日字의 再生産價格을 比較하는 것이므로 新資產과 同一視된다.

不變價格으로 表示된 總額資產을 檢討하여 보면 數年間 各各異時點에 獲得한 總資產을 計算上 時價代身 基準年度의 物價를 使用하여 不變價格으로 表示할 수 있다. 이 結果는 取得時期가 相異한 諸資產을 同一한 時點에 生産한다면 所要된 費用이 얼마인가로 評価하여 同質視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1960 年 價格으로 評価된 資產總額이 1958 年은 2 兆원, 1960 年은 2.1 兆원이 된다면 当該資產의 代置原價가 1958 年 보다 1960 年에는 5% 더 所要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1960 年度 資產은 質的改良으로 1958 年 資產보다 5% 더 生產에 寄与할 수 있을 것이다. 減耗分을 差減하지 않은 總額資產額評価에 있어서 異時點間에 製作 또는 購入한 資產을 同質視하는 方法은 時價나 不變價格이나 同一하다.

다른 式으로 說明하여 보면 特定時(t)에 모델 t 는 모델 t_1 보다 實際 原價가 10% 높고 그 價格은 t_1 年의 모델 t_1 보다 15% 높으며 生產寄与度는 20% 더 높다고 仮定하고 前記式으로 計算하면 純價格增加는 5%이며 모델 t 의 生產寄与

度는 20% 높지만 実質資本은 10% 더 많은 結果가 된다.

이것은 價格下落에 依한 것인 基準時價格으로 原價를 調整한 物理的 単位에 依한 것인 하나의 結果이며 또한 이것은 現存하는 物價指數나 量的資料에 依拠獲得할 수 있거나 或은 이것들의 編制方法을 아는 것이 唯一한 解決策이다.

本質的인 資本價値는 生產量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純収益生產力에 있다는 것을 留意하여야 한다. 新機械의 生產力이 그 機械의 實際原價 보다 빨리 上昇하듯이 機械의 初期購入者가 그 機械를 使用함으로써 얻어지는 純収益도 역시 그렇다. 經濟理論에 依하면 可能한 競争條件이 造成되어 競争이 行하여지면 非正常的인 利得은 漸次 없어져서 新機械價格은 正常利潤이 包含된 價格과 비슷하게 되고 新投資에 對한 報酬는 資本財의 產出能力에 比例하기 보다 一連의 資本財의 모델原價 (正常的인 값 올리기 包含)에 거의 比例하여 움직이는 傾向이 있다.

上記 引用例에서 新모델 t 의 購買는 모델 t_1 이 前期에 實現한 것과 同額의 収益 내지 報酬를 올리는 点까지 行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機械當 実質的인 純收入은 旧모델이 新品이었을 때 實現한 것보다 10% (20%가 아님)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모델 t 의 實際價格에 作用하는 높은 產出力은 모델 t_1 의 時價下落에 反映되며 이것은 後述할 減價나 減價分을 差減한 代置原價算定에 重要한 한 局面을 보여준다.

結論으로 質的인 變化는 別個로 치더라도 特定時點價格으로

表示된 取得時期가 相異한 資產의 總代置原価는豫想된 純収益額을 反映할 수 없다는 것이다。理由인즉 中古固定資產의 未來純収益力의 低下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總代置原価는 資產을 어떤 特定年度에 再生産하는데 所要된 費用을 나타낸다。

不變價格으로 換価된 總資產額의 時間経過에 따른 變動은 基準年度의 当該物価指數만 주어진다면(前試方法으로 모델의 變化를 調整함)保有資產의 物量變化를 反映한다。이 数值得을 檢討하여 보면 資產廃棄時期 및 總資產規模를 決定하는 것은 物理的 耐用年数가 아니라 經濟的 耐用年数라는 点에서 物理的 耐用年数外 經濟的 耐用年数를 모두 考慮한 것이다。

資產純額을 推定時価로 表示하려면 資產總額의 時価를 推定한 다음 減耗分을 다시 評価하여 總額에서 差減한다。이 純額即推定된 時価는 資產의 期待収益을 現価화한 것으로 이것은 美質的인 純資產推定価額으로 認定되나 減価充当金은 主로 時間経過에 따른 資產의 価値減耗分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資產의 時価推定에 큰 영향을 미치는 耐用年数도 市場에서 決定되는 한 現象이므로 減価充当金과 資產純額도 역시 市場에서 決定되는 것이다。

使用中인 機械裝置나 設備資產의 市場價格은 減価資產의 直接的인 評価方法이다。減価資產은 組織化된 中古品市場去來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減価額을 推定하는 수 밖에 없으며 經過耐用年数는 各種調查나 廃棄時의 資料로부터 人為的으로 決定한다。新規購入資產에 適用할 減価曲線決定問題는 더욱 어려우므

로 来去가 있는 使用資產의 資料에서 類推하여 来去없는 資產에까지 適用한다.

減価分을 差減한 代置原價와 實際時價(存在한다면)間에 差異가 發生하는데 이것은 두가지의 主된 理由때문이다. 即 ①曲線의 基礎가 되며 그 性質을 決定하는 資料의 不正確性과 ② 資料提供期間이 評価時點과 一致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推定減耗分을 二次的인 性質에 関聯시켜 考察하여 보면 関係資產의 繼續的인 需要上昇 및 下落은 保有中인 固定資產 即長期間 減価充当金을 計上한 固定資產의 代置原價를 變動시킨다.

어떤 特定資產의 期待収益이 實現되지 못할 때는 그 資產의 市場価値는 減価분을 差減한 再生産原價 以下로 下落할 것이며 그 差는 収益以前에 期待한 水準에 到達할 때까지 新規資產의 購入이 行하여지는 것과 같아 一時의이다. 使用資產의 供給下落은 그 資產價格을 漸次的으로 減価한 代置原價까지 上昇시키는 傾向이 있다. 同時に 新規購入資產의 収益力이 期待額을 超過할 때는 使用資產의 価値는 下落한다. 또한 使用資產의 供給增加도 그 価格을 下落시킨다.

減価한 推定代置原價는 實上 時價의 概算額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合理的으로 分析된 価額은 繼續記錄法에 依한 國富推計額과 一到된다.

資產純額価値의 推定時價를 算定하는데 新旧資產価値를 同質視하여 質의 差異를 处理하는 方法은 総額資產推定에 使用된 것과는 正反對라는 것을 認定하여야 한다. 純額資產은 総額資產보

다 그 價値가 낮는데 이것은 資產이 物理的으로 磨損되어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能率이 低下되고 残留用役提供可能年数가 短縮될 뿐만 아니라 資產에 質的改良이 일어나면 使用資產의 生產力은 低下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減価充当金累計額이 物理的 磨損뿐만 아니라 陳腐化도 包含하고 있기 때문이다. 統計上 이런 問題가 發生하는 것은 減価計算에 適用한 用役提供可能年数가 物理的耐用年数가 아닌 陳腐化를 감안한 短縮된 實際耐用年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陳腐化는 減価計算을 할 때 必히 考慮되어야 한다. 이結果 物理的 要因에 立脚하여 設定한 充當金은 別問題로 하고 取得 내지 生產時期가 다른 諸資產을 原則적으로 주어진 日字의 生產原價가 아니라 生產力에 따라 同一視하는 것이다.

모델 t_1 과 t 를 t 年度에 生產하려면 각각 100,000 원이 所要되나 年間生產額은 t 가 2 倍며 모델 t_1 的 物理的耐用年数가 半減된다고 仮定하여 보자.

(모델 t_1 的 生產力은 不變) t 年度의 資產總額은 200,000 원이지만 純額은 150,000 원이 아니라 125,000 원으로서 이 差額은 陳腐化를 나타낸다. 이런 理由로 純額資產의 推定額은 現時價의 概算額으로 생각될 수 있다. 不變價格으로 純額資產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前記方法은 時点이 相異한 不變價格으로 純額資產을 比較하는데까지는 関聯시켜 適用할 수 없다. 陳腐化充当金은 純額資產의 價値水準에는 影響을 미치지만 이와 類似한 充當金은 每年 設定되므로 이 充當金은 質的인 變化에

關聯하여 發生한 價值變動은 나타 별 수 없다.

그러므로 減縮된 純額資產의 5%增加에 立脚하여 說明하면
基準年度를 中心으로 한 次年度의 純額資產代置原價는 初年度보
다 5% 더 높고 質的인 改良이 있었다면 次年度의 資產純額
은 5%以上 生產에 더 寄与한 것이다.

代置原價는 以上과 같은 性格을 갖고 있으며 代置原價의 基
本資料가 原價 即 帳簿價格이 主가 되므로 原價가 갖는 欠點
을 그대로 갖는 것이 많다.

結局 国富推計에 있어서 総代置原價의 方法은 異時点에 取得
된 諸資產을 一定時点價格으로 評価한다는 것이고 代置原價의
方法은 総代置原價에서 減價額을 控除하여 一定時点에 있어서의
모든 資產의 純額을 評価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評価方法은 国富推計上 理論的으로는 時價基準
(Current Basis)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排除하는 것은 아
니며 어디까지나 時價基準이 갖는 現實的 事件 即 時價에 依
한 경우 客觀性賦与가 暗昧하다는 点에서 代置原價方法이 採用
될 수 있다는 것을 留念할 必要가 있다.

日本의 경우는

$$\textcircled{1} \text{ 再取得価格} = \text{取得価格} \times \text{物価倍率} \dots (\text{総代置原価})$$

$$\textcircled{2} \text{ 再調達価格} = \text{再取得価格} \times \text{残価率} \dots (\text{代置原価}) \times$$

$$(1 - \text{償却率})$$

와 같은 方法을 使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原理的으로 볼 때
前述한 바의 代置原價基準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3. 資產種類別 基準의 妥當性

以上에서 国富推計上의 諸評価基準과 그 長短点을 살펴 보았다.
一端 設定된 諸基準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一律的으로 適用될
수 없고 資產의 内容과 特性에 따라多少 그 評価의 類型을
달리 할 것이므로 現実情을勘案하여前述한 諸評価基準의 妥當
성을 考察하기로 한다.

가. 有形固定資產 (Tangible Fixed Assets)

有形固定資產中 建物 構築物 等은 物価가 安定된 狀態下에서
는 原価에 依하여 評価되어야 하나 現実的으로 原価에 依하면
그 實質價值를 表示하지 못하므로 時価를 基準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時価는 理論的 妥當性은 가질지 모르나 特히
販売가 目的이 아닌 建物構築物等은 中古品市場을 發見하기 어
려워 그 代用方法으로 쓰여지는 것이 代置原価다. 代置原価의
正確度를 높히려면 評価資產의 物価指數가 必要한데 이 問題를
解決하여야 한다. 이보다 더 큰 難點은 原価나 代置原価를
把握함에 있어서 帳簿組織은 그 必須条件인데 個人企業中 利用
可能한 帳簿組織을 備置한 業체는 極少하므로 個人企業部門에서
는 代置原価基準이 어느 程度 利用될 수 있을론지는 앞으로의
研究課題이다. 그러나 建物 構築物 等은 市場이 極히 制限되
어 있으므로 客觀的인 判断이 必要하다. 時価를 代身할 수
있는 基準을 列舉하면

- 1) 所有主의 評価에 따르는 法 1960 年度 美國의 「住宅セン서스」에서는 所有主가 住宅을 評価하였는데 大部分 그들은 資產을 時価로 推定評価할 수 있었다. 勿論 態意的인 要素는 어느 程度 介入하였지만 調査者の 直接的인 推定보다는 客觀性이 있었다.
- 2) 保險에 加入하고 있을 때는 保險價格을 基準하여 評価하는 法 保險價格은 比較的 最近의 数值이며 어느 程度 客觀性이 있는 合議된 價格이므로 이를 適切하게 合理的으로 加減하여 時価로 한다.
- 3) 不動產売買紹介所에 問議하여 定하는 法 紹介所에는 比較的 老練한 사람들이 集合하고 이들은 土着民이 大部分이므로 当地域事情에 精通하고 識見이 있다. 또한 이들의 意見은 一個人의 意思가 아니고 建物売渡를 願하는 所有者 購入希望者 그리고 紹介者等 多數人에 依한 評価가 되므로 比較的 客觀性이 維持된다.
- 4) 製作價額을 分析하여 評価하는 法 建物의 原始使用資材 労賃 其他 間接費를 現評価 時點價格으로 換算 評価하여 再取得價格을 算出하고 經過耐用年數를 考慮하여 資產時価를 推定하는 것이다. 이 外에도 合理性과 客觀性이 維持되는 方法이 라면 可能하다. 이것은 建物이나 構築物에 限한 것이 아니라 市場이 極少한 資產에는 모두 利用될 수 있다.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動植物等은 市場이 制限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大体적으로 보아

中古品市場이나 新品市場이 存在한다. 消費者나 使用者は 그들資產을 公正하게 評価할 줄 알며 純額資產의 処分價格이나 代置價格을概算할 줄 안다. 金屬機械, 運搬具, 車輛等의 中古品 市場이 比較的 다루어져 있고 따라서 利用資料蒐集이 可能한 것도 많다. 有形固定資產中 工具器具 및 備品等에서 볼 수 있는데 耐用年數別로 보면 固定資產이지만 그 金額이 小額이어서 記錄에 不便한 것이 많다. 便宜上 一定金額을 定하여 一定金額以下의 것은 一括合算하여 表示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한 工具뿐만 아니라 機械等에 있어서 相異한 時點에 製作 또는 取得된 資產의 種類가 過多할 때 一定基準을 設定하여 綜合的인 評価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建設假計定은 投下原價를 時價로 評価하여 計上함이 原則이며 投下原價捕捉은 工事의 完成度에 따라 決定하여야 한다.

固定資產中 無形資產部門과 그 價值가 混合되어 있는 資產(電話器等)은 区分하여 備品價格만 記入하여야 한다. 例로 電話器를 보면 個人企業側面에서 볼 때 이 無形資產分이 国家所有의 該當通信設備額과 一致하거나 不足할 때는 国家資產으로 把握될 것이고 超過할 때는 真實한 無形資產이므로 除外된 것이다. 萬一 위의 假定自體를 否定한다면 個人企業側面만을 考慮할 때 自由로이 市販되는 備品 그 自体는 資產性이 認定되나 備品을 超過한 것은 分明히 無形資產이다.

이러한 原理는 自動車의 番号等에도 適用됨은勿論이다.

4. 在庫資産 (Inventory, Working and Trading Assets)

在庫資産이란 未来의 収益에 对応될 消滅하지 않은 原価로서 A I A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에 依하면 “經常的인 企業活動過程에서 販売를 目的으로 保有한 資產, 販売를 目的으로 生產途中에 있는 資產 및 販売에 利用될 製品이나 用役生產에 現実적으로 消費하기 為하여 保有하고 있는 全 有形動產을 意味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原則上 在庫資產의 評価基準도 有形固定資產과 같이 時価이나 在庫資產은 大體적으로 最近에 購入한 것이기 때문에 時価와 原価間의 큰 差異가 発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純理論面에서 볼 때 在庫資產은 大部分이 市場에서 買賣되고 있으므로 現實적으로 時価評価가 可能한데 하필이면 方法에 따라 相異한 價格을 나타내는 原価에 依할 것인가? 다음 原価主義에 따른 評価方法과 時価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在庫資產의 數量計算에 있어서 繼續記錄法 (Running Inventory Method), 在物調查法 (Physical Inventory Method), 逆算法 (Rückrechnung) 中 어느 法을 択하느냐에 따라 評価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選択도 重要하다. 原価主義에 立脚한 諸方法은 帳簿가 基準이 되므로 保管中의 自然的 減耗 旧式化, 盗亂, 記錄上の 誤謬等은 反映할 수 없고 따라서 實際 調査에 依하여 時価로 評価된 価額과 差異가 나타난다. 또한 같은 原価主義를 択한다 하더라도 後入先出法 (Lifo method),

先入先出法 (FIFO Method), 個別原価法 (Identified Cost Method), 移動平均法 (Moving Average Method) 等에서 一法을 抨하므로 差異가 나타난다. 原価法만 아니라 其他 単純平均法 (Simple Average Method), 總平均法 (Periods Average Method), 最終買入原価法 (Latest Costs Methods), 基準在庫法 (Base Stock Method), 売価還元法 (Retail Inventory Method), 땔값值法 (Dolla-Value Method) 等 数많은 計算方法에 따라 全部 相異한 價格으로 나타나며 또한 時価와 一致하지 않는다. 그러나 時価로 評価할 때는 實際在物調査에 나타난 数量에다 単位当 時価만 곱하면 在物資產 即 在庫品이 評価되므로 比較的 計算이 簡單하고 正確한 評価가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1) 原材料 (Materials, Raw Materials)

原材料는 主副原材料, 補助原材料, 買入 및 自製部分品 等으로 大部分 市場에서 来去되므로 時価로 評価하고 만약 自製品이나 自家取得原材料 (買入하지 않은 것) 가 있다면 이것은 所要原価 내지 費用을 時価로 換算하여 計算한다. 時間의으로 原価와 별다른 差異가 없으므로 時価가 困難할 때는 時価代用으로서 原価를 使用하여도 된다. 原価主義에 立脚하여 繼續記錄法으로 原材料를 評価하면前述한 바와 같이 計算이 더複雜하여 簡으로 時価評価가合理的일 뿐만 아니라 더便利하며 國富統計目的에도 附合한다. 即 評価時點에 原材料數量을 調査하여 単位当 時価만 곱하면 價格이 計算되는 것

이다.

2) 在工品 (Goods in Process)

在工品은 原価計算上 製造計定에 該当하는 것으로서 着手品이라고도 하며 一時点에서 製造過程中에 在工되어 製品이나 半製品이 되지 않은 資產을 말하며 會計學上 在工品價格은 主要材料費나 加工費를 個別의 으로 計算하여 評価하거나 在工品에 所要된 主要材料費와 勞務費中 어느 一部만 評価한다.

理論上 在工品의 評価에는 在工品의 進陟度를 正確히 決定함이 重要한데 이것은 原價要素別로 分析하여 在工品狀態에 따라 決定한다。在工品 價格計算을 為한 在工品 進陟度는 在工品의 作業技術的 進陟度와 製造費의 發生率를 比較 檢討한다. 즉 그 算式은

$$\text{在工品完成品換算量} = \text{在工品數量} \times \text{在工品進陟度}$$

$$\text{在工品價格} = \frac{\text{在工品完成品換算量}}{\text{製造費에 對應하는 完成品換算量}} \times \text{製造費}$$

위의 公式에 依하더라도 平均原價法 先入先出法等의 計算方法中 어느 것을 択하느냐에 따라 評価額에 差異가 나타난다。在工品에 消滅한 原價要素는 大部分 市場價格이나 그 代用物이 存在하므로 市場價格等을 基礎로 計算하면 原價主義에 나타난 欠點이 補完될 수 있다。

3) 半成工事 (Uncompleted Contracted Works)

半成工事란 造船, 機關車, 建築, 道路, 貯水池, 防波堤等의 工事에서 볼 수 있듯이 完成에 長期를 要하는 것으로서 完成

이 되어야 建設依頼者에게 引渡하는 것이 普通이다。理論的
인 面에서 考察하면 依頼者로부터 前受한 金額을 消費하여
建設된 部分만큼은 依頼者의 建設仮計定에 記入될 것이고 請
負業者の 自担費消額만 半成工事에 記錄하여 在庫資產에 包含
되어야 할 것이다。完成費(Percentage of Completion)를
測定하는 等 會計実務와 理論上 複雜한 問題가 發生하지만
國富推計의 目的에 비추어 볼 때 評価基準日 現在 当該 建
設에 所要된 資材 賃金等의 原材料費 및 勞務費, 其他諸間接
費 總額을 依頼者로부터의 前受金 費消分과 自担한 原価費消
分으로 区分하여 自担分만 半成工事額에서 時価로 評価하여
計上함이 妥当하다。그러나 実査上 難点이 없는 것은 아니
므로 評価者の 適切한 区分이나 判断이 要請되며 請負業者와
依頼者間 重複計上이 되지 않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 半製品 (Partly Finished Part)

一部工程이 完了되어 다음 工程에 다시 繼續될 完成品 또는
는 部分品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음 工程에 移行할 中間段階
에 있는 未完成品이면서도 販売나 貯藏이 不能한 点에서 在
工品과 区別되어 市場価格을 發見하기 쉬우므로 時価評価가
可能하다。

만약 時価가 存在하지 않을 때는 前述한 在工品과 類似한
式으로 時価를 推定한다.

5) 副産物 및 作業屑 (By-Product and Waste or Scrap)

副産物은 製品生產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生産의

主目的이 아닌 副次的인 財貨로서 主製品価値에 比하여 낮은
것이 一般的이다。作業屑는 製品製造에 発生하는 原材料의
小片等을 말한다。

이것들은 業体의 会計政策이나 慣習에 따라 製品의 生産原
価에서 差減하는 方法, 収益으로 处理하는 方法等이 있는데
生産原価에서 差減하는 業体는 그 価値가 製品에 転価되므로
別問題가 없으나 収益으로 处理할 때는 그 販売時価를 計算
하여 在庫資產에 包含시켜야 한다。이들을 原価나 再取得原
価를 算定한다는 것은 無意味할 뿐만 아니라 그 計算節次가
몹씨 複雜하다。

6) 貯藏品 (Stores)

包裝材料, 運送材料 事務用品 燃料等 消耗性 品目으로 会計
政策에 따라 購入時 費用으로도 处理할 수 있으므로 原価主
義에 依한 帳簿에는 資產이 아닌 費用으로 計上되어 在庫資
產 把握時 漏落될 可能성이 크기 때문에 時価評価 即 實際
在庫調査에 依하여 数量에 単位당 時価를 곱하여 計算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7) 商品 (Merchandises)

商品은 販売를 目的으로 保有한 諸財貨를 뜻하는 것으로서
去來가 行하여지는 것이므로 時価에 따라 評価한다。

商品은 그 種類가 많을 뿐만 아니라 場所의 占有的인 面
에서 볼 때 複雜한 樣相을 나타내기 때문에 在庫資產總額把
握上 問題點을 實查面에 立脚하여 解明하여야 한다。

原則上 所有權基準에 設定되면 所有權의 有無에 따라 在庫
品에 包含与否를 決定한다。具体的으로 例擧 說明하면

가) 積送品 (Merchandises Outward on Consignment)

間接販売의 一種으로 手数料를 支給하는 条件으로 販売를 他人에게 委託하기 為하여 積送한 商品일 경우 委託売買品의 法的 所有權은 委託者에게 있기 때문에 売出確認書나 販売完了通知가 있기 前에는 販売完了 積送品은 積送者의 在庫品에 包含시켜야 하고 受託品은 除外하여야 하며 評価基準은 勿論 時価基準이 된다.

나) 未着品 (Merchandises in Transit)

会計実務에서는 買入品은 引受基準, 販売品은 積送基準을 適用하여 未着品의 在庫品包含与否를 決定하나 代金을 支給하였거나 契約이 成立되어 所有權이 移転되었다면 買入未着品은 在庫資產에 包含시켜야 하고 販売品은 除外하여야 한다.

다) 試料品 (Merchandies on Approval)

買主가 商品을 試験的으로 使用하여 보고 適性을 判断하여 適切하지 못할 때는 返還할 수 있는 条件으로 移送한 것으로서 会計実務上 返品率이 极히 낮을 때는 売出된 것으로 处理하나 어디까지나 所有權은 販売者側에 있으므로 買入確認書를 入手하거나 買入通知를 받기 前에는 販売者の 在庫에 包含시켜야 하며 評価基準은 勿論 時価가 된다.

라) 割賦売買品 (Merchandises on Installment)

割賦売買는 商品代錢을 数回로 分割하여 授受하는 売買로서 所有權은 販売者側이 갖는다. 会計実務에서는 商品譲渡時에 販売受益을 認識하는 法과 割賦金 回収時마다 分割認識하는 方法이 있다. 純法律的 解析에 따르면 所有者의 在庫品에 包含시켜야 하겠지만 契約期間이 長期이고 商品은 割賦購入者が 占有使用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므로 例外로서 實查上 占有者를 基準하여 時価로 評価함이 마땅하다. 普通割賦売買品은 耐久財나 準耐久財이므로 所有權이

完全히 移転되지 않더라도 減価되는 것이 一般的이므로 時価評価가 더욱合理性을 갖는다.

마) 抵当品 (Pledged or Hypothecated Merchandises)

抵当된 商品의 所有權은 担保品提供者에게 있으므로 提供者의 在庫品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며 期間이 長期일 때는 특히 原価와 時価間に 顯著한 差異가 發生할 수도 있다.

그러나 時価評価에 依하면 이런 差異는 容易하게 除去된다.

바) 売買契約品

売買契約은 契約金을 授受하였다 하더라도 所有權에 变動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在庫品計算評価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사) 外国販売品 外國買入品

輸出入品의 計算評価는 売買条件의 相異에 따라 積送 내지 運送中의 商品을 处理하는 法이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고 그 評価만 論及한다.

結論부터 말하면 輸出品은 国内時勢의 高下를 莫論하고 輸出原価 即 販売原価로 計算되어 輸入品에 있어서도 輸入原価는 不問하고 国内市場価格으로 評価되어야 한다.

아) 内部販売品

内部販売는 二種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 同業体内에서 販売差別 또는 部門別 商品移替가 發生하는 것인데 会計上 独立經營上 複雜한 問題가 發生하지만 国富推計上 占有別 基準으로 實查評価하여도 無妨하다. 둘째 関係会社間의 販売인데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보아 個人業체가 子会社를 保有管理하는 業체는 全無하므로 問題化되지 않는다.

第 2 節 資產評価의 一般的方法

國富調查上 有形資產의 評価에는 몇가지 어려운 問題点이 있다. 그 어려운 点은 資產이 기껏해야 企業의 帳簿에서 評価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緣由된다. 또한 資產의 取得時期가 각각 다르므로 그 評価에 統一性이 없다.

國富統計目的을 위하여 市価나 其他 時價가 바람직하나 不幸하게도 資產의 所有者가 自己의 巨額資產의 時價를 推定하기란 그렇게 容易하지 않다. 그래서 推定機關에서는 帳簿価額을 集計하고 關係資料를 活用하여 帳簿価額을 推定市価로 調整시키는 作業을 하여야 한다.

1. 帳簿価額

經濟學者は 帳簿価額이나 原始原価 (Original Cost) 를 國富를 推計하는 것은 市価나 其他 時價로 推定하는 것 보다 意味가 없다는 實際的인 意見을 갖고 있다.

一般物価나 關聯된 物価가相當히 變한다면 取得原価는 그 意味를喪失하게 된다.

短期資產이나 新規資產은例外지만 取得原価는 國富의 運用에서 나오는豫定純收益의 現価나 人力으로 만들어진 資本 (Man Made Capital) 의 代置原価를 反映하지 못한다. 資產의 使用年数分布가 企業이나 部門 (Sector) 마다 다르기 때문에 帳簿価額은

充分히 比較될 수 없다.

또한 帳簿価額은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比較될 수 없다. 原始原価는 이미 適用될 수 없으며 또한 帳簿上 固定資產減価法은 經濟的 價值의 減少를 反映하지 못하고 稅法上의 會計実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原始原価나 取得原価 (Original or Acquisition Costs) 를 表示하는 帳簿価額은 私企業이나 帳簿을 備置하지 않은 企業体에 있어서는 確実히 有用한 資料가 된다. 그러므로 取得原価를 審集하는 것은 時価主義 (Current-Value Basis)에 依한 推定에 必須不可欠한 것이다. 어떤 專門家는 一聯의 貸借對照表를 帳簿価額으로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多少間 限界性은 認定되 드라도 이러한 帳簿価額은 諸稅額과 경 우에 따라서는 稅率規定과 같은 意思決定 (Decision)에 參考가 된다. 貸借對照表를 取得原価에 따라 作成할 때 統計上 利点은 既存資本価額의 變化를 아무런 修正을 하지 않고 한 時点에서 다른 한 時点사이의 變化를 總投資에서 資本消耗分을 差減함으로써 說明할 수 있다는 点이다.

FRB部分貸借對照表는 主로 帳簿価額 即 領面 価額으로 作成되었다. 그러나 再評価와 時価推定이 역시 必要한 것이다.

3. 時 価

現市価는 資本財構成要素를 評価하고 結合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合理的인 基礎를 提供한다. 國民生産은 市価나 市価代用価額으로 表示된다. 그래서 国富를 不變価格으로 表示하기 위하여서同一한 基準으로 評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消費財의 市価는 購買者가 期待하는 滿足度를 代表하는 것과 같이 資本財의 市価는豫想収益의 創出能力에 따라 各 部門別로 比較할 수 있으며, 現在 収益과 対應된다. 그러한 価額은 資本財를 基準日의 市価로 表示할 수 있도록 市価變動을 考慮한 때에도 比較될 수 있다.

市価評価의 一般的인 原理는 一般的 目的을 提供한다. 이 原理의 適用上 實務的인 問題가 많이 發生한다. 經濟学者는 個別 資本財의 總計에 関心을 갖을 것인가 或은 資產集合体인 繼続企業(Going Concern)에 関心을 갖게 될 것인가가 問題視된다. 前者를 採択한다면 技術的인 動的變化가 일어난 때에도 特히 比較하기 위하여서는 個別資本財를 如何히 規定할 것이냐가 問題視된다.

資本財가 프라이싱(Pricing)目的 때문에同一한 単位로 規定될 수 있다고 仮定할지라도 資產市場이 構成되지 않거나 存在치 않을 때는 如何히 되며 또한 市価에 代身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된다.

3. 総資產評価와 繼續企業評価

企業經濟部門에서 生産의 単位工場을 構成하는 個別資本財의 價值總計와 繼續企業 (Going Concern) 으로서 生産单位의 價值總計 사이에는 差異가 있다. 基本的으로 이것은 證券市場의 市勢에서 会社의 負債와 資本의 市價를 推定하고 企業內의 資產時價를 把握하도록 企業資產의 市價를 差減하는 것이다.

이것은 個別의 土地 構築物 施設 在庫資產을 形態別 取得年度 別로 市價 (或은 再評價를 위하여 原始原價) 에 依한 推定에서 얻고 이를 다시 產業別로 合計하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方法과 対照된다.

統計的으로는 後者の 節次가 長점이 있다. 國富는 資產의 主要形態別로 細分化하여 推定할 수 있다. 國富推計에는 生產分析에 有利한 企業体單位보다 事業体單位로 產業을 分類하는 것이 有益하다. 더욱이 繼續企業評價法은 非企業部門 (政府, 非營利團體, 家計) 에는 適用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資產形態別評價法이 經濟主要部門에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法人部門에 있어서는 資產形態別評價法으로 推定을 하게 되는 한편 法人企業資料는 거의 繼續企業評價에 活用될 수 있다. 그러나 法人体資產 / 現金流動比率을 非法人企業 - 심지어 同種產業同一規模企業일지라도 - 에 適用할 수 있는가에 關하여서는 問題가 있다. 自己企業을 市價로 評價하기란 좀 危險한 面이 있다. 株式을 市場價格으로 評價한다면 流動性이 있다는 理由로 反對되어 왔으나 株式은 每年末價格을 移動平均한 價格으로 評價하도록 提案되었다. 그래서 Smith教授는 市價豫測과 價格變動의 流

動性이 價格의 要諦를 構成한다고 強力하게 主張하였다.

그으로 Edward Dension이 論及한 바와 같이 企業資產의 總計는 生產函數를 分析하기 위하여 株式의 實價를 推定하도록 價格變動에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理論적으로는 以上의 두가지 方法의 活用에 関하여 많은 論議가 있다. 純純競爭下에서 (完全한豫測)는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企業의 價額은 無形資本을 包含하여 投下資本의 價額과 同一하여야 한다.

그러나 完全한 知識이 없는 現實競爭에 있어서는 資源은 어느 程度 잘못 投資될 수도 있으며 特히 龍大한 固定施設資本이 오래동안 專門化 (例로서 鐵路道床 및 車輛에서와 마찬가지로)된 것이면 이를 쉽게 變更할 수 없는 것이다. 需要測에 不利하게 市場이 展開되면 構成資產의 總價額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對替使用價額)은单一企業이나 企業群의 價額보다 超過할 수 있다. 市場變動이 固定資本의 整理 (Adjustment)關係로 急變한다면 놓게 말하여 거의 半世紀동안 美國의 農業에서 그려하였던 바와 같이 需給의 不均衡이 数十年동안 持續될 수 있는 것이다. 市場이 有利하게 變動된다면 그 反對現象이 造成될 것은勿論이다.

Smith教授가 指摘한 바와 같이 產業別로 繼續企業價值와 構成資產의 總價額을 比較한다면 投資需要分析에 매우 有用할 것이다.

그러나 国富調查實務班의 評價에 関한 심포지움에서 強調된 바와 같이 Smith教授가 提案한 繼續企業의 價額은 主要有形資產의 價額보다 많은 價額으로 売却된다는 것이다.

競爭이 純粹하지 않으면 繼續企業의 價額은 独占의 程度 經營의 豫測 其他 要素에 依하여 影響 받는 바와 같아 企業의 相對的 市場位置를 반영한다. 또한 繼續企業의 價額은 無形資本의 價額과 스텔의 「知識」(Know How) <註 1>에서 나오는 準地代의 價額(研究, 開發, 訓練의 投資에서 部分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리고 特定企業과 產業의 特異한 組織을 反映한다.

더욱이 證券市場의 價格은 時時로 變하여 配當額, 所得稅, 資本利益, 稅率, 割引率의 變動과 같은 純粹한 財務的因素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繼續企業評価法은 企業 特司 法人企業部門에서 國富推計에 有益한 資產의 充當金을 設定한 然後에는 繼續企業價額은 全體로서 各 部門의 國富量을 概括的으로나마 比較할 수 있으며 分析的으로 볼 때 產業別 差異가 매우 意義있게 될 것이다.

Gornan氏가 提案한 바와 같이 企業部門에서 市值에 依한 負債과 請求權(claims) <註 2>의 市值會計額과 繼續企業價額의 差異로 產業部門 및 國民貸借對照表에 나타난다.

이런 方法으로 Smith方法은 國民貸借對照表에 適用할 수 있으나, 產業別有形資產의 國富推計의 基準으로서는 不當하다고 볼 수 있다.

4. 資本財市場의 制約性

在庫資產 市場에 比하여 資本財의 現市場에서는 一般的으로 多種 少量資產이 去來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운 種類의 資本財를 처음으로 生產할 때는 例外지만 一般的으로는 新種資本財는 總去來量의 一部를 占하는 것이 現實이다.

中古再生產可能 耐久財 (Used Reproducible Durable Goods) 와 再生產不能財 (Nonreproducible Goods) 는 總스토크의 極少量에 不過하다.

一定한 時間内에 資本財를 去來 (Market) 하려는 것은 틀림없이 不可能하다. 그래서 全스토크에 適用된 市価는 正常的인 市場条件下에서 決定된 価額을 意味한다. 個人의 自由스런 意思에 따라 預金하고 引出하는 것이 商業銀行의 慣例 (Rule) 인 것과 같이 資本財의 価額은 代置, 再販売, 流動化 等等의 正常的인 去來에 따라 左右된다. 中古再生產可能財, 公有地, 鉱山 몇 가지 課稅對象資產의 경우에 있어서는 市場去來가 設定된다 하드라도 数年만에 한 두件밖에 안될 것이다.

이런 경우 時價는 市價를 適用하는 것보다 다른 方法으로 推定하여야 하는 것이다.

建設原價 (Constructing Cost) 는 国民所得 計定에도 使用된다.

一般政府나 非營利機關이 生產한 財貨 및 用役은 通常의in 意味의 市場에서 去來되지 않으며 原價 (그러나 資本補償을 위하여 充當金을 設定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 로 評價된다.

自己所有建物 (Owner-Occupied Houses) 의 使用料와 여러가지

現物支払価額은 市場에서 去來된 価額을 非市場性의 경우에 適用
함으로써 転換한다.

5. 代用市価

資本財의 代用市価는 市価의 決定要素로 볼 수 있는 3大 카
테고리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한편 特定資本財의 需要側은 潛在購買者나 所有者가 将來豫想
利益의 割引価額을 推定함으로서 決定된다.

아울러 이전 計算值를 倍로 推定할 수도 있다. 또한 再生産可能
財의 경우에 있어서 供給側은 収益能力을 造出하는 機会原価 (Opportunity Cost) <註 3>를 反映한다. 그리고 이 機会原価
도 推定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需給兩側의 交叉点은 市価를 의미하며 있을 수 있고 散發的인 去來나 類似한 資本財形態로 가끔 이루어진 去來에
익숙한 사람이 推定할 수 있다. 우리는 評価技法이라고 볼 수 있는 세째 方法부터 다룰 것이다.

6. 評価

資產의 現在価値는 直接的 또는 保險価額과 같은 間接的으로
所有者나 或은 資產価格에 밝은 專門家인 外部評価者가 評価할
수 있다. <註 4> 勿論 評価者は 類似資產의 市価水準 및 趨勢,

良好한 収益能力, 代置原価, 其他 要素를 評価 한다. 評価専門家는 例로서 願買者 및 購買者를 仮想하여 어떤 仮定의in 条件下에서 売을 수 있는 市価를 推定한다.

그 첫째 方法은 財產評価法이다. 그런데 財產評価法은 財產税를 賦課할 目的으로 評価한 方式이며 查定価格과 市場価格 사이의 推定關係를 表示한 比率에 依한 것이다. 이것은 美国의 1850 ~ 1922年 初期国富센서스에 主로 適用한 方法이다. 地域別查定価格 對 市価率은 美国聯邦裁判所 裁判官 (Marshal) 과 센서스局職員이 決定한다. 美国의 最近 센서스報告書에 의하면 形態別 地域別로 그 해의 所有權이 移転한 標本資產의 查定価格과 市場価格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이 比率은 市場에 있는一部의 財產에서 얻은 比率이 全財產을 代表한 것이라는 合理的인 仮定下에 形態別 地域別로 모든 查定価格에 適用될 수 있음이 分明하다. 그 查定方法은 動產보다 不動產에 더욱 多이 適用될 수 있다. 各州의 稅法은 不動產보다 課稅動產에 關하여 매우 다르며 課稅節次는 더욱 다르다. 그러나 不動產에 關한查定価格은 企業体應容者로 부터、直接 求한 数値에서 適切한 附隨의in 方法 및 檢討를 通하여 補完된다.

7. 将來推定利益의 割引

둘째 主要方法은 一般的으로 売買되지 않거나 或은 法規上으로 売買가 禁止된 資產의 경우 将來豫想所得을 割引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土地와 鉱山資源에 適用하기에 알맞다. 鉱山資源의 價額을 推定한 것은 美國 内務省(Interior Department)에서 使用하였다 것이다.

이 方法은 (a) 生產率, 生產性, 投入算出価格 그리고 資本設備의 總 및 純所得을 策定하는 것, (b) 財產의 現價計算을 위하여豫想純所得에 割引率을 適用하는 것의 節次가 있다.

(a)의 策定은 複雜하다. 私企業体가 新資本支出의 良好한 収益性을豫測한 것보다는, 複雜하다. 割引率을 適切하게 策定하는 問題가 있는 바, 公企業에서의 割引率을 策定할 때는 平均借入利子率을 參考한다. 만약 施設을 適切히 活用하지 않아서 純収益이 減少된다면 (특히 公共財產에도 해당한다), 資本價值가 非効率的인 利子率로 策定된 純収益을 資本化함으로써 低評價될지의 여부에 関한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非金錢的인 所得이 없다고 仮想하면 그 解答은 否定的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價值은 現實에 関聯되어 使用形態 및 使用密度가 주어진 現實의이고豫想된 収益에 関聯되기 때문이다. 公企業은 副収益으로 補償하지 아니하며 資產을 制限하여 使用한다면 그 資產은 단지 一般大衆에게 転稼하여 減少시킬 뿐이다.

만약 實際使用者負担이 適正線(現在 價值을 極大化하는 것)以下이면 貸借公正資產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後者(補助金)가 推定되고 転稼된 評價가 될 수 있다. 施設의 大部分이 無償으로 設備되었다면 그 問題는 더욱 어렵게 된다. 代替하여 使用

한 價值 (類似한 財產이 인접하여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比較할 수 있다면 그 價值로 使用할 수 있는 바와 같이)로 施設 (國立公園과 같은)의 價值를 推定할 때는 서어 서비스의 純價値를 推定한 것보다 誤謬가 더 적을 것이다.

8. 代置原価

再生産可能한 固定資產 (構築物 및 施設)의 市価를 推定하는一般的인 方法은 減価消却한 代置原價를 推定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이러한 方法에는 總代置原價를 알기 위하여서 資產形態別로 前期各年度의 購入品을 前年度価格 对 市価率을 乘하고 純價額 即 減価消却한 代置原價를 얻기 위하여서는 既存耐用年數의 資產과 同一한 資產의 價值消耗를 推定함에 따라 計算한 減価費를 購入原價에서 控除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以上과 같은 方法이 利用되나 그 理論的 内容과 条件이 認定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時価에 依한 總스토크 —— 첫째 物價變動을 考慮하여 原始原

価 (Original Cost) 를 代置總原價로 評価하여 보자. 代置原價를 表示하도록 資本財를 再評価하기 위하여서는 新資產의 物價指數가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곧 物價單位나 再評價單位에 関한 問題를 慮起시킨다. 이런 問題는 資本財生產의 生產性이 變動되고 同時に 資本財의 物理的 性能과 生產 및 収益產出能力이 달

라지는 動態經濟下에서는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다를 때 우리는 再評価单位가 資本財의 物理的性能에 따라 細分되어야 한다는 Edward Dension의 意見과 一致하여 資產代置時에 新旧形態(物價算定時 Bureau of Labour Statistics의 理論的인 節次)間의 生產費差異에 따른 調整과도 一致하게 된다. <註 5> 資本財의 物理的單位는 그 資本財生產에 所要된 投入量이나 (이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一般的으로 減少된다) 그 資本財의 生產能力 (이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보통 增加한다) 과 混同되어서는 않된다는 点이 重要한 것이다.

上述한 첫째의 混同은 避하기 쉽다. 例로서 物理的 特性과 生產能力이 兩時點間에 變하지 않으나 이 機具를 製作하는 경우에 生產성이 倍加되는 (機械當 実際收入要素가 半減되는) 하나의 機具를 들어 보자. 또한 우리는 資本施設의 数量이 半減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 即 이는 實際로 發生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나 生產성이 倍加되었음을 意味할 뿐이다. 같은 機械는 그 처음 生產時에 技術水準(生産性)에 주어진 實際原価를 表示하여야 한다.

標準機械의 生產能率을 增大시키자면 그 機械의 價格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平均要素價格(利益包含)이 그 生產에 所要된 生產要素가 平均生產性의 變動만큼 變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資本財의 物理的 性能과 모델의 變化와 더불어 달라진 것을 생각하여 보자 이 点에 関하여 Dension(그리고 BLS의 理論的인 節次)은 그 性能의 差에 따라 實際原価로 機械原

価値을 調整하였을 것이다.

設令 우리가 初期에 新・旧型機械를 購入한다 할지라도 이 節次는 初期技術로 原価나 投入量을 表示하는 實際原価의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節次의 一般的인 効果는 뚜렷한데 이는 物価指數에 따라 特定지워진다. 1970年에는 同年에 施設된 新減価資產의 價値는 1千億弗이라고 仮定하자 1970年以前에 生産되어 아직까지 스토크로 남아 있는 減価資產을 再生産하는 데는 20,000 億弗이 所要되었으나 旧資產을 現技術로 生産한 資產으로 代置하는 데는 불과 15,000 億弗이 所要된다고 仮定하자 既述한 節次에 依하여 1970年末에 總資本量은 16,000 億弗이 아니라 21,000 億弗로 測定될 것이다. 換言하면 旧資本財는 生產에의 寄与能力을 比較한 것이 아니라 同日字에 再生産原価를 比較함으로써 新資本財와 一致될 것이다.

不變價格에 依한 總스토크 —————— 여려 해를 거쳐서 不變價格으로

總스토크의 價値를 알자면 計算上 時価代身에 어떤 特定基準 年度의 價格으로 代置하면 된다. 그 結果는 이러한 資產의 生產原價面에서 相異한 두 時point에 있는 資產을 同一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1970年 價格으로 評価한 總減価資產이 1968年에는 20,000 億弗로 1970年에는 21,000 億弗로 된다면 이것은 1968年스토크보다 1970年스토크를 代置하는 것이 5% 더 비싸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1970年 스토크는 아마 性能이 進歩되었기 때문에 1968年 스토크보다 生產에 5% 더 많은

寄与를 할 수 있을 것이다. 總스토크를 測定할 때 相異한 時點에 生產한 減価資產을 同一化하는 方法은 時価와 不變價格을一致시키는 것이다.

上述한 예를 다른 方法으로 說明하여 보자 모델 t 는 주어진 날에 모델 $t - 1$ 보다 實際原価가 10% 높으며 모델 t 的 價格은 $t - 1$ 年에 모델 $t - 1$ 的 價格보다 15% 높으며 모델 t 는 生產에 寄与度가 모델 $t - 1$ 보다 20% 많다고 仮定해 보자 우리의 調整節次에 依하면 價格의 純增加는 約 5% ($\frac{1.15}{1.10}$)로 推定된다. 그리고 모델 t 는 生產에 寄与度가 20% 많다고 할지라도 實際資本이 모델 $t - 1$ 보다 10% 더 많다 이것은 價格低落 (Price Deflation)에 依하여 얻어진 것인지는 初年度 價格에 依하여 原価가 調整된 物理的 単位를 追加하여 얻어진 것인지는 하나의 結果이다. 그것은 現在하거나 알 수 있는 物價指數나 物價水準과 함께 얻어진 唯一한 結果인 것이다.

資本의 實際價值는 純利益의 創出能力에 있는 것인 生產量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란 点을 銘心하여야 한다. 新機械의 生產能力이 實際原價보다 빨리 上昇하는 것과 같이 純収益도 역시 機械의 初期購入者가 使用함에 따라 上昇한다. 經濟理論에 依하면 非正常的인 利得은 競争의 進行됨에 따라 점점 減少한다고 한다. 그래서 新機械의 價格은 正常利益을 包含하여 그 原價에 接近하게 된다. 新投資에 對한 収益 (Return)은 그 生產能力보다 資本財의 繼続的인 모델原價 (正常 Markups 包含)에 거의 比例하여 움직인다. <註 6>

위에서 든 예에서 新모델 t 는 前期의 旧모델 $t - 1$ 과 同率의 収益을 獲得한 点까지 購買될 것이다. 그래서 機械當 實際收入은 旧모델에 依한 機械보다 10% (20%가 아님) 가 높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델 t 的 높은 生產能力은 모델 $t - 1$ 의 時価減少에 反映될 것이다. 이것은 後述할 減価消却費와 減価된 代置原価를 推定하는 重要한一面이 된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品質의 變更은 제쳐 놓고라도 一定한 時点의 価格으로 資本財의 總再生產原価는豫想純収益力を 反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固定資產의 未来純収益力의 減少傾向은 反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一定 時点에서 스토크를 새로이 生産하기 위한 費用을 反映한다. 時間의 흐름에 따라 總스토크를 不變価格으로 表示한 初年度의 推定物価만 주어진다면 (規定된 方法으로 모델變更를 調整하고) 物量의 變化를 反映한다 그 推定은 經濟的이며 物量基準에 입각한 것인데 이는 스토크의 廢棄時期와 總스토크의 規模를 決定 짓는 諸固定資產의 經濟的寿命이자 物理的寿命이 아닌 것이다.

時価로서의 純스토크 ————— 減価資產의 總價值를 時価로 推定

하게 되면 減価消却을 推定하여 純価値를 알기 쉽다. 市価推定方法과 같이 純스토크는 資本財로 부터 未来에豫想되는 収益 흐름의 現在価値(現価)에 接近하게 된다.

減価資產価値를 推定하자면 國富를 알 수 있도록 다른 市価推

定值와 적절히結合하여야 한다. 減価推定은 實際總費用測定으로
看做되어 왔으나 減価充当金은 주로 資產価値의 減少를 經濟的으
로 测定하는 것이다. 資本財의 価値는 ——真正한 意味에서는
寿命 —— 市場에서決定된다.

減価充当金과 純스토크推定도 마찬가지이다. 使用中인 工場과
施設의 市価는 減価資產을 評価하는 直接的인 方法일 것이다.
大部分의 資產이 組織의 中古品市場에서 去來되지 않기 때문에
減価는 推定될 수 밖에 없다. 多種多樣한 資本財의 寿命은 여
러 가지 調査나 廃棄日에 따라決定될 수 있다. 新資產에 適
用될 수 있는 減価費曲線의 模型을 推定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
이다. 이것은 去來된 資產의 流通価格에 입각한 資料로 부터
類推하고 去來되지 않은 것에도 適用될 수 있다.

減価된 代置原価와 市価(이것이 存在한다면)의 差異는 두 가지
主要한 理由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 하나의 理由는 減価曲
線에 基礎를 둔 資料의 正確性이 曲線形式上의 性質, 그리고
減価消却이 期間에 無關하다는 事實에 關聯된다.

減価推定을 間接的인 性質의 觀點에서 다룬다면 需要의 繼続的
인 變化는 固定資產의 市価가 延長된 時期에 特定資產의 代置原
價보다 떨어지거나 오르게 하는 作用을 한다. 特定資本財의 収
益을豫想하지 못한다면 中古資產의 市場価値는 減価된 再生産原
價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利益이 以前의豫想水準에
達할 때까지 新資本財의 購買는 減少되기 때문에 그 差異는 一
時的일 것이다. 中古資本財의 供給이 相對적으로 떨어지면 그

財貨의 價值는 減価된 代置原價를 向하여 오르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新財貨의 購買가 增加하고 따라서 中古資本財의 供給이 漸增하므로 이러한 現象은 収益力이豫想을 超過하는 中古財貨의 價值를 골고루 떨어지게 하는 傾向이 있다.

減価된 代置原價를 推定하는 것은 市價나 實際價格이나 仮想價格에 다소 近似함이 分明하다. 이러한 近似值에도 불구하고 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입각하여 富를 推定할 때는 有用한 分析을 하여야 한다.

市價로 純ストック를 測定하기 위하여 新旧資本財의 價值를 同一하게 하도록 品質을 變更시킨 方法은 総ストック를 測定하는 方法과 서로 矛盾된다. 減価資產의 純價值는 総價值의 減価額으로 떨어진다. 그 理由는 그 資產이 物理的인 面에서 減耗되고 그래서 時間이 지남에 따라 効率이 減少하고 物理的壽命이 減少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中古財貨는 改良될지라도 生產能力面에서 新資本財보다 相對的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不足한 減価充当金으로 物理的消耗와 陳腐化를 充當하는 데서 招來된 것이다. 統計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現状은 減価消却의 計算上 適用한 耐用年數가 物理的壽命이 아니라 陳腐化로 縮아진 만큼 現實壽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陳腐化는 減価消却計算公式을 選定할 때 考慮되고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蒙起된 것이다. 그 結果는 物理的要素에 대한 充當金은 除外하고라도 서로 다른 年度에 生產한 減価資產은 原則的으로 주어진 時點의 生產原價에 依하여서가 아니라 生產能力에 따라 同一하게 되는 것이다. 모델 t-1과 모

델 t 는 t 年度에 製作될지라도 다같이 100 弗이 所要되었으나 모델 t 는 年当生產寄与度가 2 倍가 될 수 있음을 想定하여 보자. 모델 $t-1$ 的 物理的寿命은 半減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자 (그러나 生產의 寄与度는 節減되지 않는다). t 年度에는 두 資產의 純스토크는 모두 200 弗이다. 그러나 純스토크 (割引要素를 無視하면)는 150 弗이 아니라 125 弗이며 그 差異는 陳腐化를 나타낸다. 이 理由 때문에 純스토크의 推定은 現市価에 接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不變価格에 依한 純스토크

上述 한 것은 서로 다른 年

度에 不變価格으로 純스토크를 比較하게 된 것이 아니다. 廢棄充当 (Obsolescence Allowance)은 純스토크의 水準에 影響을 주나 每年度에 類似한 充當이 되므로 品質變更으로 減縮된 純資產의 움직임에 影響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減縮된 純資產의 5%增加에 依한 說明 (이 問題에 関한 限)은 初年度에 第2次 年度의 純스토크를 代置하는 原価는 第1次年度의 純스토크를 代置하는 原価보다 5% 높다는 것이다. 스토크의 品質을 改善한다면, 第2次年度의 純스토크의 生產寄与度는 5% 높다.

〔註1〕 Know-how 即 製造技術上의 方法으로 同種會社間의 競争에 대처하기 위하여 機密로 保持하는 것이 보통이다. Innovation speed 가 빠른 現代產業社會에서 超過利潤을 創出하는 主要한 原動力이 이 know-how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開發途上의 나라는 先進國의 know-how 使用
料로 막대한 licence fee 를 支払하고 있다.

〔註 2〕 広義로 請求權이란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의 合計인 總資本
을 말하나 여기서는 좁은 意味로 自己資本만을 뜻한다. 다
시 말하면 貸借對照表 貸貸 總計에서 他人資本인 諸負債를
差減한 價額으로서 表示되며 細分하면 資本金과 諸剩餘金이
있다.

이 말은 会社를 解散하거나 解散한다고 假定할 때 資本
主가 会社에 對하여 要求할 수 있는 所持分價額이란 뜻에
서 緣由된다.

〔註 3〕 機会原価는 材料·勞動 또는 設備 等의 諸資源에 대한
代替的 諸用途中 어떤 하나를 抜함으로써 다른 用途를 牺
牲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이러한 牺牲을 貨幣價値로서
算定한 것을 말한다.

〔註 4〕 Tibor Barna 는 英国에서 代置原価에 有用한 方法으로 火
灾保險評価法을 適用했다. F. A. Lutz 와 D. C. Hague의
稿 「所得과 富」 Vol. Ⅳ의 「資本測定의 代替的方法」
그리고 「資本理論」의 「資本測定에 關하여」 參照

〔註 5〕 Edward F. Dension, 所得과 富의 研究 Vol. 19 「資
本形成問題에 있어서 『質的變化, 資本消耗, 純資本形成에 關
한 理論的 考察』」: Measuring Nations Wealth 1964.의
附錄 I J部 參照

〔註 6〕 John W. Kendrick, 「美國經濟研究紙」 Vol. LI, No. 2,

1961年5月 「資本測定의 理論的 側面」[参照]

第3節 資本資產의 評価

十餘年前만 해도 資本理論을 「混亂」(Mess) 그것의 代名詞처럼 생각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成長經濟學 (Growth Economics)이 學界의 関心을 끌기始作한 以來 資本及 資本의 理論과 그 評価에 對한 從來의 態度는 바뀌어지고 있다. 資本 資產에 있어서 그 分析上 또는 實際上의 諸難點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資本理論의 重要性은 널리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其間 斯界의 一般的인 認定을 받아 온 바 있는 資本 資產의 評価를 為한 諸方法을 概觀하려 한다. 各己의 評価方法은同一한 資本資產을 相異한 側面에서 評価하게 됨에 따라 그 評価 method이 評価를 意圖하는 바 資本資產概念의 評価能力 정도에 따라서 批判的으로 論議될 것이다. 이에 몇 번에 이 小考는 事業體 (Establishments)의 純市場價值에 立脚하는 바 資本資產의 補完的 評価方法 - 즉 資產計定上의 附加價值에 依하는 方法을 試圖 코져 한다.

I. 資本의 概念

論者가 생각하기에 「資本」이라는 用語가 가지는 바 그 特性은 그 存在가 바로 生產이라든가 販売등의 經濟活動에 必要不可

決한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活動을 拡大시킨다는 事實에 있다.

한편 資本資產의 이러한 存在性 (This quality of being present) 은 上記의 諸經濟活動에 依하여 簡單히 變更되지도 않는다. 어떤 意味에서 였든 投下資本의 消耗라는 것은 原材料라는 가 動力등의 消費와는 本質의 으로 区分되어야 한다. 이러한 理由로 所謂 資本消費 (Capital consumption) 라는 用語가 잘못 解釈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資本이 가지는 바 그有一한 特性은 그것이 消費되지 않는다는 事實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經濟的인 効率性을勘案함으로 資本資產은 更新될 때로이면 결코 消費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生覺하여 볼 때 知識 (普通 人的 資本으로 分類된다) 이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보면 使用에 의하여 消費되는 것이 아니며 차라리 大部分의 有形耐久資產보다도 더욱 資本다운 所以를 갖게 된다. 한편 上述한 存在 (Presence) 의 概念으로 부터導出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資本概念을 생각할 수가 있다. 즉 그 所有者의 未来所得을 增大시키는 것은 어느 것이 되었든 資本資產의 範疇에 包含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資本資產이 生產의이며 現在 消費되지 않는다는 事實로서 이미 叙述된 바와 같다.

以上의 基本的인 議論은 나아가서 資本資產의 「플로우」概念과는 대비되는 「스톡크」의 問題를 提起한다. 적어도 資本資產의 正當한 評価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評価는 生產 내지 販売活動 가운데서 存在하는 「스톡크」 내지 「在庫」로서 把握되어야 만

한다. 「耐用年数」(Services)는 資本資產이 生產過程에 存在함으로서 그 資產의 生產上의 寄与度를 測定함에 있어서 有用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產性의 分析이라고 하는觀点에서 볼 때 이는 実際上 別로 効用이 없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資本資產에 있어서 例를 들면 建物의 耐用年数 (Building-Hours) 라든가 送水管의 耐用年数 (Pipe-Line-Hours) 등과 같은 「耐用年数」의 把握이 별다른 意味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機械등과 같이 一定期間의 嫁動後에는 磨滅되고 마는 資本資產의 경우 그 機械의 耐用年数가 生產途中에 消費되는 原材料라든가 動力 其他 經常投入量 등을 들 때, 評值에서 누락되었던 餘他資產의 獨立的인 評価基準을 마련하여 준다고는 보지 않는다. 資本資產이란 生產이 일어날 때 거기에 存在하는 바로 그것이며 그 使用度 (The Intensity of Utilization)는 一定한 產出高比率을 놓는 經常投入比率에 의하여 把握될 수가 있다. 機械의 耐用年数는 使用度의 概略的인 把握 (the crudest measure) 以外에는 별로 効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機械가 餘他의 機械보다도 倍以上的 稼動能力을 發揮하드라도 결국 두 機械는 모두 同一한 耐用年数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어느 한 機械가 다른 機械에 比하여 倍의 稼動能力을 發揮하기 為하여서는 다른 機械의 그것 보다도 더욱 많은 原材料를 必要로 할 것 아기 때문이다. 經常的으로 投入되어 消費되는 物量 (Vector)은 資本資產과 더불어 或者가 「機械의 耐用年数」에 의하여 推計를 試圖하려는 資本資產의 諸側面을 充分히 說明

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일정 水準의 綜合段階에서 그 意図하는 바 目的에 따라 或者는 餘他의 經常投入量 代身에 工場稼動時間 (Plant Operating Hours) 과 같은 요인을 導入할론지도 모른다. 이별 경우 만일 별로 많은 費用이 所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센서스」樣式으로 부터 적당한 設問을 除外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以後 우리의 觀心을 「스톡크」로서의 資本資產의 評価問題에만 局限시킬 생각이다. 특히 그 밖에 것에 대하여는 実際上 별로 問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資本 「스톡크」의 價值評価問題에만 觀心을 가질 것이다. 勿論 그 評価價値는 物價變動을勘案하여 「디플레이트」한다거나 또는 리플레이트함으로서 具體的인 數値 (physical-like terms) 로서 表現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看過하고 싶지 않은 問題들이 많으나 実際 이러한 指數문체에 대하여서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고 이에 대한 議論을 以上으로 마친다.

2. 資本「스톡크」의 伝統的評価方法

從來의 經濟學者들이 試圖했던 바 資本「스톡크」의 評価는 다음의 세가지 方法으로 要約될 수 있겠다.

첫째 廢業処分 (Retirements) 과 物價變動을勘案하여 그 資產에 대한 累積的 投資支出로서 評価毛粗 (또는 未減價償却 (Undepreciated) 「스톡크」

둘째 現存「스톡크」를 經常市場価格으로 評価하여 나오는 純(主
는 減価償却된) 「스톡크」
세째 「스톡크」의 所有로 부터豫想되는 將來純所得의 割引된
現在価値

우리는 觀心의 焦点을 粗概念 및 純概念에 立脚하는 「스톡크」
의 評価問題에 局限시 키며 한다.

資本資產評価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方法은 經濟分析上의 觀
心에 따라 相異한 効用을 갖게 될 것이다. 粗「스톡크」는 資
本의 實質粗費用 (The gross real cost of capital) 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評価하려는 資本資產을 形成하기 為하여 投下되었
던 財貨 또는 用役의 總価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評価
方法은 再生産이 可能한 有形資產의 評価에 흔히 導入되는 것으
로서 基本的으로 이러한 評価方法은 餘他形態의 資產評価에도 利
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教育이나 訓練에 投下된 公共支出
및 民間支出의 推計 系列로 부터 知識「스톡크」(즉 人的資本
내지 組織資本 Organizational capital) 的 評価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純「스톡크」에 의한 評価는 現存 「스톡크」의 選
択的 源泉価値 (The alternative resource value) 를 나타낸다.
純「스톡크」는 粗「스톡크」보다도 작다. 왜냐하면 便用하여 오
면 資本財의 市場価値는 新品資本財의 그것보다도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理由를 보자면

- ① 老朽化 (Deterioration) - 過去로부터 使用하여 오는 資本
財는 同一한 技術下에서 新品資本財에 比하여 그 生產性이

낫을, 것이며 더욱重要的理由는

② 그資本財의 經濟的壽命의 消滅 (Exhaustion of Economic Life)에 있다. 使用하여 오던資本財는

③ 그生產性의 遷減으로 因하여 實質生產年數는 즐어 들게 될 것이며 한편 現存資本財에는 導入될 수 없는 技術發展에 따라 經濟的代置 (Economic Displacement)라고 하는 恒常的危機에 直面할 것아기 때문이다.

만일 粗概念에 의한 資產「스톡크」의 評価를 抨할 것인가 아니면 純概念에 의한 評価를 取할 것인가 할 때 前者를 抨할 것이 좋다. 그 하나의 理由는 이렇다. 즉 利用可能한 實際的인 資料의 面에서 볼 때 粗「스톡크」의 評価를 為하여 利用할 수 있는 「데이터」가 純「스톡크」의 評価를 為하여 使用된 「데이터」보다도 보다 正確할 것아기 때문이다. 다른 理由는 粗「스톡크」에 의한 評価가 生產性이라는 것인가 또는 生產函數의 分析등과 보다 깊은 連関을 가지는 것이며 또 實際資本資產의 推計가 가장 많이 利用되는 것도 이러한 類의 分析에서 利用될 수 있을 것아기 때문이다. 基本적으로 볼 때 資本이 本来의 機能을 發揮하는 것은 資本資產이 生產活動에 寄与하기 때문이며 同時에 粗「스톡크」는 生產性의 分析에 있어서 重要的 하나의 变数를 이루는 것아기 때문이다. 이러한 見解는 資本財를 비롯하여 工業部門의 生產函數로부터 實際的으로 強力히 밀 받침 되고 있다. 한편 Barna 教授의 標本調查에 의한研

究結果는 보다 正當한 論証을 보이고 있다.

④ 代置原価(Replacement)는 다음의 두 概念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가 있다. 즉 未減価代置原価(Replacement Cost New)와 減価代置原価(Written-down Replacement Cost)가 그것이다. 經濟理論上의 資本価値라는 觀點에서 보자면 後者가 보다妥當할 것이며 前者の 경우 역시 諸生產關係의 研究에 그重要性을 가질 것이다.
一般的으로 어느 資本資產의 価値는 그 經濟的 効率性의 遷減보다도 훨씬 빨리 遷減하는 것이며 또 實際에 있어서 어떤 資本資產은 그 効率성이 全然減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理由로 未減価代置原価와 產出高간의 관계는 減価代置原価와 產出高간의 그것 보다도 훨씬 安定的인 것이며 여기에서 前者の 方法이 資本資產의 附加投資分을豫測하는 点에 있어서 보다妥當성을 갖게 될 것이다.

어느 產業에 있어서는 維持費가 그 資產의 廢棄에 아르기 까지 繼続됨으로서 資產의 価値가 保全되나 그렇지 못할 때 그 資產은 価値를 잃고 말 것이다. 建物등은 補修라든가 現代化에 의하여 同一한 形態의 새로운 建物과 比較가 될 정도로 現狀의 維持가 可能한 것이다.

純「스톡크」보다도 粗「스톡크」에 의한 評価를 주장하는 것은 生產性의 分析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地域이라든가 產業 내지 國家에 있어서 蓄積된 資本「스톡크」가 가지는 選擇的 源泉価値를 評価하는

數值에 觀心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純「스톡크」에 의한 評
価方法이 보다 適切하리라고 본다. 生產性의 分析이라고
하는 한 가지 要求만으로 서도 왜 純「스톡크」에 의한
評価보다도 粗「스톡크」에 의한 評価를 주장하는가 하는
理由는 說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以外에 粗「스톡크」를
區分하는 세번째의 理由를 볼 수 있다. 投資支出이란 其
實 正確하게 実現되고 있지 않다. 特히 新型資本財의 경
우 그 投資支出은 期待하였던 것보다도 많거나 또는 적게
資產의 具体的인 実現을 招來할 것이다. 結果는 生產이
適正規模로 拡大될 때까지 最初로 生產된 財貨에 있어서는
資本收益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 資本財가 期
待하였던 것 보다도 낮은 生產性을 나타낼 때 그 資本支
出의 価値는 급격한 下落을 나타낼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이러한 資本財에 있어서는 純「스톡크」에 依한 評
価가 生產性의 研究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粗「스톡크」에
하는 것 보다도 妥當 할 것이라 생각된다.

資產評価의 第3의 方法 즉 資產의 割引된 現在価値를
求하는 方法은 人的 資本의 評価에 있어서 가장 많이 利
用되어 왔다. 人的 資本이라고 하는 特殊한 資本資產은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바 市場도 없는 것이며 이러한 市場
에서 新・旧의 区別도 不可能한 것이고 또한 磨滅 (scrap)
이라는 現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별로 이상스러
울 것이다. 이러한 姿意性은 다음의 割引公式에서도

分明하다.

$$V = \sum_{t=1}^{\infty} \frac{E(R_t)}{(1+r)^t}$$

여기에서 r 은 割引率, $E(R_t)$ 는 t 期에 있어서豫想되는 資本資產의豫想收益, 그리고 V 는 資本資產의 現存価値이다. V 를 算定하기 為하여서 $E(R_t)$, $t = 1, 2, \dots$ 를 推計해야 하며 r 을 選定해야 한다. 여기에서 推計上 誤差의 潜在的 可能性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가. 有形資產「스톡」의 粗価値

過去의 文獻으로 부터 粗「스톡」評価의 두가지의 方法을 알 수 있다. 하나의 方法은 火災保險 대지 이와 類似한 評価方法을 援用하는 것이며 다른 方法은 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한 그것이다.

大大的으로 火災保險評価에 對한 調査上의 知識을 얻기가 어느 정도 実現可能性이 있는가는 疑問이다. 「R.W.Goldsmit教授」가 말하듯이 이 方法은 1913年 独逸에서 導入하였던 것으로서 伝統的인 評価方法이다. 그는 나아가서 이러한 評価는 全體的인 計數의 把握에 있어서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Barna」教授는 英国에서 이러한 評価資料의 수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報告하면서 帳簿價格의 利用을 主張하였다.

聯邦政府에 依한 全般의이며 繼續의인 国富推計가 이루어 지

지 못하였던 당시에 国立經濟研究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의 R·W· Goldsmith 教授와 그의 同僚들은 1896 年에서 1958 年에 이르는 동안의 全國家有形資產의 總評価를 試圖한 바 있었다. 이러한 一連의 系列은 Goldsmith 教授가 주장하였던 「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導入함으로서 再生産이 可能한 有形資本 「스톡크」의 評価는 그 資產의 應定耐用年數 (Assumed Life) 에 걸쳐 이루어진 資本支出의 總計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었다.

i 型의 資產이 一定한 耐用年數 L_i 을 가진다고 假定할 때 이는 以前의 總資本支出로 부터 廢棄分 (Requirements) 을 差減한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Ei(t)$ 가 t 期에 걸쳐 i 型 資產에 対한 總投資支出 그리고 $Ri(t)$ 가 t 期에 廢棄되는 資產을 代置하기 為한 總支出을 나타낸다면 T 時點에서 i 型 資產의 粗「스톡크」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3.1) \quad Gi(T) = \sum_{t=1}^T [Ei(t) - Ri(t)]$$

最初의 假定에 의하여 $Ri(t) = Ei(t - Li)$, 한편 최근에는 $Ri(t) = Ei(t - Li) = 0$, $1 \leq t \leq Li$ 이므로 上式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3.2) \quad Gi(T) = \sum_{t=1}^T [Ei(t) - Ei(t - Li)]$$

$$= \sum_{t=1}^T Ei(t) - \sum_{t=Li+1}^T Ei(t-Li)$$

$$= \sum_{t=t_i+1}^T E_i(t)$$

Goldsmith 教授의 이러한 평価方法은 어느 자산이 一定한 耐用年数에 이르기 까지는 그機能이 持続的으로 維持되나 (Zero Mortality) 그 以後에는 갑작스러운 機能의 消滅을 招來한다고 하는 极히 単純化된 (아마 必要하겠지만) 仮定에 立脚하고 있다.

理想的으로 追求하는 평価方法과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 또는 費用등에 의하여 制約되는 평価方法을 区分하여야만 되겠다.

理想的으로 $F_i(t)$ 가 t 期에 있어서 자산의 残存率 그리고 M_i 을 i 자산의 极大耐用年数라고 한다면 T 年에 있어서 i 자산의 粗「스톡」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3.3) \quad G_i(T) = \sum_{t=0}^{M_i-1} E_i(T-t) F_i(t)$$

$F_i(t) = 1, 0 \leq t < M_i = L_i$ 라는 仮定에 의하여 위 式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3.4) \quad G_i(T) = \sum_{t=0}^{L_i-1} E_i(T-t)$$

이는 (3.2) 式과 同一하다.

Barna 教授는 이 평価方法의 仮定, 即, 前提 (Approximation), 즉 모든 자산이 一定한 耐用年数에 이르면 廃業된다고 하는 것을 批判하였다. (Barna 教授가 英国製造業 자산의 耐用年数 (Mortality) 를 直接적으로 標本調査한 結果는 (3.4))

式이 나타내는 直角曲線 (Rectangular Curve) 과 대비되는 바
残存価가 線型의 減少曲線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러한 諸
見解가 資產의 耐用年数에 對한 一般的인 特徵을 말하는 것이
라면 다음과 같은 線型의 假定 (Linear Approximation) 이
必要할 것이다. $F_i(t) = 1 - \frac{t}{2L_i}$, 여기에서 $M_i = 2L_i$, L_i 은
i 財의 平均耐用年数이다. (3.4) 式 代身에 評価式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5) \quad G_i(T) = \sum_{t=0}^{2L_i} E_i(T-t) \left[1 - \frac{t}{2L_i} \right]$$

$$= \sum_{t=0}^{2L_i} E_i(T-t) - \frac{1}{2L_i} \sum_{t=0}^{2L_i} t E_i(T-t)$$

Barna 教授는 1955 年 英國製造業에 있어서의 $G_i(T)$ 를
그의 直接的인 評価와 P. Redfern 氏의 繼續記錄法에 의한 評価
를 比較하고 있다. 그는 그가 얻었던 重要資產으로서 50 %의
약 $\frac{1}{2}$ 정도는 繼續記錄法에 의한 評價에 있어서는 耐用年数假定
과 合致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Barna 教授의 이러한 主張이 一般的으로 모든 資產에
適用될 수 있다면 (3.5) 式과 같은 評価式이 $G_i(T)$ 的 보다
正確한 評価를 나타낼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政府
에 의한 國富統計調查를 為하여서는 資產의 耐用年数에 関한
보다 妥當한 資料의 수집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点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나. 有形資本「스톡크」의 粗価値

純「스톡크」의 價値는 構築物 내지 裝備등의 新品價格과 使用中의 資產의 市場價格으로 부터 分明히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極히 一部의 特殊한 資產에만 妥當할 것이다. 運輸裝備(트럭·트레일러·飛行機等) 農機具 및 一般機械器具·原功機等이 이에 屬할 것이다. 가능한限 이러한 「데이터」는 寶集되어야 하며 이는 理論的으로 粗「스톡크」의 價値와 関聯을 갖기 때문이다. 비록 制限된 범위의 資產일 망정 純「스톡크」의 價値가 價格「데이터」로 부터 얻어질 수 있다면 이는 同一한 資產에 있어서 減価償却控除後의 帳簿價格 내지 粗價値(or 支出)로 부터 얻어진 純「스톡크」의 價値와의 比較가 가능할 것이다.

純「스톡크」의 價値에 많이 利用되는 것이 帳簿價格에 의한 價値方法이다. 帳簿上의 資料에 의한 價値方法이다. 帳簿上의 資料에 의한 諸「데이터」는 稅金控除後의 収益率을 極大化하려는 方向으로 減価償却比率이 決定되기 쉬우며 따라서 이는 그 資產의 市場價值의 減少와는 無關하거나 아니면 거의 乘離된 狀態에서 決定되기 쉽다는 欠点이 있다. 大部分의 資產은 稅法이 規定하는 바 最低耐用年数(Minimum Write-off Periods)를 超過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稅法上의 規制를 別途로 하더라도 一般的으로 企業의 減価償却對策은 極히 變하기 쉬우며 또한 姿意的이다.

Stigler, Creamer, Dobrovolsky 및 Borenstein氏와 餘

他人의 研究는 大部分이 企業稅務報告로 부터 수집된 帳簿価格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上記 諸研究者들은 投下資本의 セン서스 定義를 利用한다. 즉 土地・建物・機械 기타 裝備등으로 構成되는 固定資本과 現金 在庫資產 및 受取計定으로 이루어 지는 運転資本이 그것이다. 이는 特許權이라든가 嘗葉權과 같은 無形資產이 セン서스 定義에 包含되는 것을 빼고서는 모두 国民所得統計上의 定義와 一致하는 것이다. 이러한 諸定義가 有形 및 無形諸資產의 實質資本「스톡」을 評価함에 있어서 適當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만일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資產「스톡」을 評価하자면 現金이나 受取計定등과 같은 財務上의 諸資產(Financial Assets)은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無形資產까지를 包含하는 資本「스톡」를 評価하자면 特許權이라든가 嘗葉權등의 無形資產의 帳簿価格의 利用은 減価償却을 控除한 資產의 帳簿価格보다도 正確性을 잃게 될 것이다. 決算上의 理由로 企業体는 無形資產에 価値를 부여하는 것에 極히 保守的인 것이다.

純「스톡」의 評価를 為한 第3의 方法은 資產粗支出에 對하여 減価償却法則에 의한 調整을 導入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Goldsmith 教授는 모든 形態의 資產에 定額法에 의한 減価償却을 仮定함으로서 粗価値로 부터 純「스톡」를 推計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推計는 國內収益서어 비즈協会의 帳簿価格에서

언어진 推計와는 別途의 系列을 나타낸다.豫想될 수 있는
바와 같이 Goldsmith教授에 의한 純「스톡」의 推計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推計와 密接한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서 前者は 항상 後者보다 큰 数值得를 나타낸다.

그 差異는 戰後 1945 ~ 57 年度에 있어서 7% 以上을 超過
하지는 않았다. 反面에 繼續記錄法에 의한 純「스톡」評価
值은 IRS 推計值보다도 6% ~ 7.5% 사이를 超過하고 있다.

3. 伝統的評価方法의 批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有形資產評価의 伝統的 諸方法은 제
나름의 價値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自身이 그 利用面에
있어서 所望스러운 評価方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純
「스톡」의 評価方法은 概念的인 諸欠陷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에 純資產評価의 한 补完策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비록 모든 種類의 資本裝備라는가 構築物의 實際 市場이 成立
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서 그들 資產의 再取得價格 (新品價格) 과
市價에 對한 知識이 完全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単純한 構成價格
(Component Prices) 的 結合만으로 有形資產의 正當한 評価가
이루어 질 것인지 의문이다. 그 例로 大部分의 資本財가 相
互 分離될 수 없는 性質을 갖게 됨에 따라 일단 設計段階가
끝나서 一定한 크기의 形態로 資本財의 個別單位가 建築되고 裝置된다.
따라서 이러한 資本財가 設置된다면 理論的으로 우리는 그 資本

財의 價值가 限界價值生產物과 그 價格이 一致하게 調整된다고
假定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内在價值 (Internal Value)
는 表面價值 (External Value)와 같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与件은 爲하기 마련이며 特히 耐久消費財는 그 耐用年數에 걸쳐
뚜렷한 變化를 나타 낼 것이다. 이는 企業이 그들의 資本裝備
를 内在價值와 表面價值가 恒常 一致하게 調整한다는 것은 아니
다. 理論上 企業은 적어도 그 再賣渡價格 보다도 많은 沈沒投
資 (Sunk Investment)를 保有할 것이다. 따라서 그 企業에
있어서의 資本財가 生產上에 가지는 寄与價值는 그 市場價格보다
도 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差差가 어느 정도의 크기에 이르면 同一率 (Parallel)
生産單位들이 장치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工場이 附設되는 경
우와 같이 不規則的 間隔을 두고 일어 날 것이다.
어느 企業에 있어서 資產構成要素의 市場價格의 総利가 그 企
業資產 全体가 生產上에 가지는 價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企劃 (Planning)이라든가 設計 (Design) 등의 要素가 企業組織
에 投下됨으로서 이는 重要한 資本資產을 이루게 된다. 变動하
는 여건 아래서 그리고 不確実性의 前提下에 거의 繼続的으로
重大한 意思決定이 要求되는 与件下에서 그 組織은 每日의 操作
이 効果的으로 組織되는 制度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運
營組織은 그 企業의 資產과 더불어 企劃이라든가 設計등의 要因
이 混合되어 하나의 有機體를 形成함으로써 따라서 資本資產의
價值가 結合的으로 決定되는 것이다. 現在 稼動中이거나 長期計

劃上에 있어서 어느企業이 가지는 바組織으로서의 價值는 그企業의 個別的 有形資產의 評価만을 試圖한다면 아로 부터는 完全히 除外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現實的으로 나타나는 未來의豫想収益의 面에서 볼 때 固定資產의 採用은 資本資產의 一部分에 不過함에도 研究 및 開發活動에 対한 아무런 考慮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諸技術產業에 있어서의 知識資產 - 電子產業, 製藥 宇宙開發產業등 - 은 有形資產의 推計에 評価를 局限시킬 경우 현저하게 低評価될 것이다. 「用役組織」 즉 經營이라든가 科學・工學등의 相談會社는 無視할 정도의 資本資產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결국 金融(Finance)과 交換(Exchange)을 媒介시킴으로서 貨幣制度 및 信用制度가 實質的인 生產資產에 寄与하는 바는 銀行建物(Bank Premises)과 같이 固定된 實質資產만을 고려하는 어폐한 評価方法에 의하드라도 現狀을 低評価하는 것이다.

以上의 理由로 우리가 概觀하였던 바 有形資產의 諸評価方法은 国民所得計定에 利用할 수 있는 評価에 対應할 정도의 正確한 国富計定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必要한 것은 企業에 의하여 이루어 진 国民所得計定上の 附加價值와 合致하는 個別企業의 意思決定(Decision Making)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附加資產의 評価인 것이다. 前者の 評価方法은 事業體의 積極한 總和에 의함으로서 部門別 地域別 國家的인 總實質生產資產의 推計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產業의 附加價值에 立脚한 總所得의 現在의 推計를 補完하게 될 것이다. 產業의 附加

価値는 결국 資本과 労動의 結合에서 発生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概念은 결코 比較할 만한 것은 아니다. 產業의 附加価値로 부터 労動에 對하여 주어지는 家計에의 支払을 差減한다면 그 產業의 「純現金」 플로우는 「資產計定上의 附加価値」와 頗似한 經常計定을 말하는 것이다.

資產計定上의 附加価値의 評価가 (不完全하지만) 競争的 条件下에서 決定되는 市場価格에 依存할 때 이는 그 國民經濟의 広範한 범위에 걸친 利用이 가능할 것이다. 現存 法人体에 대한 請求權 (Claims) 이 相互去來됨으로서 그 事業体에 對한 評価가 繼続的이며 全體적으로 이루어 지는 證券市場의 例가 있다. 이 경우 그 評価는 그 企業의 生產活動에 의하여 일어지리라고 보는 未来豫想収益의 現在価値에 對한 그 市場의 評価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所望하는 評価일 것이다. 이러한 評価는 끊임없이 变動할 것이며 때로는 急激히 变할 것이나 이는 우리가 評価하려는 資產의 實體的 特性에 縁由되므로豫想은 바뀐다. 따라서 그 企業의 請求權에 對한 市場評価는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当然히 그래야만 한다. 한편 現在価値를 評価하는 이와 같은 方法은 未來의豫想収益을 直接的으로 評価할 必要是 없으며 적당한 割引率을 導入할 必要도 없다.

이러한 評価方法은 資本이 人間勞動 内지 知識水準과는 別途의 生產手段이며 単獨的으로 去來 (Marketable) 될 수 있다고 하는 見解와는 相反됨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 안에 包含된 人間勞動이라든가 知識水準 内지 熟練度가 売買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로 부터 실제로 이들이企業組織에 기여하는 바 資本資產과 유
사한 역할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資本評価方
法이 部門別 企業別 乃지 產業別 労動에 대한 支払을 除外한
附加資產의 價值를 나타낸다고 하면 組織資本 (Organizational
Capital) 으로서 分類되는 無形의 諸資產이 가지는 바 生產上의
寄与는 任意로 除外될 수 없다는 것이다.

• 資產計定上의 附加資產値의 補完的 評価方法

가. 純附加資產値와 粗附加資產値의 定義
 資本資產의 粗「스톡」와 純「스톡」의 諸評価額은 貸借對
 照表上의 資產計定에 記帳할 必要가 있다. 帳簿價格을 利用할
 경우 이려한 記帳은 直接的으로 推計에 利用된다. 市場價格을
 利用할 경우 元帳의 資產邊에 나타나는 項目的 市場價格을 策
 定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論者が 提案한 資產評価는 市場價
 格을 元帳의 負債邊에 나타나는 모든 項目에 걸쳐 策定하여
 또 資產邊에 나타나는 純粹한 財務上의 諸資產에도 이를 導入
 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주어진 事業體에서 資產計定上의 粗
 附加値 내지 단순히 粗附加資產을 工事業體에 대한 모든 請
 求權 即 扱入資本金・社債・優先株・普通株・支払計定・未払税計定
 配當, 從業員利益配當등의 市場價格으로 定義하겠다. 어느 事業
 體의 総實質生產資本 즉 純附加資產의 評価는 粗附加資產으로
 부터 그 事業體가 所有하는 諸財務資產의 市場値를 控除함으

로서 엄어진다고 본다. 말을 바꾸자면 우리가 国民所得計定에 서의 附加価値의 概念이 企業間의 모든 中間去來分을除外하는 것처럼 政府를 포함하여 그企業이 다른企業에 所有하는 모든 請求權을除外한다. 이는 現金(銀行에 대한 請求權)未払稅計定・政府債權(政府에 대한 請求權)資產으로서의 他企業의 株式受取計定등을除外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結果數值는 그企業의 有形固定資產・在庫資產・當業權・特許權 그리고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組織資本(Organizational Capital)即經營組織・內지研究組織・企業内の連絡組織 그리고意思가決定되며問題가解决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開発되는体系를 포함하는現業事業体의 市場価値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資本」의概念에 대한定義의大部分(특히製造業セン서스의 경우)이 現金이라든가受取計定 등의項目을包含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이를除外하여야 할何等의理由도 없다.分明히 이들은個別事業体의 流動性資產(Liquidity)내지資力(Solvency)의一部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實質生產資產의一部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어느企業의附加資產에 이러한財務資產(Financial Assets)까지를 포함한다면이는二重計算이될 것이다. 주어진企業에 있어서現金資產에의하여나타나는實質資產은銀行에 대한評価에서아미포함되는 것이다.

受取計定上의實質資產目錄은 다른企業의支払計定에서評価되는 것이다.貨幣制度와信用制度가實質生產資產에 기여하는

与件을 造成하여 준다는 事實이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 反對로 附加資產에 의한 評価方法은 이러한 寄与를 勘案하는 것이다. 그것은 金融 및 財政部門에 对한 評価中에 포함된다. 理論的으로 이러한 部門은 國民經濟의 生產性에 기여하지 않는 한 収益을 놓지 않으며 우리의 評価는 이러한 未來収益의 資本化價值 (Capitalized Value) 이다. 이는 그 評価를 產業公團 (Industrial Corporation)에 利用할 때 포함되는 것으로서 後者は 財政部門과 같이 貨幣制度와 信用制度의 収益利潤을 共有하는 것이다.

나. 諸問題點

從來의 모든 資本評価方法은 現實的 應用上의 難点에 逢着하게 되는 것으로서 附加資產에 依한 評価方法 역시 그例外는 아니다. 이러한 이러한 諸難点은 粗「스톡크」나 純「스톡크」에 의한 評価보다 附加資產에 의한 推計評価가 더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서 不完全한 議論이나마 알아 보자.

- 1) 어느 事業体에 对한 모든 請求權이 去來되는 것은 아니다. 支払計定과 같은 請求權은 별로 難点을 招來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우리가 仮定하기에 個個의 財貨와 用役의 市場價格에 의하여 記帳되는 것으로서 買入한 財貨와 用役에 对한 債務를 나타낸다. 短期의 어음이라든가 借用証書등은 帳簿價格과 近似한 市場價格를 나타낼 것이다.

企業이 繼續的으로 發行한 社債 및 發行株式을 保有하며 組織的 証券市場이나 去來所에 있어서 時価가 適用될 수 없을 때는 我們의 評価方法에 의한 附加資產의 推計는 不可能하다.

이 때 그 評価는

- ① 그러한 企業들의 現金流入 对 附加資產의 比率이 証券이 売買되는 同種產業의 다른 企業体의 그것과 同一하다고 仮定함으로서 또는 그 產業의 平均價格収益比를 導入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으며
 - ② 적당한 回帰方程式에서 収益이라든가 現金流入, 配當分, 企業의 成長率등을 變數로 하는 函數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 2) 모든 事業体가 法人形態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1)의 경우와 같은 評価上의 問題가 뒤따른다. 有一한 解決方案은 現金流入이라든가 収益 내지 回帰方程式에 의한 方法에 의하여 그 事業体의 資產을 評価하는 것이다.
- 3) 海外活動을 하는 企業의 경우가 있다.
- 이를 適切하게 取扱할 方法을 알수가 없다. 例를 들자면 美國의 油類會社들이 莫大한 海外資產을 가질 경우 그 資產의 市場価値가 分明히 그들의 資產価値를 反映할 것은 틀림 없으나 그러한 市場価値는 美國의 純國富資產으로 解決될 수는 없다. 이러한 資產은 分明히 美國市民의 支配를 받는 純資產의 一部일 것이고 보면 상당히 興味로운 것이 된다. 調整이 可能할련지도 모르나 역시 粗雜한 것이 될 것임은

分明하다. 그렇다고 粗「스톡」로 부터 純「스톡」를 推計하기 為한 調整方式이라든가 資產의 形態에 따라 平均耐用年數를 推計하는 方法만큼은 粗雜하지 않을 것이다.

4) 一定한 時點에 있어서 어느 事業体의 「真正한」 資產이 과연 證券時勢에 의하여 正確하게 評価되는가 특히 그 證券時勢가 急上昇勢^{내지} 下降勢를 나타 별 때나 또는 投機的인 時勢가 支配할 때는 如何히 될 것인가 大部分의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는 評価上의 문제점을 가진다. 어느 事業体의 證券이 時勢의 커다란 影響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資本이라고 부르는 幻想的인 實體의 評価方法에 의하여 그 資本資產의 真面目이 如何히 把握되는가 하는 点에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證券時勢가 現在 그들의 交換價格에一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購入할 만한 價值가 있다는 点에 간단 하면서도 어려운 点이 있다. 經常計定上의 附加價值를 얻기 위하여서는 市場價格이 採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同一한 問題点이 역시 内在한다.

雪糖價格과 콩價格의 投機的인 变動은 여하히 取扱할 것인가? 보리·밀·목화의 價格이 人為的으로 維持될 때 그들의真正한 價值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 商品의 價值를 그들의去來價格으로 評価하여 資產에 對한 請求權에 對하여서도同一한 方法을 使用할 것이다. 大部分의 評価는 實로 独占的 人為的인 要因이 포함된다. 理論的으로 이러한 要因들은

非効率性을 招來하며 非合理的인 資源分을 가져 오는 것으로서 이는 그 社会의 所得에 對하여 純全히 逆效果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影響은 우리들의 純國民所得 내자 純資產의 評価에 反映되어야 한다. 市場價格은 最少限度 어떠한 代替物보다도 훌륭한 基準이라고 생각한다.

5) 若干의 事例

資本의 한 評価方法으로서 附加資產에 의한 評価方法의 意義를 알기 為하여 가장 좋은 方法은 이를 推計함으로서 餘他의 評価值와 比較 檢討하여 그것이 가지는 科学的인 意義를 理解하는 것이다. 이를 為하여 여기에서 나는 이러한 評価를 多樣한 活動에 從事하는 企業体標本에 適用함으로서 興味로우며 論争의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 資料는 모두 무디 產業年鑑 (Moody and und al Manval) 내지 무디 金融財政年鑑 (Moody Bank and Finance Manual) 을 利用하였다.

<表 1 >

제너럴 • 모터스, 1961

(単位 : 百万弗)

A. 粗附加資產의 推計

1. 総流動負債 (B)	1,425
2. 海外對從屬會社의 負債 (B)	144
3. 從業員利潤分配 制度를 為한 留保金 (B)	26
4. 株式選択売買制度를 為한 信用預受金 (B)	22
5. 雜負債 (B)	241

6 . 諸準備金 (B)	25
7 . 一般海外準備金 (B)	142
8 . 社債 (3.25 % 1979 年償還) (M)	197
9 . 優先株 (5 弗) (M)	197
10 . " (3.75 弗) (M)	83
11 . 普通株 (M)	14,001
粗附加資產	<u>16,503</u>

B. 다른 事業体에 대한 請求権의 推計

1 . 現金 (B)	405
2 . 政府証券 (B)	1,291
3 . 受取計定	987
4 . 未・統合子会社	433
5 . 其他証券投資 및 雜資產 (B)	18
6 . 鉄剛供給会社에 대한 貸付・先払 및 株式 (B)	32
7 . 金庫株式 (M)	98
8 . 前払金 및 移延費用 (B)	73

다른 事業体에 대한 総請求権 3,337

純附加資產	<u>13,166</u>
純財産・特許権・營業権 (B)	3,092
在庫資產 (B)	1,800
純實質資產	<u>4,892</u>

註 (B - 帳簿価格 , M - 市場価格)

<表2>

株式会社 신텍스, 1961

(単位: 千円)

A. 粗附加資産의 推計

1. 総流動負債 (B)	1,376
2. 6%付優先転換株 (優先株 - 株当 10個의 普通株株式은 去來되자 않음 (推測市價))	1,645
3. 普通株	51,139
粗附加資産	<u>54,160</u>

B. 다른 事業体에 对한 請求権의 推計

1. 現金 (B)	847
2. 流通性証券 (B)	36
3. 受取計定 (B)	2,263
4. 前払金 (B)	101
5. 移延費用 (B)	<u>775</u>

다른 事業体에 对한 総請求権 4,022

純附加資産 50,138

純財産・特許権・官業権 (B) 2,563

在庫資産 (B) 3,677

純実質資産 (B) 6,240

<表3>

인디아나·스탠더드·오일, 1961

(单位: 千弗)

A. 粗附加資産의 推計

1. 総流動負債 (B)	(日) 263,584
2. 어음・子会社株式 기우債權 (B)	206,523
3. 社債 (M)	16,021
4. 社債 (M)	203,250
5. 少数株 (B)	2,108
6. 普通株 (M)	1,824,995
粗附加資産	<u>2,516,481</u>

B. 다른 事業体에 对한 請求權의 推計

1. 現金 (B)	(日) 133,024
2. 流通性証券	(日) 111,318
3. 受取計定 받음어음 (B)	(日) 285,935
4. 前払金計定 (B)	(日) 9,497
5. 뉴저지·스탠더드·오일株式 (M)	80,724
다른 事業体에 对한 総請求權	<u>619,598</u>
純附加資金	1,896,883
純財産 (B)	2,136,922
在庫資産 (B)	225,635
純実質資産	2,362,557
原油貯蔵品 (推測市価)	2,618,000
純実質資産 (貯蔵品포함)	<u>4,980,557</u>

<表4> 뉴욕 F N C B, 맷선開発株式会社
및 美国研究開発会社, 1961

(単位 : 千弗)

会 社	年 度	粗附加資産	純附加資産	純実質資産 (純財産 · 特 許権 · 営業権 在庫資産)
뉴-욕 F N C B	1961	9,888,750	473,500	115,793
麦线開発株式会社	"	128,395	- 38,302	0
美国研究開発会社	"	39,565	2,477	0

<表1>은 「제네랄·모터스」의 1961年度 附加資産을 推計하여 본 것이다. 市場価格에 依하는가 아니면 帳簿価格에 依하는가 하는 評価上의 基準은 項目마다 括弧안에 表示되어 있다. 大部分의 項目은 帳簿価格에 基準을 두고 있다. 좀 더 高次的인 推計를 為하여 이러한 諸項目은 資料의 利用이 可能하도록 調整될 수 있었다. 例를 들자면 受取計定은 貸損充当金 比率을 導入함으로써 不良債權의 調整이 可能하였으며 政府証券은 企業資産의 使用年数의 구성이 알려지고 있는 市場에서 評価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其他 投資項目등에서 도 適用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은 「제네랄·모터스」의 경우 이러한 調整이 稀薄하며 또 関係項目이 純附加資産中에 차지하는 比率이 적으로 너무 사소한 것만을 따지는 것이 될 듯 싶다. 그러나 모든 企業体가 이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理解를 돋기 위하여 株式価格과 社債価格은 年中을 통한 平均価로서 나타냈다. 普通으로는 주어진 날자의 時価를 应用하였다. 「제네랄·모터스」의 경우 純資產価額은 約 125 億弗에相當한다. 有形 貨物 無形資產의 直接的인 粗評価 및 純評価를 為한 資料를 얻을 수 없음에 따라 比較를 為하여 純實質(非財務的)資產 (純財產 特許權 営業權 및 在庫資產)의 帳簿価格 (約 49 億弗)을 利用하였다. 成長株의 企業体에 있어서 純生產資產은 物理的 構築物 裝備 乃至 在庫資產의 減価後의 価値에 特許權이나 営業權과 같은 無形資產의 帳簿価格를 보낸 것의 倍量 上廻하고 있다.

1961年 株式会社 (신텍스) (表2)는 원래, 医藥品研究機関이었다. 따라서 이 회사를 그 事業体의 市場価値가 研究開発活動과 関聯되는 "組織資本"의 一種으로서 거의 独占的으로 決定되는 極端의 一例이다. 이 회사의 경우 純附加資產은 帳簿上の 純資產価値의 8倍를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 고무, 石炭, 等의 自然資源資產을 所有하는 事業体에 있어서 우리의 資產評価方法은 이러한 減耗資本資源에 屬하는 資產까지 를 包含한다.

<表5>은 「인디아나·스탠다드·오일·컴퍼니」의 純附加資產이 19億弗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純實質資產은 그 事業体의 原油 및 天然ガス等 貯藏品을 包含하지 않고 約 24億弗의 帳簿価格를 나타낸다.

萬桶原油埋蔵量의 推定価額을 배당당 1弗(이는 市価의 $\frac{1}{3}$ 程度에도 未達이지만)이라고 본다면, 實質資產은 26億弗의 帳簿価格를 가지게 될 것이다. 實質資產의 帳簿価格과 事業体에 있어서 生産的 資產의 市場価格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隔差가 생기는 理由는 다음의 두 가지로서 볼 수 있겠다.

即 ① 市場은 現在 埋蔵中の 그 價值를 배당당 1弗이라는 높은 價格을 갖게끔 単純하지 않으며 25年乃至 30年後에는 거의 無用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期間內에 石油는 이미 「에너지」의 主供給源의 位置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市場은 原油埋蔵量의 價置를 銳利하게 割引하는 것이다.

② 1961年度 石油產業은 過剩供給에 의하여 株式의 下落勢를 보였으며 油類価格의 累落을 가져왔다. 따라서 產業活動의 委縮을 招來하였으며 이는 市場이 未來收益의 現在価値의 低落을 나타낸 때豫想되는 것이다.

<表4>는 뉴욕 NYN L B의 株式会社組織의 ミ션開発公社(타이드·위트石油의 株式의 $\frac{1}{2}$ 以上을 所有支配하고 있다)와 投資会社인 美国研究開發会社의 純附加資產을 나타낸다. 一般 商業銀行에서 볼 수 있듯이 純附加資產은 粗附加資產의 적은 部分(5%)에 不過하나 本質적으로는 純實質資產(銀行의 財產)을 上廻한다. 持株会社는 그러한 組織에 對한 請求權의 그 会社에 가지는 資產의 市場価格의 거의 30%나 낮게 割引됨에 따라 여기에 包含된다. ミ션開発会社의 경우 純附加資產은 3,800百萬弗의 資本蚕食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우리의

評価方法을 따르자면 当該会社는 만일 그企業이 持株会社에
의하여支配된다고 할 때 그純資產에의 기여도는 輕微할 것
이다. 그理由는 무엇인가 한편 우리의評価方法에 이러한
割引을 고려하여야만 하는가 여려가지 見解가 있겠으나 本人은
이러한 結果를 그들의 領面価額으로 取하고 싶다. 市場에서
볼 때 負의 資本價值는 企業体의 基本的 内지 有一한 目的이
經營上의 統制에 集中되므로 이러한 統制를 危機로부터 効果的
으로 保護하기 為하여 存在하는 企業組織에 둘려야만 한다. 結
果는 따라서 嫁動中の 持株会社組織에 包含되는 「組織資本」의
評価額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萬一 이러한 評価가 正當
한 것이라면 純附加資產은 이러한 割引結果를 反映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投資会社에 이러한 評価方法을 導入할 때에도 同一한 現象을
볼 수 있다. 앞의 例에서 본 「美國研究開発会社」는 正의
純附加資產을 나타내고 있으나 大部分의 投資会社는 負의 価値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美國研究開発会社는 資本을 必要로
하는 小規模의 將來性있는 会社를 発見하는 것에 名声을 갖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技術은 正의 資本價值
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反面에 이러한 投資会社는 零
내지 負의 純附加資產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第3章 國富調査의 方向

第3章 国富調査의 方向

第1節 日本의 国富調査

(一) 戰前(1945年前)의 調査

日本의 国富調査는 1905年 日本銀行에 依하여 最初로 實施되었 다. 日本銀行의 第1回調査가 있기 以前에도 몇차례의 推計가 試 図되긴 하였다. 즉 1941年度부터 日本国内 혹은 外國의 經濟學 者들의 손에 依하여 數回의 調査가 있었다. 그러나 1905年以前 에 實施된 調査는 単純히 산발적인 資料를 概括的으로 蒄集推計한 데 不過한 것이었다. 따라서 公式的이고 組織的인 調査로서는 1905年的 日本銀行調査가 日本国 国富調査의 最初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다.

戰前의 日本国富調査는 아래와 같이 8回 實施되었다. 그러나 여덟번의 調査라 하여도 1930年과 1935년의 調査를 除外하고는 모두 既存資料에만 依拠한 推計로서 調査의 方法이 极히 未熟하였다. 1930, 1935年度의 調査에서는 ① 直接調查 및 調査表利用 이 試圖됨으로써 既存資料의 補完이 이루어 졌고 ② 国民所得과의 関係를 重視하여 国民所得推計를 併行実施한 点等을 보아서는 戰後 調査의 한方向을 提示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그 当時의 国民所得推計方法도 生産接近方式에 依한 极히 原始的인 것으로서 国富調査上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은 事実이나 이때부터 国富와 国民所得과의 関係를 明確히 해보려는 努力이 염보였다는 点이 重要하다.

戰前의 日本国富調査

回数	実施年度(西紀)	統計作成処	国富推計評価額
1	1905年	日本銀行	2,259千円
2	1910 "	"	2,943 "
3	1913 "	国勢院	3,204 "
4	1917 "	日本銀行	4,570 "
5	1919 "	国勢院	8,608 "
6	1924 "	内閣統計局	10,234 "
7	1930 "	"	11,019 "
8	1935 "	"	12,434 "

資料 ; 1964年12月 日本經濟企劃庁刊

「1960年 国富調査報告」

현如今의 日本国富調査는 日本政府當局의 統計機關에 依하여 体系化되어 있으므로 戰前의 国富調査中 政府에서 實施하였던 것을 골라 考察하여 보기로 하며 이것은 戰後의 日本国富調査를 理解함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1913年, 1919年 国勢院実施의 国富調査

日本政府가 最初로 實施한 国富調査는 1913年的 調査이긴 하나 이 調査는 그후에 實施된 1919年的 調査와 함께 1921

年에 추계되어진 것이다. 따라서兩個年の 調査体系等에 대하여는 差異点이 없다.當時에 国富를 調査하게된 動機는 國際關係上の 必要 즉 國際聯盟의 8大工業國 決定을 위한 參考資料로서 國際聯盟이 日本国에 依頼한데 緣由된 것이었다. 따라서 調査의 主眼은 国富의 增減, 国力의 強弱判断에 두고 主로 美国의 国富調査를 参考하여 物的方法에 依한 推計를 하였다. 調査項目을 보면

- | | |
|-------------|-----------------|
| 1. 土地 | 13. 橋梁 |
| 2. 鉱山 | 14. 農產品 |
| 3. 海湖川 및 港灣 | 15. 林產品 |
| 4. 樹木 | 16. 工產品 |
| 5. 建物 | 17. 鉱產品 |
| 6. 家具 및 家財 | 18. 水產品 |
| 7. 製造工業機械 | 19. 輸入品 |
| 8. 家畜 및 家禽 | 20. 金, 銀, 貨幣用地金 |
| 9. 鐵道 및 軌道 | 21. 各省의 財產 |
| 10. 諸車 | 22. 皇室의 財產 |
| 11. 船舶 | 23. 其他 |
| 12. 水道 | 24. 对外債權債務等 |

24個項目이었다.

国富로서 推計된 이들 資產中에는 各種의 性質이 混在되어 있는 데 그것은 첫째로 自然物로서의 土地, 海湖川, 原始林埋藏鉱物等의 天然資源 즉 人間의 經濟活動의 產物이 아닌 資產과 둘째로 人間의 經濟活動에 依하여 生産된 資產으로서 建物, 工業用機械, 器具,

生產品，家具財等의 再生產可能한 有形資產，세 번째로 經濟活動의 蓄積이긴 하나 再生產이나 評価가 困難한 美術品，圖書等의 資產，네 째로는 對外債權債務等이다.

한편 調査方法으로는 資產의 所有主体를 官公有와 私有로 2大別하여 資產項目別로 既存統計資料에 依하여 推計하였다. 推計方法을 概略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土地

土地에 있어서는 논，밭 그리고 其他 種目別의 土地面積에다 府県別 中等地 売買價格을 單位로 하여 推計하였고 売買價格이 不明한 것에 對하여서는 논，밭等의 單價에 對한 倍率을 求하여 推計하였다.

② 建物

建物에 있어서는 一般住宅，團體建物，公有建物의 3種으로 나누어 推計하였다. 一般住宅을 例로 보면 家屋売買登記料로부터 戸當價格을 算出하여 그 2가지를 單位로 하여 거기에서 現在戶數를 곱하여 推計하였다.

③ 製造工業機械

製造工業機械에 있어서는 1913年末 工業會社払入資本金의 總額 814,304 千円의 70%를 固定資產으로 仮定하여 그 7割을 諸機械의 價額으로 仮定하고 推計하였다.

$$\text{즉 製造工業機械} = \left[\frac{70}{100} (814,304) \times \frac{70}{100} \right] \text{千円이다.}$$

④ 家具 및 家財

家具 및 家財에 있어서는 一般住宅価額의 50%를 家具

및 家財의 價額으로 보아 推計하였다.

以上의 推計方法에서 그 特徵을 찾으면

- A) 既存統計에 全的으로 依存된 推計이므로 調査의 精度는
既存統計資料에 依하여 制約되었고
- B) 評価에 있어서는 個別의 評価基準과 独自의 方法의 二重方法을 採択한 点
- C) 既存統計가 없을 境遇는 間接的推計方法이 採用된 点等이
라 생각된다.

2. 1924年의 国富調査

1924年 国富調査는 1922年末에 없어진 国勢院에 代置된
内閣統計局에 依하여 実施되었다. 調査의 目的是 역시 国富의 年
次比較와 国富量을 明確히 把握하자는 靜態的目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4年の 調査는 1913年 1919年과 같이 外部的動機
에 依한 實施가 아니고 日本国 自体의 必要에서 始作된 点이 相
異하다.

이 調査의 資產種類, 推計方法에 있어서는 皇室財產을 除外한 以
外에는 前回의 調査와 큰 變化는 없었다. 単只 利用된 諸統計資
料自身が 前回보다 훨씬 整備된 것이 있으므로 国富調査 그 自体
의 精度가 比較的 높아 졌다고 짐작된다.

3. 1930年 国富調査

1930年の 調査는 従來의 調査에 比하여 크게 發展되었

그 이유는 同調査가 우선 既存統計를 利用하면서 照会調査, 實地調査를 併用하였고 다음으론 国富와 国民所得과의 関係를 究明하고자 試圖한 点이다. 즉 国富調査와 併行하여 国民所得推計를 實施한 것이다. 비록 1930年調査에서는 調査目的이 明示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国富의 意義를 国民經濟体系 테두리안에서 求하자는 意圖가 읊트기 始作한 것이다.

調査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調査範囲

1930年末 本土(日本国)의 物的財貨의 総額 및 對外債權債務差額

나. 調査項目

- | | | |
|---------------|-------------------------------------|-----------------|
| 1. 土地 | 2. 鉱山 | 3. 港湾 및 運河 |
| 4. 橋梁 | 5. 樹木 | 6. 家畜 및 家禽 |
| 7. 建物 | 8. 工業用機械器具 | 9. 鐵道 및 軌道 |
| 10. 諸車 및 航空機 | 11. 船舶 | 12. 電氣 및 瓦斯供給設備 |
| 13. 電信 및 電話設備 | | 14. 水道設備 |
| 15. 所藏財貨 | { 1. 家具家財
2. 生産品
3. 鑄貨 및 金銀地金 | |
| | 16. 其他 | 17. 對外債權債務差額 |

等의 17個項目으로 分類하였다.

다. 調査方法

17個項目에 对한 財貨의 価額은 既存資料, 照会調査, 實地調査等에 依하여 官有, 公有, 私有 그리고 府県別로 表示하여 調査

하였다. 但 国富各項目中 府県別価額이 不明한 것은 그 總額을一定標準에 依拠 府県에 按分하였다. 그리고 価額의 算定標準은原則的으로 減耗가勘案된 再生産価格으로 하여 再生産価額에 依함이 不適當한 財貨에 对하여서는 時価로 하였다.

以上에서 본바 그 特徵으로는

① 国富의 資產分類가 若干 變更되어 있다. 그것은 海湖川이 빠진 反面 運河가 追加되었고 諾車項目에 航空機가 들었으며電氣 및 瓦斯供給設備, 電信 및 電話設備가 独立項目으로 각각 追加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徒來調查에서는 独立資產項目이었던農產品, 林產品, 工產品, 鉱產品, 水產品等이 所藏財貨속에 한묶음으로되어 있었는데 그 中에서 流動資產의인 것들은 生產品으로 一括되었고 그外는 家具 및 家財, 金銀地金 및 鑄貨等으로 分類되었다.

② 評価方法도 徒來보다 改善되었다. 그것은 価額의 算定標準을 原則的으로 減耗가勘案된 再生産価格으로 못박아 두어 徒來의 別個基準方法(統一의 評価基準이 아닌)과는 方法上의 差異가 뚜렷하다. 물론 1930年調查方法인 統一의 評価基準으로서의 再生産価額은 實際上 現今의 評価方法에 比하여 未備点이 많았음을 再言을要치 않는다.

4. 1935年 国富調査

1935年的 調査와 아무런 變化가 없는 것으로 結論된다. 구태어 差異点을 찾는다면 調査時點에 實地調査가 實施되었다는 点뿐이다. 즉 1930年的 調査는 1932年に 實際로 調査하여

1930年末의 時価로 换算되어진 것에 对하여 1935年的 調査는
1935年12月31일이란 時点에 맞추어 實地調査를 行하였던 것이다.

(二) 戰後의 調査

1. 1955年 国富調査

第2次 世界大戦이 끝난 1945年度以後 日本国은 3차례의
国富調査를 하였다.

1955年 1960年 그리고 最近의 1965年度의 調査가 그것인데
戰前調査와는 20余年이란 긴 間隔이 있는 것이다. 20余年
의 中間에는 単只 国富調査에 準하는 것으로 1947年度에 実施된
"太平洋戦争의 戰爭被害調査"만이 있었다. 이같이 긴期間을 国富
調査가 実施되지 않았던 理由는 経済外的인 事件과 아울러 国民經濟
의 정돈時期를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1955年度 日本国富
調査는 現今까지의 總11回調査中 規模面에서 가장 클 뿐더러 国
富体系를 確然히 整備시킨 点에 있어 日本의 国富調査中 重要視되
는 調査라 하겠다.

가. 調査의 目的

調査의 目的是 他年度의 国富調査와 같이 1955年末의 国
富를 찾는데 두고는 있지만 国富와 国民所得과의 關聯을 보다 깊
이考慮하여 国富를 調査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国民資本의 蓄積
度 및 効率等 経済分析에 利用될 資料에 着眼한 調査를 하였다.

4. 調査対象 및範囲

調査対象은 国民經濟內의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產과 對外資產負債残高라 規定하였다. 즉 耐用年数 1年以上의 有形資產에 限定하여 이를 有形固定資產과 流動資產으로 나누었다. 家計資產도 耐用年数 1年以上의 83個品目으로 限定하였으며 이 83個品目以外의 資產에 對하여는 그것이 耐用年数가 1年以上일지라도 對象에서는 除外하였다. 다음 無形資產에 있어서는 国内分에 對하여 相殺概念에서 全部 對象에서 除外하며 單只 對外無形資產만을 包含 시켰다.

從來의 調査와 比較하면 土地, 天然資源等과 美術品等 評価困難資產을 除外하고 있다. 뒤에서 言及될 것이지만 資產의 分類는 家計以外의 企業, 政府, 地方公共團體等이 所有하는 資產에 對한 分類로서 家計資產은 이와는 別途가 되어 있다. 家計資產은 아래와 같이 83個品目을 選定하여 調査하였다.

① 住宅

② 家具類 (43品目) ~ 主要品目으로는 장농類, 책상, 소파, 스토우브, 電氣洗濯機, 채봉틀, 라디오, 自転車, 벽시계等

③ 依類 및 裝身品 (32品目) ~ 主要品目으로는 오-바코-트, 毛布, 손목시계, 구두(靴)等

④ 特殊品 (7品目) ~ 應接셋트, 주단, 침대, 冷藏庫, 蓄音機, 피아노, 읊센

5. 調査体系

居住者主義에 依한 所有主体別의 實態調査를 中心으로 하였다. 調査結果는 所有主體別, 產業別로 發表하였다. 既存統

計資料의 利用은 道路, 橋梁, 河川에만 머물었는데 바로 이 点이
從來調查의 既存資料에 对한 制約性을 改善한 点이다.

라. 評 價

資產의 評價는 再調達價格을 評價基準으로하여 稅法上의 耐
用年数 그리고 国富調查를 위하여 作成된 物價倍率이 利用된 統一的
客觀方法에 依하였다. 이 点도 從來調查가 資產을 個別的으로 評
價한 것과 相異한 点이다. 評價方法을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다.
取得価格 × 物價倍率 = 再取得価格 (Gross Base)

再取得価格 × 残価率 = 再調達価格 (Net ")

前章에서 考察되었지만 1955年の 資產評價로는 ①所有者別接近
②特殊資產에 对한 個別接近 (物價倍率 耐用年数等 別途作成)
③倍率算出에서 原価倍率作성이 많았다. ④殘価率作成은 原則적으로
定率法에 依하였다. 等이 特徵으로 들 수 있다. 그러면 1955
年 調查의 内容을 좀더 具体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所有者別調査

國富를 所有者別로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 (1) 國家가 所有하는 資產
- (2) 公社 公庫等 政府關係機關所有의 資產
- (3) 法人 (非營利法人 特殊法人을 包含) 所有의 資產
- (4) 地方公共團體所有의 財產
- (5) 個人企業 (農林漁家包含) 所有의 資產
- (6) 其他 団體所有의 資產
- (7) 一般家計財產 그리고

(8) 对外資產

으로 나누었다.

③ 資產의 分類

(一) 有形固定資產

1. 建物

- A. 住宅
- B. 非住宅
- C. 建物附屬設備

2. 構築物

- A. 交通施設
- B. 治水利水施設
- C. 其他

3. 機械 및 装置

- A. 動力設備
- B. 汽罐設備
- C. 作業設備
- D. 運搬設備
- E. 其他

4. 船舶

- A. 鋼船
- B. 木船
- C. 其他

5. 車輛 및 運搬具

- A. 鐵道車輛
- B. 航空機
- C. 自動車
- D. 其他
- 6. 器具 및 備品
- 7. 建設仮計定
- 8. 家畜 家禽
- 9. 其他

(二) 在庫資產

- 1. 原 料
- 2. 在工品 및 半製品
- 3. 完成品 및 商品
- 4. 貯藏品

(三) 對外資產負債殘高의 差額 그리고 家計는 앞서 본 바와 같다.

(四) 產業分類

- (一) 農 業
- (二) 林業 및 狩獵業
- (三) 漁業 및 水產養殖業
- (四) 鉱 業

- A. 金屬鉱業
- B. 石炭鉱業
- C. 其他鉱業

(五) 建設業

- A. 總合工事業

B. 職別工事業

(六) 製造業

- A. 武器製造業
- B. 食料品製造業
- C. 煙草製造業
- D. 紡織業 製造業
- E. 衣服 및 裝身品製造業
- F. 木材 및 木製品製造業 (家具除外)
- G. 家具 및 裝備品製造業
- H. 紙 및 類似品製造業
- I. 印刷 出版 및 類似産業
- J. 化學工業
- K. 石油 및 石炭製品製造業
- L. 卫生製品製造業
- M. 皮革 및 皮革製品製造業
- N. 유리 및 土石製品製造業
- O. 第1次金屬製造業
- P. 金屬製品製造業 (機械 및 輸送用機械器具를 除外)
- Q. 機械製造業 (電氣 機械器具除外)
- R. 電氣機械器具製造業
- S. 輪胎 機械器具製造業
- T. 理化学機械 写真機 光学機械器具 및 時計
製造業
- U. 其他製造業

(七) 都壳 및 小壳業

A. 都壳業

B. 小壳業

(八) 金融 및 保険業

A. 銀行 및 信託業

B. 中小商工金融業 및 庶民金融業

C. 証券業 및 商品取引業

D. 保險業

E. 其他金融 및 保険業

(九) 不動產業

(十) 運輸通信 및 其他 公益事業

A. 鉄道業 (地方鐵道 및 軌道業을 除外)

B. 地方鐵道業 및 軌道業

C. 道路旅客運送業 및 道路貨物運送業

D. 水運業

E. 倉庫業

F. 其他運輸業

G. 通信業

H. 光熱 및 動力供給業

I. 水道業 및 衛生業

(十一) 서비스業

等 11個大分類를 하였다.

① 調査体係 (表参照)

⑩ 調査結果発表

中央集中 調査로서 아래表를 作成하였다.

1. 部門別 資産項目別 国富評価額
2. 産業別 資産項目別 企業資産評価額
3. 資本金階級別 資産項目別 法人資産評価額
4. 資産額階級別 資産項目別 法人 및 個人企業資産評価額
5. 各種項目別 組合에 따른 家計資産評価額
6. 主要資産의 経過年数分布

2. 1960年国富調査

1955年の国富調査後 日本国의 経済는 政府의 経済開発計劃을 上廻할 程度로 急速한 成長을 繼続하였다. 이같은 情勢에서 첫째 그와같은 経済成長을 可能케한 要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究明하고 둘째 経済政策 経済計劃 특히 長期經濟計劃을 檢討 樹立키 위하여 最近의 国富現在額 構成内容 및 變動을 把握하는 일이 크게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곧 1960年 즉 戰後 第2回의 調査를 實施하게 된 動機였다.

1960年調査는 前回의 調査(1955年度)와 比較하여

- ① 調査規模가 半程度였고
- ② 国富의 概念 評価等은 1955年調査時의 方法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었다. 그런데 1960年調査의 重点은 調査結果의 連續性에 두었다. 1960年調査의 目的을 參考로 보면 아래와 같다.

1960年国富調査는 国民經濟活動의 基礎인 1960年末現在의 国富現在額을 調査 推計하여 그 水準 및 構造를 明確히 함과 同時

에 1955年国富調査時点以後의 投資実績을 把握하고 国民所得計定上
의 Flow인 投資와 国富調査에 의한 Stock間의 関係를 밝힘으로
써 進歩中인 国民經濟計算整備에 寄与하고 또 經濟計劃樹立의 基礎
資料를 提供함에 그 目的이 있었다.

따라서 1955年調査에서 対象資產이 되었던 家具耐久財等은
1960年調査에서는 經濟計劃樹立資料로서의 無用性을 認定하여 全部
除外하였다. 1960年調査와 1955年調査의 相違点을 要約하면
아래表와 같다.

1955年 国富調査実施要領

資料：1957年3月（日本国経済企劃庁刊『1955年国富調査の方法』）

部門	主体	調査資産	本 調 査		補 正 調 査			備 考
			調査法	記入方法	目 的	調査法	記入方法	
公共 團体	国	公共物 一般資産 物品会計所定資産	間接推計 センサス調査 センサス調査	既存資料 自計申告 自計申告	(1) 評価方法의補正 (2) 項目分類의補正 (3) 調査時点의修正	資産項目抽出	転写	
	地方	公共物 一般資産 物品会計所定資産	間接推計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既存資料 自計申告 自計申告	部落所有財産	標本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9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第1514~1516号
企 業	国	固定資産 在庫資産	センサス調査 センサス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1) 評価方法의補正 (2) 項目分類의補正 (3) 調査時点의修正	資産項目抽出	転写	
	地方	固定資産 在庫資産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本調査 指定統計第89号
業	法人	固定資産 在庫資産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1) 調査에서 누락된 法人の 再調査 (2) 地域抽出에 依한 産業의 偏差의修正	有為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1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 1509号
	個人	固定資産 在庫資産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1) 地域抽出에 依한 産業의 偏差의修正 (2) 在庫資産의 調査時点修正	標本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5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第1501~1513号
非営利		固定資産 在庫資産	法人 및 個人 企業이 同一	自計申告				法人 및 個人企業에 準함
家計		耐久財 半耐久財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83指定品目과 全品目과의 相関発見	標本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6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第1523~1524号

1955年国富調査와 1960年国富調査의 相違点

(資料: 1964年12月 日本經濟企劃庁刊『1960年国富調査報告』)

	1955年調査			1960年調査		
	調査의 方法	資産의範囲	推計의 方法	調査의範囲	資産의 方法	推計의 方法
国	照会調査	1. 固有財産法所定의 財產 2. 物品會計規則所定의 財產(武器等을 包含)	1. 国有財産台帳価額을 国富評価額에 調整 2. 取得時期別 計算	同	1. 同 2. 同 (物品管理法 (所定의 財產 (武器等을 除外))	1. 原則的으로 国有財産台帳価格에 依함 2. 同
公共物	既存資料에 依함	道路 橋梁 河川(市町村道 港湾을 除外)	物的推計에 依하여 再調達 価額을 求하고 이것을 代替 資產取扱을 하였음	関係各省에 照会 하여 行政投資額의 資料를 얻어 推計	同 (市町村道 港湾 을 包含)	1901年以後行政投資額 + 同期間災害 復旧費 - 同期間減失額
政府關係機関	照会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1. 公社는 公社의 評価額을 調整 其他는 「法人」과同一 2. 在庫資產은 實地在庫調査	同	同	1. (1955年国富 - 1955年資產의 廃棄分) + (1956年~1960年取得 得分) - (1956~1960年減失分) 2. 同
地方公共団体 및 公共組合	統計調査 (品目別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1. 取得時期別로 計算 2. 在庫資產은 實地在庫 調査	同 1956~1960年取得 減失分資產 項目別調査	同	1. (1955年国富 - 1955年 資產의 廃棄分) + (1956年 - 1960年取得 得分) - (1956年 - 1960年減失分)
法人	統計調査 (品目別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1. 取得時期別로 計算 2. 在庫資產은 實地在庫 調査	同 1956~1960年取得 減失分資產 項目別調査	同	1. (1955年国富 - 1955年資產의廃 棄分) + (1956年~1960年取得分) -(1956年 - 1960年減失分) 2. 同
個人	統計調査 (品目別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一般世帯의 貸家を 包含)	1. 取得時期別로 計算 2. 在庫資產은 實地在庫 調査	同	同 (一般世帯의 貸 家를 包含치 않음)	継続事業体분은 1960年資產과의 相關關係로부터一次式에 依한 推計, 新 設事業体분은 新設事業体의 資產率 (継続分에 对한)에 依한 推計
家計	統計調査 (住宅 및 主要 家財 83品目)	1. 住 宅 2. 家 財	取得時期別로 計算	既存資料에 依함	住 宅	1955年住宅資產 + (1956年~1960 年新設) - (1956年~1960年減失)
对外純資產	既存資料에 依함	貨幣用金 保有外貨 貿易債 權 債務 外對借款 對日投資等	國際收支表에 依한 資產 負債差額	同	同	同

3. 1965年 国富調査

戦後 3回째가 되며 最近年의 調査가 되는 1965年の
調査는 国民經濟計算体系의 整備에 基本方針을 두었다. 1960年調
査와의 相違点으로서 가장 큰 것은 ① 企業部門에서 調査範囲를
国内分에만 限定한 것. ② 非常利事業体를 除外한 것. ③ 그리고 調査
時点 및 期間이다.

가. 調査対象과 方法

調査対象資産의 範囲는 다음과 같은 經濟主体가 所有하
는 国内에 있는 再生産可能한 有形固定資産에 限定하였다.

(1) 国営企業

A. 特別会計 (14 特別会計)

B. 政府関係機関 (13 機関)

C. 其他政府企業 (14 企業)

(2) 地方公営企業 (200 業体 ~ 標本抽出에 依함)

(3) 法人企業 (2,060 企業 ~ ")

(4) 個人企業 (1,770 企業 ~ ")

以上의 調査対象에 대하여 各企業의 自計申告方法에 따라 調査
하였다.

나. 調査資産

調査資産은 耐用年数 1年以上 取得価額 1万円以上 (但
1964年4月 以後의 法人企業資産은 3万円以上) 의 資産으로서

- (1) 建物 (企業이 所有하는 住宅을 包含)
- (2) 構築物
- (3) 機械 및 裝置
- (4) 船舶
- (5) 車輛 및 運搬具
- (6) 工具, 器具 및 備品
- (7) 土地 造成, 改良 (土地自体에 對한 価額은 除外함)
- (8) 大動植物
- (9) 建設仮計定等으로 分類하였다.

다. 調査時點 및 期間

調査는 1965年 12月 31日 現在에 行하지 않고 調査実施期間은 다음과 같다.

- (1) 國營企業 ; 1966年 10月 ~ 1967年 1月
- (2) 地方公營企業 ; 1966年 7月 15日 ~ 8月 15日
- (3) 法人企業 ; 資本金 1千万円以上의 法人 ~ 1966年 7月 15日
~ 8月 15日
; 資本金 1千万円未満의 法人 ~ 1966年 8月 15日
~ 9月 15日
- (4) 個人企業 ; 1966年 8月 15日 ~ 9月 15日

라. 其他

그 밖에는 1960年の 調査와 거의 같은 方法 (評価), 分類 (産業, 項目) 를 하였는데 한가지 2種以上의 事業을 兼営하는 경우에는 当該企業의 主要事業이 所屬된 産業에 一括分類 (兼業部門의 分離를 않고) 하였다. 1960年과 1965年の 調査上 相違点은 다음 表와 같다.

1960年 国富調査와 1965年 国富調査의 相違点

(資料 ; 1967年 8月 日本国富調査報告刊
"1965年 日本国富調査報告")

企 業	調査의方法	1960 年 調 査		調査의方法	1965 年 調 査		推計의方法
		資産의範囲	推計의方法		資産의範囲	推計의方法	
国営企業 (政府關係 機関包含)	照会調査	1. 国有財産所 定의 것 2. 物品管理法 所定의 것	合帳価額 1960年末) 의 純増分 1955年末) 을 평均経過年数에 따라 調整하고 1955年国富 結果에 加算	同	同	同	同 政府關係機關 은取得時期別 로計算
地方公営企 業 (指定統 計第 89 号)	統計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1955年国富調査結果에 工後의 純增(減) 分을 加(減) 算	同	同	同	同 取得時期別로 計算
法人企業 (指定統計 第 81 号)	統計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同	同	同	同	同 上
個人企業 (指定統計 第 85 号)	統計調査	1. 有形固定資產 2. 在庫資產	取得時期別로計算	同	同	同	同

※ 1965年 調査에서는 純資産額과 함께 総資産額에 对하여서도 推計하였다.

第2節 우리나라의 国富調査

1. 調査沿革

政府는 一次 및 二次經濟開発 五個年計劃을樹立하여 修行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資本存在量 혹은 資本스톡(Capital Stock)에 관한 統計資料가 不充分한데 대하여 많은 隘路가 있었으므로 三次 五個年計劃樹立을 為하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資本存在量을 把握하는 国富調査의 必要性을 切感하였다.

그리하여 1966年初에 있었던 統計委員會委員懇談會에서 累次 이 調査를 實施하기 為한 方案을 檢討하였는데 여기에서 우선 本調查의 龍大性에 비추어 몇개의 調査機關이 共同으로 調査하기로 하고 각 調査機關에서 要員을 差出하여 實務者그룹을 構成하고 그 具体的인 調査企劃을 세우도록 하였다.

各 機關要員으로 構成된 實務者그룹은 67年 4月頃부터 日本을 비롯하여 先進諸國의 調査內容을 分析하고 本 調査를 政府部門, 法人部門, 個人事業體部門, 家計部門 및 對外資產部門으로 区分하여 各 調査機關의 業務分野와 関心에 따라 政府 및 對外資產은 韓國銀行 法人部門은 韓國產業銀行, 個人事業體部門은 中小企業銀行 그리고 家計部門은 経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調査하기로 方案을 세우고 67年 11月부터 調査統計局에 調査本部를 두어 各 分野別로 研究를 本格的으로 始作하였다.

그후 實務者그룹은 그간의 研究結果를 土台로 調査企劃을 세우고 이와 아울러 本 調査에 隨伴되는 諸問題点을 経濟企劃院長官에게

上申하여 裁可를 얻어 68年 4月 17日에 本 調査의 必要性과
協助를 強調하는 大統領 指示覺書가 下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本 調査를 為한 諸般企劃業務가 활발히 진척되어 第
1次案으로 作成된 各 部門別 結果表案 調査表案 및 其他 調査要
領을 68年 7月부터 9月까지 實施된 3次에 걸친 試驗調查의
結果에 따라 数次 改善하였고 그해 10月에는 本 調査要員을 美國·
日本·和蘭等에 派遣하여 研究케하는 한편 67年 12月 부터 美國
의 国富調查 專門家 Mrs. Alice H.Jones 가 6個月間 滞韓하면서
諮詢한 事項을 바탕으로 하여 調査企劃을 細密하게 修正 补完하였
다.

그리하여 그 結果를 68年 11月 15日 開催된 第29次 統計委
員會에 上程 審議하였는데 여기에서 指定統計로 指定할 것이 議決
되어 68年 11月 21日 経濟企劃院告示 第51号에 의거 指定統計
第21号로 指定告示하였고 이 會議의 議決에 따라 各 部門別 調査
計劃을 統計委員會 国民計定分科會議에 上程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審議 檢討하였다.

即 69年 3月 18日 個人資產部門調查計劃을 審議하고 4月 4
日 政府資產部門, 5月 14日 法人資產部門 및 残価率表部門 그리고
9月 11日 物価倍率表 作成計劃을 檢討하였는바 68年 10月 5日
開催된 分科會議에서 檢討한 家計資產部門調查計劃까지 합쳐서 全
分野에 걸친 調査計劃을 統計委員會의 面密한 審議過程을 거쳤다.

以上과 같이 審議 檢討된 内容에 따라 69年 1月부터 各 機關
이 事前調查를 實施하고 各 機關의 調査對象을 本部에 提出하여

69年 3月에 제반 調査計劃을 確定하고 同年 4月부터 各 機関이 実際調査를 시작하였다.

그후 本 調査結果는 各 機関에서 提出된 集計表를 가지고 70年 4月 28日부터 約 1個月間에 걸친 實務者會議에서 審議検討하고 70年 6月 17日 및 70年 7月 27日 両日 동안의 担当機關 課長會議와 70年 10月 19日에 開催된 調査担当의 審議를 거쳤다. 對外純資產部門은 既存資料를 가지고 推計하여 70年 5月 12日 開催된 分科會議에서 檢討하였다.

그리하여 本 報告書는 最終的으로 71年 11月 27日 開催된 國民計定分科會議 및 71年 12月 15日에 開催된 第41次 統計委員會議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게 된 것이다.

2. 調査 目 的

이 調査의 目的是 國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함으로서

- 가. 經濟的 国力의 把握
- 나. 國民所得과의 比較 및 國民計定의 补完
- 다. 資本蓄積의 計測
- 라. 國家資源의 國際比較
- 마. 富의 分配構成 等에 関한 基礎資料를 얻어 經濟開發計劃, 國家動員計劃 國土建設計劃 等 諸般 經濟施策立案 및 分析의 資料로 利用하는데 있다.

3. 調査時点과 實查期間

調査時点과 實查期間은 아래와 같다.

部 門 別	調 査 時 点	實 查 期 間
政 府	1968.12.31	69. 4 ~ 9
法 人	1968.12.31	69. 7 ~ 10
個 人	1968.12.31	69. 7 ~ 9
家 計	1968.10.31	68.10 ~ 12
對 外	1968.12.31	70. 1 ~ 4

4. 調査根拠

統計法에 依拠한 指定統計調查(指定統計 第21号)로 實施하였다.

5. 調査範囲

가. 調査地域의 範囲

調査基準時点 現在로 大韓民国의 主權이 現実的으로 行事具立 있는 全領域에 걸친다.

나. 調査客体의 範囲

調査의 対象客体는 調査地域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團体 및 共公團体, 政府關係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体 그리고 一般家口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法令에 依하여 設立되어 國내에 本社, 本部等의 事業活動의 場所의 本拠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法人의 構成員인 社員, 株主, 組合員 等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国人으로 構成되었더라도 혹은 資本 또는 出資의 전부 또는 大部分이 外国人의 出資에 依하여 運營되더라도 調査對象에 包含시켰다.

또 國내에 事業活動의 本拠地를 가지고 있는 個人的 単獨 또는 共同經營의 事業体는 그 經營者가 우리나라의 国籍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이와 反對로 우리나라의 国籍을 가진 사람이 設立한 会社일지라도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의 外國에 對한 出資나 外國人の 우리나라에 對한 出資 등은 對外資產 또는 負債로서 併도 把握하였다.

한편 一般家口에 있어서는 國내에 居住하는 一般家口는 모두 調査對象의 客体로 對象範圍에 包含되나 外國의 外交官 領事官 등의 外國官吏나 駐韓 外國軍隊와 構成員의 家口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이와는 反對로 우리나라의 大使館 銀行, 会社 등의 海外支店 및 事務所 등의 資產은 財產目錄에 表示되어 있는 한 調査에 包含시켰다.

다. 調査對象資產의 範圍

調査對象資產은 우리나라의 住民이 所有하는 人間勞動의 結果이며 同時に 再生産可能한 有形固定資產 在庫資產 家計資產 및

對外純資產에 限定하였다. 따라서 埋藏鉱物 土地・自然林 등 天然資源은 勿論 芸術品 天然記念物 骨董品図書 등과 같은 非經濟財와無形資產은 除外하였다.

여기에서 調査対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產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裝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仮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產動物 植物 등이다. 또한 在庫資產은原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 등이며 有価証券은 除外하였다. 그리고 国防部 所有資產中 防衛目的에 使用되는資產은 調査対象에서 除外하였다. 따라서 国富資產은 다음과 같이分類되었다.

国富資產의 分類

1. 有形固定資產

11. 建 物

12. 構 築 物

13. 機械 및 裝置

14. 船 舶

15. 車輛 및 運搬具

16. 工具 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 物

19. 植 物

2. 在庫資産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工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貯藏品

3. 家計資産 (별개 이외의 것)

4. 対外純資産

5. 調査方法

가. 一般的의 調査方法

(1) 所有者主義 方法

原則적으로 調査되는 資産의 所有關係 (법적귀속관계) 를 基準으로 한 所有者 主義方法에 의하여 調査하였다. 그러나 이 基準에 의한 調査가 調査資産의 經濟的인 寄与 또는 소득창출과 무관한 調査가 되지 않도록 当該資産을 基礎로 하여 實質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使用者를 基準으로 한 使用者主義를 準用하였다.

그리고 本 調査에서는 所有主体를 다음과 같이 7個로 区分하였다.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 共公團體

國家로 부터 그 存立目的의 賦與된 公法上의 法人 즉

地方自治團體가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產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產業協同組合 등 公共組合 및 嘗造物法人의 所有하는 資產

(4) 政府企業

政府가 直接 經營하는 企業, 例를 들면 鐵道廳, 專壳廳 等

(5) 政府管理企業

아래와 같은 重要政府出資企業의 所有하는 資產을 말한다.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韓國住宅銀行, 大韓損害再保險公社, 韓國造幣公社, 韓國證券去來所, 朝興銀行, 商業銀行。

韓一銀行, 第一銀行, 서울銀行, 大韓石炭公社, 韓國電力株式會社, 大韓石油公社, 大韓鐵礦開発株式會社, 大韓重石礦業株式會社, 韓國鉱業製鍊公社,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仁川重工業株式會社, 大韓造船公社, 韓國機械工業株式會社, 忠州肥料株式會社, 大韓塩業株式會社, 大韓通運株式會社, 大韓海運公社, 大韓航空公社, 國際觀光公社, 大韓住宅公社, 大韓浚渫公社, 韓國水資源開發公社, 國定教科書株式會社。

(6) 法人

商法上의 嘗利法人과 民法上의 財團法人 및 社團法人。

(7)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個人의 単獨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商店 또는 工場 등의 個人企業 및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든 團體。

(8) 一般家口

(9) 対外純資產

(2) 全数調査와 標本調査方法을 紹用

1968年 国富統計調査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実施되어
 標本調査하기 為한 既存資料가 未備하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全数調
 查方法에 의하였으나 調査対象이 龍大하므로 調査技術上 아래 표와
 같이 調査客体別로 全数調査와 標本調査方法을 紹用하였다.

A.一般政府	全数調査	自計式
B.政府企業	"	"
C.政府管理企業體	"	"
D.法人資產	"	他計式
E.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資產	標本調査와 全数調査	"
F.一般家口	標本調査	"
G.對外純資產	既存統計利用推計	既存資料

(3) 他計式 記入方法과 自計式 記入方法의 爰用

위의 表와 같이 調查客体別로 他計式 記入方法과 自計式 記入方法을 爰用하였다.

4. 有形固定資産과 調査方法

原則的으로 各 資產마다 個別的으로 再造達価格을 算出할 수 있도록 調査하였다.

(1) 調査資產의 単位

調査資產의 単位는 物理的으로 把握되는 1個의 財貨가 아니고 그 財貨에 對한 投下時期가 다른 각각의 資本支出을 각각 1個의 資產으로 생각하여 調査單位로 하였다. 그러나 同一한 種類 品質構造의 財貨에 對한 同一年次의 資本支出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記入하였다.

(2) 評価方法

① 原則

資產은 原則的으로 取得価額에 物価倍率과 經過年數에 따른 残価率을 곱하여 산출하되 再取得価格(총국부)과 再調達価額(순국부)을 同時に 推計하였다.

여기에서 再取得価額(총국부)이라 함은 그 財貨를 1968年末에 새로이 取得(구입)하려면 얼마가 必要한가를 市場価格으로 評価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 財貨의 新品価格이 된다. 즉 再取得価格 = (取得価額×物価倍率)로 表示된다.

再調達価額(순자산액)이라 함은 위의 再取得価額에 의한 總資產額中에서 減価償却充当金을 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財

貨를 1968 年末 現在의 現狀態로 購入하는 것으로 생각한 價額이다.

즉 再調達價額 = (再取得價額 × 残價率)이다. 따라서 有形固定資產의 評価를 위하여는 첫째로 取得價額을 把握하고 둘째로 物價變動을 反映시켜줄 物價倍率表에 의하여 再取得價格을 算出한 후 세째로 定率法에 의한 残價率에 의거 再取得價格을 再調達價格으로 다시 算出하였다. 따라서 有形固定資產(순국부) = 取得價格 × 物價倍率 × 残價率이 된다.

1) 物價倍率

國富調查에 의한 国富構成資產의 評価는 제자산의 同一基準時點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資產의 取得時期와 評価時點間의 物價變動을勘案하여 資產의 評価時點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物價倍率의 作成單位는 資產分類別로 細分하여 가급적 세분된 個別 物價倍率을 使用하였다.

이번 國富統計調查에서는 利用可能한 價格資料와 集計能力 등의 制約을考慮하여 첫째로 物價倍率表의 作成單位는 國富統計調查 資產分類와 符合시켰고 둘째로 物價倍率表의 時系列은 1910 年부터 1968 年까지 每年次別로 作成하였다.

2) 残價率

國富評価에서 말하는 残價率이란 1 - 債却率을 말한다.

즉 $d = 1 - \sqrt{\frac{s}{c}}$ 를 말한다. (주 : d = 債却率, s = 残存價格, n = 耐用年数, c = 固定資產 取得價額)

여기서의 債却率은 定率法에 의한 各資產의 減價債却率로서 이

償却率을 각 有形固定資産의 耐久年数別로 算出한 후 이에 對應한 그 資産의 經過年数에 따라 傷却率을 1에서 공제한 것을 残価率로서 정하였다.

残価의 한도는 資産의 取得時点으로부터 經過年数가 到達한 때의 残価率을 10%로 하고 經過年数가 耐用年数의 2倍에 도달한 때의 残価率은 1%로 하였다

(4) 取得価額 등이 불명한 資産의 評価

取得時期와 取得価額中 取得価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再取得価額에 經過年数에 따르는 残価率을 곱하여 求하고 取得時期와 取得価格을 전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時価로 評価하였다.

이때 時価로 評価한 분에 대하여는 總國富와 純國富에 各各 包含시키고 이를 註記하였다.

(5) 耐用年数

耐用年数는 国富資產分類 및 耐用年数表에 明示된 것을 말하며 取得時期로부터의 그 經過年数가 耐用年数에 達할 때의 残価率을 10%로 하며 耐用年数를 넘을 때에는 残価率 1%가 될 때까지 同一率로 減価하는 것으로 하였다.

有形固定資產中 機械 및 裝置를 제외한 모든 資產(建物·構築物·車輛 및 運搬具·工具·器具 및 備品·建設仮計定·動物·植物等)은 모든 產業에서 公通으로 保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었고 機械 및 裝置는 다른 有形固定資產과는 그 分類方法이 다르므로 適用하는데 便利하도록 別途의 表를 만들었으며 특히 政府部門의 機械 및 裝置는 政府對外資產調查支部에서 別途로 定한 것에

의하였다.

(2) 建物評価方法

物価를 住居 非住居用別과 用途構造別로 子분하여 68年末
建物坪当基準価格表를 算出하여 各 部門別 調査結果의 審査資料로
하였고 家計部門調查中 住宅은 建物의 構造와 建物坪數만을 調査하
고 이 基準表에 의거 住宅評価額을 算出하였다 (별표 1. 전물평가기
준표 참조)

(3) 其他

鉱業用資產에 대하여서는 生產庫比例法을 適用하는 등 再調
達価格이나 時価로 接近하는데 困難 또는 不合理할 경우에 各 調
査支部에서는 해당 評価方法을 本部와 協議한 후 採用하였다.

다. 在庫資產의 調査方法

(1) 調査資產의 単位

國富資產分類表의 在庫資產中分類 (原材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 까지를 알 수 있도록 調査하였다.

(2) 評価方法

調査基準時点에서 실시한 在庫調査의 帳簿価格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그러나 調査時点現在 실지 在庫調査를 實施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첫째 調査基準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時点에 行한 在庫調査
의 帳簿価格을 國富로 評価하였으며 둘째 실지 在庫調査를 行한 점
이 없는 在庫는 調査基準時点의 帳簿上의 価格을 國富로 셈하고
세째 帳簿가 없는 것은 調査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時価로
써 在庫評価하였다.

라. 動植物의 調査方法

(1) 育成年数 및 数量

物価의 경우에는 離乳期로부터 現在까지의 育成年数를 調査하였고 植物에 있어서는 種苗의 경우에 播種으로 부터 現在 種苗에 이르기까지의 育成年数를 셈하고 成苗의 경우는 種苗로 부터 現在까지의 育成年数를 각각 区分하여 調査하였다.

그리고 数量은 動物에 있어서는 頭 또는 数 등으로 植物은 주 또는 속 등으로서 記入하되 動物의 경우 現在 母乳로서만 生存이 가능한 것먹이는 어미의 숫자속에 包含시켜 어미와 함께 評価하였다.

(2) 評価方法

農水產部를 비롯한 関係機關의 協助를 얻어 68年 12月 31日 現在의 動植物評価基準表를 만들고 動植物의 育成年数別 数量을 調査하여 이 数量에 評価基準表에 의한 単位當 時価額을 승하여 評価하였다. (별표 2. 動植物評価基準表 參照)

7. 調査機構

이번 国富統計調查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統計調查이고 또 調査의 龙大性과 技術上의 제문제 때문에单一機關에서 실시하지 않고 国富統計調查 施行規則(經濟企劃院訓令 第50号 69.5.31公布)에 의거 다음 表와 같은 調査機構를 形成하여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中小企業銀行 等 各 調査担当機關의 相互有機的인 協助下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각支部의 担当部門과 対象資產의範圍를 具体的으로 보
면 아래 表와 같다.

특히 農林水產業部門은 家計部門과 個人企業部門을 区分하기 어려
우므로 別表 3과 같이 個人企業部門에 속하는 部門을 명백히 하
고 여기에 包括되지 않는 対象은 전부 家計部門에서 調査하였다.

(別表3. 農林水產業의 個人企業部門 調査対象基準表 參照)

우리나라국富統計調查機構

統計委員會	
經濟企劃院長官	次官
調査本部長：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長
幹事長：調查統計局	統計審議官
幹事：調查統計局企劃課長	
기획통합반	기준반
기획반	물작반
기획반	가성비율반
기획반	간작표표반
기획반	자료처리반
각부처지부 지부장통계관 또는기획관리관	
이용자회의 경제계획기관 체 기타이용기관	한국산업은행 법인자산조사지부 부지부장:한은조사처2부장
경제기획원 기계자산조사지부 지부장:조사통계국장	한국산업은행 법인기업자산조사지부 부지부장:한은조사부부장
특별시도지부 부지부장	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부지부장:한은조사부부장
시구군	한국산업은행 부지부장:한은조사부부장
동·음·면조사구	한국산업은행 부지부장:한은조사부부장
조사서원	한국산업은행 부지부장:한은조사부부장
국부통계조사 전문분과회	

조사담당기관	조사대상부문 및 자산			고
	부문	자	산	
1. 정부및 대외 자산조사지부 (한국은행)	<p>1. 일반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 단체 및 기 타 공공단체 체</p> <p>2. 정부기업 3. 정부관리 기업체</p> <p>4. 사회간접 자본시설</p>	<p>1. 국유재산법 2. 물품관리법 3. 지방재정법상 물품 4. 영조물법 인의 소유하는 자산</p> <p>1. 지방재정법상 3. 공공단체 (토지개량조합 동조합등) 가 소유하는 자산</p>	<p>1. 국유재산의 소유자는 자산에 한 한다 ① 한국은행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국민은행 ⑤ 농업협동조합 ⑥ 한국의 한은행 ⑦ 조흥은행 ⑧ 상업은행 ⑨ 한일은행 ⑩ 세일은행 ⑪ 서울은행 ⑫ 주택은행 ⑬ 지방은행</p> <p>1. 정부관리기업체중 다음의 금융 기관이 소유하는 자산에 한한다 ① 한국은행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국민은행 ⑤ 농업협동조합 ⑥ 한국의 한은행 ⑦ 조흥은행 ⑧ 상업은행 ⑨ 한일은행 ⑩ 세일은행 ⑪ 서울은행 ⑫ 주택은행 ⑬ 지방은행</p> <p>1. 도로 2. 하천</p>	

		3. 험민	4. 기타의 사회 간접자본시설
	5. 해외순자산		
2. 법인자산조 사지부 (한국 산업은행)	1. 법인 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 재단, 기타 법인 및 조합등 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1.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 재단, 기타 법인 및 조합등 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1. 정부대외자산지부에서 조사하는 정부관리 기업체를 제외한 모든 정부관리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3. 개인기업 산조사지부 (중소기업은 행)	1. 개인기업 2. 비법인단체	1.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공장, 상점 등의 개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 법인격을 갖지 않는 모든 단체 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1. 농업 (한국표준산업분류 01), 임업 및 별목업 (" 02), 수렵업 (" 03) 어업 및 수산, 양식업 (" 04)에 있 어서는 규모로 보아 기업성을 띠 업체가 소유하는 자산만을 조사 한다. (부표 농림수산업의 개인기 업부문조사 대상기준표 참조)
4. 가계자산조 사지부	1. 일반기구	1. 일반기구 (농가, 비농가) 가 보 유하고 있는 자산	1.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전물과 내용변수 1년 이상의 배 구제만을 조사 대상자산으로 한다. 2. 농업, 임업 및 별목업, 수렵업, 어 업 및 수산양식업에 있어서는 규모 로 보아, 일반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사한다. (별표 3 참조)

8. 結果의 公表

가. 製表의 原則

- (1) 基本的인 製表는 每 調查客体마다 資產項目別로 集計하고 調查客体의 属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產全体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共公, 企業, 非營利 및 家計部門)로 分類하였으며 企業部門은 다시 產業別로 分類하였다.
- (2) 有形固定資產은 再取得価格(總國富)과 再調達価格(純國富)으로 区分하여 製表하였다.
- (3) 產業分類는 68年 韓國標準產業分類(区分類)의 中分類別로 区分하고 調査되는 資產은 国富統計調查를 위한 国富資產分類表上의 小分類까지 集計 製表되도록 하였다.
- (4) 地域別分類는 道別까지만 把握되도록 製表하였다.

나. 製表結果의 处理

- (1) 調査結果值가 製表된 内容은 利用者の 便宜를 위하여 可能한 한 公表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各部門別 調査内容에 따라 結果表의 数가 다르다.
- (2) 結果表의 数가 너무 龐大하기 때문에 総括報告書 内容에는 再調達価格(純國富)에 의한 結果表를 中心으로 収録하여 公表하고 再取得価格(總國富)의 結果는 各 支部別로 公表하도록 하였다.

9. 用語(資產項目)의 定義

가. 建物(11)

사람이 居住, 使用 등의 目的으로 建築한 것과 建物使用의

必要上 또는 사용을 便利하게 할 目的으로 建物에 부속된 設備를 말하며 住宅, 旅館 등의 住宅用 建物과 倉庫, 事務室등 非住宅用 建物 및 電氣 照明施設 등 建物附屬設備로 分類한다.

住宅과 店舗를 한개의 建物에 包含하고 있는 純用住宅이나 建物의 同一部門을 営業 및 生活場所로 混合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建物面積 및 使用程度에 따라 企業部門(非住居用建物) 또는 家計部門(住居用建物)으로 分類한다. 따라서 10坪의 建物에서 店舗 6坪 住居用 3坪 其他 1坪으로 利用하였을 경우에는 이 建物은 非住居用建物로 分類되며 個人病院에 設置된 에레베ータ가 환자와 가족구성원들의 混合利用일 경우 이 에레베ータ는 企業部門으로 分類하는 것이다.

나. 構築物 (12)

土地에 定着된 모든 土木設備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즉 發展 및 送配電施設, 軌道, 橋轍등의 交通施設 修理 및 給水施設 등이다.

따라서 停車場의 建物이나 倉庫 등은 建物로 家畜飼育場은 構築物로 港灣같은 構築物의 효용을 위한 기중기설비 같은 것은 機械 및 装置로 分類된다.

다. 船舶 (14)

사람 또는 物建을 싣고 물에서 이것을 運搬하기에 適合한 構造物을 말한다. 보통 必要한 範囲의 附屬物을 包含한다. 여기에는 鋼船 木船뿐만 아니라 「모터보트」 등도 포함한다.

라. 車輛 및 運搬具 (15)

移動하는 모든 運搬機関 및 運搬用具를 말한다. 예컨대 自動車, 汽車, 航空機, 리야카 등이다. 그러나 일정한 場所에 고정된 運搬設備는 機械裝置에 分類된다.

마. 工具, 器具 및 備品

工具란 活字 등과 같이 機械 또는 手工에 의하여 直接 物件을 제작 또는 가공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用具를 말하고, 器具 및 備品은 工具 이외의 用具品 예를 들자면 「라디오」, 사무용 탁자, 시계, 도량형기기, 간판, 이용기기, 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바. 建設仮計定 (17)

建設仮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產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計上하였다.

- (1) 直轄工事 또는 自家製造에 의하여 取得한 資產
- (2) 製作, 建設을 체 3자에 発注하고 그에 따르는 原材料, 資材 등을 현물지급한 경우에 그 원재료 등의 대가가 建設仮計定에 計上되어 있을 때 그 対象額
- (3) 인수가 완료되었으나 편의상 建設仮計定에 두고 있는 경우

사. 動物 (18)

農業使役用, 小運搬用, 繁殖用, 競走用 등에 사용할 目的으로 飼育하는 동물을 總稱한다. 그러나 愛玩用의 동물은 포함되지 않으나 牛馬車用의 畜絹, 방목장의 방견 등은 포함한다.

아. 植物 (19)

農業用, 繁殖用 등의 果樹 및 植物 예컨대 사과나무, 배나무

홍차 등이며 1年生의 草木, 2年에 걸치는 입모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庭園, 宅地 등에 散在하여 재식되고 있는 果樹는 설령 収益이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 原材料 (21)

工業, 鉱業 등 기타 商業 이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事業体가 그 製品의 生產에 投入할 目的으로 외부에서 構入한 모든 소재적 재화를 말하며 大部分의 경우 生產의 第1要素가 되고 製品의 基本本體가 되는 것이다.

차. 半製品 및 在工品 (22)

半製品은 최종제품 또는 部分品의 生產을 위하여 제공 또는 가공중이지만 그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在工品은 製造 및 가공중인 것으로서 商品으로서의 販売가 不可能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청부공사중의 建物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카. 完製品 및 商品 (23)

完製品은 販売를 위하여 製造加工이 完了되어 工場에 있는 製品을 말하며 商品은 商業 등 판매업일 경우에 있어서 그 事業体가 보유중인 製品을 말한다. 販売를 위하여 他人으로부터 수탁 받은 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 賦藏品 (24)

燃料 事務用品 짐꾸리기 발송재료 配達運搬具用品 広告用品을 構入한 경우 그것이 상당한 分量으로 賦藏해 두었을 때 이를 調査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파. 对外純資產(4)

우리 나라가 所有하고 있는 貨幣金融 保有外貨 貿易債券 및
對外投資 等의 对外資產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의 投資 및
賠償 等의 对外負債를 차감한 差額을 对外純資產이라 통칭되며 이
번 国富調査에서는 調査基準時點 現在 確定되었던 債權債務에서 產
出하였다.

別表 1.

建 物 評 価 基 準 表

1. 1968 年 建物坪当 基準価格表 (住居, 非住居用別)

住居用建物 45,624 원

非住居用建物 36,895 원

2. 1968 年 建物坪当 基準価格表 (用途構造別)

(単位: 원)

工事構造別 用 途	철근철골조	연와석조	목 조	농 가	기 타
주택 건물	48,465	37,941	39,648	19,380	39,548
산업주거겸용건물	34,684	26,861	28,427	-	28,425
사무소 건물	54,802	43,155	24,630	-	24,610
점포 건물	28,715	27,216	25,678	-	25,593
시장 건물	28,689	27,130	25,942	-	23,903
공장및작업장건물	40,016	36,603	28,734	-	28,717
창고 건물	41,560	23,732	23,058	-	23,115
차고 건물	41,092	23,946	23,448	-	22,593
여관숙박소 건물	62,878	57,628	52,411	-	52,719
保住장 건물	43,888	39,921	36,917	-	36,426
극장·영화관건물	57,794	52,952	-	-	-
요리·음식점건물	62,766	53,037	52,901	-	52,901
공무용 건물	48,746	40,568	35,417	-	34,989
문교용 건물	34,674	27,643	23,360	-	23,485
병원진료소 건물	67,693	39,558	37,335	-	38,105
교회 건물	50,421	42,758	40,059	-	39,906
기타·산업용 건물	47,826	47,828	44,485	-	50,450

3. 建物評価基準表 作成方法

가. 建物의 分類는 用途 및 構造別로 69 個 分類 (1966 年 산업
연판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작업부문에 따라서) 하고 이를 다시
住居 非住居로 大別하였음。

나.坪当価格의 算出過程

(가) 69 個의 建物別로 1966 年 産業連関表에 의거 投入比率을
算出하였음。

(나) 投入比率算出에 使用된 投入項目은 9 個의 項目으로 物価倍
率에 使用될 価格指數 算出 可能한 項目임。

(다) 各 投入項目의 比率에다 物価倍率에 사용될 1966 ~ 1968
年까지의 価格指數를 곱하여 建物의 価格 變動率을 算出하였음。

(라) 92 個의 建設業體에서 草集한 1966 年度 建物建築 坪当工事
費 調査票를 利用하여 1966 年 建物別 坪当価格을 算出하고 이에
価格變動率을 곱하여 1968 年 現在의 建物 坪当価格을 算出하였음。

(마) 69 個의 建物을 다시 住居 非住居로 대별하여 単純 算術
平均에 의한 坪当価格을 算出하였음。

別表2

農業用 動植物 評価基準表

1. 要 約

農業用 動物 및 植物資產을 評価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有形固定資產처럼 取得価格과 物価倍率을 利用하여 評価額을 算出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物 및 植物의 評価는 原則적으로 調査票에 記入된 再取得価格(時価)을 그대로 評価額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實際로 調査票에 再取得価格이 記入되지 않은 境遇에 農水產部에서 定한 動物 및 植物의 評価基準表를 利用하여 評価額을 算出하였다.

2. 植物資產 評価方法

가. 1968年末 再取得価格(時価)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但, 1968年 중에 取得하였을 때는 그 取得価格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나. 調査票에 再取得価格(時価)이 記入되어 있지 않은 境遇에는 農水產部에서 定한 植物資產評価基準表에 의하여 다음 方法으로 处理하였다.

1) 樹齡이 育成年数以下(幼木)인 境遇는 該當 育成年数의 数值을 그대로 評価額으로 한다.

2) 樹齡이 育成年数를 超過(用役期間中)한 境遇에는 다음 公式에 依하여 用役年数를 算出하여 該當用役年数의 数值를 그대로 評価額으로 한다.

$$\text{樹齡 또는 経過年数} - \text{育成年数} = \text{用役年数}$$

3) 前項에서 算出한 用役年数가 耐用年数를 超過한 境遇에는

耐用年数와 經過年数로부터 残価率을 1968年 国富統計調査用 定率法残価率表에서 찾아서 다음 公式을 適用하여 評価額을 算出 한다.

$$\text{成園 段步当育成価} \times \text{成園面積(段步)} \times \text{残価率} = \text{評価額}$$

단 이때에 調査票의 数量이 株数로 記入되어 있을 때에는 1株당 段步数×株数에 依하여 段步로 換算하여 適用한다.

4) 樹齡이 木明인 境遇에는 經過年数를 그대로 樹齡으로 한다.

取得時期도 記入 漏落된 境遇에는 成木으로 看做하여 育成年次의 最後에 있는 数值을 評価額으로 한다.

다. 植物資產評価基準表에 記載되어 있지 않은 種類에 대해서는 1968年中에 取得하였을 境遇는 그 取得価額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3. 動物資產評価方法

가. 1968年末 再取得価格(時価)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단, 1968年中에 取得하였을 境遇는 그 取得価額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나. 再取得価格(時価)이 記入 漏落된 境遇에는 農水產部에서 定한 動物資產評価基準表에 依하여 处理하였다. 이 境遇에는 動物의 種類, 年齡 등과 調査票에 記載된 所在地事項을 基礎로 하여 適用한標準을 決定하였다.

다. 調査票에 記入된 年齡이 評価基準에 記載된 年齡을 超過할 때는 年齡의 数值得을 適用하였다.

라. 調査票에 再取得価格(時価)이 記入 漏落된 境遇에는 다음 要領에 依하여 处理하였다.

1) 乳牛 및 韓牛는 別途의 評価基準을 適用하되 암수의 区別이 不明인 경우는 수소(牲)의 数值를 適用한다.

2) 犬양 其他 動物은 年齡이 区別없이 市道別 評価基準에 依하여 处理한다.

마. 前項에 관하여 調査票에 記載된 事項이 不明인 境遇나 動物評価基準表에 記載되어 있지 않은 動物에 대해서는 時価額으로 評価하였다.

植物資源

評 價 基 準 表

段歩当株数		12	100	24	36	24	50	360		1,200	720	450	310	310	段歩当株数		
1株当段歩数		0.083	0.01	0.042	0.028	0.042	0.02	0.003		0.0008	0.0014	0.0022	0.0032	0.0032	1株当段歩数		
取得時期	経過年数	耐用年数		25	35	20	35	12	10	26.0%		6.4%	14.2%	14.2%	14.2%	耐用年数	
		用成園定率		8.8%	6.4%	10.9%	6.4%	17.5%	20.6%	44,188		18,450	25,386	28,672	23,419	22,524	耐用年数
成園段歩當育成価		93,610	139,227	112,591	72,482	35,905	43,338	44,188		18,450	25,386	28,672	23,419	22,524	耐用年数		
	1	1	1년	93,610	139,227	112,591	72,482	35,905	43,338	44,188	18,450	25,386	28,672	23,419	22,524	1	1
	2	2		85,372	130,316	100,319	67,842	29,622	34,410	33,141	17,269	21,781	24,601	20,094	19,326	1	1
	3	3		77,884	122,102	89,397	63,567	24,451	27,346	24,834	16,181	18,684	21,103	17,236	16,577	2	2
	4	4		71,050	114,305	79,714	59,508	20,179	21,712	18,647	15,147	16,019	18,092	14,777	14,213	3	3
64	4	4		64,778	107,066	71,045	55,739	16,660	17,032	13,963	14,188	13,734	15,512	12,670	12,185	4	4 64
63	5	5		59,068	100,243	63,276	52,187	13,921	13,695	10,473	13,284	11,779	13,304	10,866	10,451	5	5 63
62	6	6		53,826	93,839	56,408	48,853	11,346	10,878	7,865	12,435	10,104	11,411	9,321	8,965	6	6 62
61	7	7		49,145	87,852	50,328	45,736	9,371	8,668	5,877	11,642	8,657	9,777	7,986	7,681	7	7 61
60	8	8		44,839	82,283	44,811	42,837	7,720	6,891	4,419	10,904	7,438	8,401	6,862	6,600	8	8 60
59	9	9		40,908	76,993	39,970	40,083	6,391	5,461		10,203	6,372	7,197	5,878	5,654	9	9 59
58	10	10		37,257	72,120	35,579	37,546	5,278	4,334		9,557	5,458	6,164	5,035	4,843	10	10 58
57	11	11		33,980	67,525	31,751	35,154	4,345			8,948	4,696	5,304	4,333	4,167	11	11 57
56	12	12		30,985	63,209	28,260	32,907	3,591			8,376	4,036	4,559	3,724	3,581	12	12 56
55	13	13		28,270	59,171	25,220	30,805				7,841	3,452	3,899	3,185	3,063	13	13 55
54	14	14		25,743	55,412	22,518	28,848				7,343	2,970	3,355	2,740	2,635	14	14 54
53	15	15		23,496	51,932	20,041	27,036				6,882	2,539	2,867	2,342	2,252	15	15 53
52	16	16		21,437	48,590	17,902	25,296				6,439					16	16 52
51	17	17		19,564	45,527	15,875	23,702				6,033					17	17 51
50	18	18		17,880	43,021	14,186	22,397				5,701					18	18 50
49	19	19		16,288	39,958	12,610	20,802				5,295					19	19 49
48	20	20		14,790	37,313	11,259	19,425				4,945					20	20 48
47	21	21		13,573	34,807		18,121				4,613					21	21 47
46	22	22		12,357	32,718		17,033				4,336					22	22 46
45	23	23		11,233	30,630		15,946				4,059					23	23 45
44	24	24		10,297	28,681		14,931				3,801					24	24 44
43	25	25		9,361	26,871		13,989				3,561					25	25 43
42	26	26			25,200		13,119				3,339					26	26 42
41	27	27			23,529		12,249				3,118					27	27 41
40	28	28			22,137		11,525				2,934					28	28 40
39	29	29			20,606		10,727				2,731					29	29 39
38	30	30			19,353		10,075				2,565					30	30 38
37	31	31			18,100		9,423				2,399					31	31 37
36	32	32			16,986		8,843				2,251					32	32 36
35	33	33			15,872		8,263				2,108					33	33 35
34	34	34			14,897		7,756				1,974					34	34 34
33	35	35			13,923		7,248				1,845					35	35 33

우리나라의 농업 기초 통계

(단위 : 원)

증류별 명명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당세	65,700	75,600	62,400	62,400	65,700	65,700	57,500	57,500	59,100	59,100	55,500
수	2	106,000	121,900	100,700	100,700	106,000	106,000	92,800	92,800	95,400	95,400	92,800
수	3	138,000	158,700	131,100	131,100	138,000	138,000	120,800	120,800	124,200	124,200	120,800
수	4	161,800	186,100	153,700	153,700	161,800	161,800	141,600	141,600	145,700	145,700	141,600
수	5	177,400	204,000	168,500	168,500	177,400	177,400	155,200	155,200	156,000	156,000	155,200
수	6	200,000	230,000	190,000	190,000	200,000	200,000	175,000	175,000	180,000	180,000	175,000
수	7	183,700	211,300	174,600	174,600	183,700	183,700	160,800	160,800	165,400	165,400	160,800
수	8	174,600	200,700	165,800	165,800	174,600	174,600	152,700	152,700	157,100	157,100	152,700
수	9	157,100	180,700	149,200	149,200	157,100	157,100	137,500	137,500	141,400	141,400	137,500
수	10	131,400	151,200	124,900	124,900	131,400	131,400	115,000	115,000	118,300	118,300	115,000
수	11	97,500	112,100	92,600	92,600	97,500	97,500	85,300	85,300	87,800	87,800	85,300
수	12	24,000	23,000	25,000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2,000	22,000	22,000
수	13	71,200	57,900	71,200	62,300	57,900	75,700	62,300	62,300	65,000	65,000	62,300
수	14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3,000	70,000
수	15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3,000	70,000
수	16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3,000	70,000
수	17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3,000	70,000
수	18	78,900	64,100	78,900	69,000	64,100	83,800	69,000	69,000	73,000	73,000	70,000
수	19	67,800	55,100	67,800	59,300	55,100	72,000	59,300	59,300	61,900	61,900	59,300
수	20	24,000	23,000	25,000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2,000	22,000	22,000
수	21	60,000	55,800	64,300	57,100	59,100	59,100	52,500	52,500	54,500	54,500	54,500
수	22	81,300	75,700	87,200	77,500	80,100	80,100	71,200	71,200	73,900	73,900	73,900
수	23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0,000	83,000	83,000	83,000
수	24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0,000	83,000	83,000	83,000
수	25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0,000	83,000	83,000	83,000
수	26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0,000	83,000	83,000	83,000
수	27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0,000	83,000	83,000	83,000
수	28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0,000	83,000	83,000	83,000
수	29	90,000	83,800	96,600	85,800	88,700	88,700	78,900	78,900	81,800	81,800	81,800
수	30	77,400	72,000	83,000	73,700	76,300	76,300	67,000	67,000	70,300	70,300	70,300

산 양 및 기타 축의 평가 기준 표

시도명 동물명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청 산 양	23,000	13,000	7,000	10,000	10,000	2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청 소	3,000	7,500	4,500	4,500	5,500	3,500	3,500	4,000	5,000	5,000	3,500
염 체자	{세끼} 어미	4,500 13,328	4,000 11,728	6,000 14,000	5,000 12,800	5,000 14,928	4,500 15,660	4,500 12,500	2,800 13,400	3,000 13,860	4,000 13,860
닭 (큰닭)	430	520	500	400	350	350	600	600	400	400	500
오리	360	450	300	300	200	180	300	300	300	300	300
토끼	{세끼} 어미	100 300	60 260	100 200	60 300	100 150	50 400	70 200	50 300	50 250	70 200

<別表 3>

農林水產業의 個人企業部門 調查對象基準表

Code No.	業種	對象範圍	備考
012	원예농업	고등체소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협특수조합파자료
0121	채소원예	화초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파자료
0122	화초원예	과수육묘업 상전재배업 채종생산업	※한국상묘협회자료
0123	중묘원예	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한국종묘생산협회자료 ※농수산부특작파자료
0124	고동원예	온실재배업 천석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산림청육림파자료 경영하는자
013	특용작물농업	유지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파
0131	유지작물재배업	섬유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파
0132	섬유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부여삼엽조합
0133	약용작물재배업	연초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연초생산조합연합회
0134	기호작물재배업	기타특용작물재배업	※농협특수조합파
0139		사탕수수, 사탕무우, 완초「호프(hop)」	

		제 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014	파수몇수원농업		
0141	파 수 농 업	파수 100주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협특수조합과
0142	관상수재배업	관상수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대한관상수협회
0143	수 원 농 업	고리버들, 떡, 차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수조합과 ※산림청조림과
015	축 산		
0151	가축생산업	한우 5두이상 } 이를 주업으로 경영 양돈 30두이상 } 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기업양축가)
0152	가수생산업	양계 1,000수이상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기업양축가)
0153	낙 흉 업	유우 5두이상 } 이를 주업으로 유선양 30두이상 } 경영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기업양축가)
0154	양 봉 업	양봉 50군이상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협특수조합과
0155	종축및부란업	종축및부란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Code No.	업 종	내 상 범 위	비 고
016 0160	잡 농업부대 「서어비스」업	양 잡업, 잡종생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 농수산부 잡업과 ※ 한국잡종협회
017 0170	농업부대 「서어비스」업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 농협 특수조합과 ※ 농협 가축인공수정소
021 0210	임	조립 용육묘업, 축령 육성업, 조립업	※ 한국양묘협회 ※ 산림청 육림과 ※ 산림청 조림과
0221 0222 0230	별 목 신 털 임업부대 「서어비스」업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 " " " " " " "	※ 산림청 임정과 ※ " " " " " " " "
03 04	수 력 어업 및 수산양식업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개인영업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허가	※ 각지방세무서

第 4 章 國富의 利用

第 4 章 国富의 利用

第 1 節 国富利用의 方向

一国의 国富라 함은 그 나라에 있어서 生産에 寄与할 수 있는 모든 資源을 가르킨다. 즉 自然의 產物이 되었든 아니면 人間勞動의 結果가 되었든 간에 人間이 必要로 하는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에 寄与할 수 있는 經濟的 여건 (environment)의 한側面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所得을 낳는다는 意味에서 国富는 国民所得의 「플로우」(flow)概念과는 대비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基金 (fund) 내지는 「스톡」(stock)를 이루게 되며 이는 또한 자체의 使用에 의하여서만 生産이 가능한 하나의 生產物이기도 하다. 生產은 国富의 利用에 의해서 비로소 可能하여 진다.

따라서 国富의 純變化를 알기 위하여서는 粗投資로부터 国富의 磨滅 (the using up of Wealth) 내지 資本消費 (Capital Consumption) 分을 差減하여야만 하며 国富의 所有에서 발생하는 純所得을 推計하기 위하여서도 粗國民所得으로부터 이를 除外하여야만 한다.

純所得 및 生產에 寄与하고 있는 모든 形態의 国富가 가지는一般的이며 主要한 特性이란 바로 国富가 価値를 갖고 있다는 点이다. 다시 말하자면 資產 (Capital Assets)의 価値는 일관적으로 그들의 将來에 있어서 기대되는豫想純所得을 現在価値로 割引한 것이라 할 수 있다.勿論 所得은 그 貨幣的 性格만이 아니라 直接的이며 心理的인 特性도 갖는다.

1. 国富의 物理的 諸形態

国富는 人間勞動의 形態가 되었든 아니었든 간에 여러가지 形態의 有形資產과 無形의 諸資產 그리고 金錢上의 貸借關係까지를 包含한다. 瀑布에서 落下하는 물방울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지듯이 国富의 物理的 構成內容 역시 變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전히 基金 그 자체는 生產力의 基礎로서 存在한다. 여기에서 広義의 国富概念을 그 物理的인 性質에 따라 觀察하는 것이 普通이며 또한 有益하다.

기본적인 区分은 人的 富 (Human Wealth) 와 物的 富 (Non-human Wealth) 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区分은 労動力이 市場에서 売買되고 있는 自由制社會下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人間 그 自体가 売買된다는 것은 아니다. 人間과 資產사이의 이러한 法的인 区分以外에 人間에 있어서 必然的인 自己本位의 思考는 人的인 富와 物的인 富를 区分케 하고 또 前者와 後者の 各各에서 발생하는 所得도 나누어 고찰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国富라고 할 경우 物的 資產은 市場에서 그 売買가 成立될 수 있음에 따라 人的資本 (Human Capital) 의 경우에 不可能하였던 評價의 基準을 마련하여 준다. 어떤 經濟学者들은 人的인 富에 価値를 賦与한다든가 또는 人的 富에 있어서 어떤 特性에 대하여 価値를 計量하려는 것에 関心을 가지기도 한다. 즉 労動力を 發揮할 수 있는 年齡에 이르기 까지의 基礎扶養費라든가 教育·訓練 내지 医療費등에 投資함으로써 形成된다고 보는 人的資本의 評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國富調査의 性格이라든가 또는 問題의 複雜性을 감안하여 推計가 가능한 物的인 富(Non-Human Wealth)에 局限시킨다. 그렇다고 人的資本의 基本的인 重要性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단계의 推計를 보다円滑하게 하기 위하여 人的資本에 대한 가능한 「데이터」의 수집을 계속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계되는 特性에 따라 所得과 相關되는 자료라든가 아동의 基礎扶養費를 비롯하여 教育·訓練 내지 医療費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 그러나 人的 富에 대한 推計問題는 아직도 試驗的인 段階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國富의 範囲가 보다 量的으로 推計가 가능한 物的 富에 局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対象은 有形의 生產的인 資產뿐만이 아니라 無形의 또는 金錢的인 資產까지를 包含할 것이나 一國 全體의 立場에서 볼 때는 總資產의 일부는 貸借間에 相互 相殺됨으로써 殘餘의 純價值는 基本적으로 生產的인 自然資源以外에 構築物 裝備 기타 在庫品 등으로 構成되는 有形資產과 對外純債權으로서 이루어 질 것이다.

國富의 中心은 結局 国內의 有形資產+對外債權債務의 差額이며 이는 統合國民貸借對照表(A Consolidated Balance Sheet) 上에서의 國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部門別 貸借對照表 또는 結合國民貸借對照表(A Combined Balance Sheet) 역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意圖下에 金錢的인 資產 負債에 대한 資料(data)의 拡充과 改良에도 関心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蒐集과 推計는 자료자체가 보다 明瞭한 形式을 가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調査研究에 있어서도 概念的인 문제라든가 또는 자료수집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별로 労力이 必要하지는 않

았다.

有形資產의 경우 人間勞動의 產物로서의 「再生產」이 可能한 資本과 土地 기타 등 自然自源과의 区分이 행하여 지고 있다. 그러나 自然自源의 경우 역시 再生產費用이 아니드라도 生產費가 所要된다는 意味에서相當한 研究와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資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自然資源의 價值 역시 未来에豫想되는 純収益으로 判斷된다. 再生產이 가능한 경우처럼 自然自源의 開發에 必要한 投資는 所要基金의 費用과 관련된豫想収益率에 依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天賦的인 地代의 資本化로부터 生產的인 自然自源에 投下된 資本의 價值를 分離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莫大한 難点이 뒤따른다. 開發된 自然自源의 資產評価問題 역시 費用法 (Cost Approach) 이 非現實의이기 때문에 再生產可能性 資產의 評価보다도 훨씬 더 큰 難点을 가져온다. 그러나 自然自源에 대한 一般的인 関心에 따라 이것이 純粹히 人間勞動의 產物로서의 国富와 基本의인 類似性이 있고 나아가서 資源評価에 있어서 두부문간의 結合性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별개로 이 부문에 대한 推計를 抨할 것이다.

再生產이 可能한 有形資產에는 広義에 있어서 固定減価資產 - 構築物과 裝備 등 - 과 在庫品 등을 包含한다. 어떤 經濟学者들은 軍資產을 国富에 包含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研究計劃에 이를 包含시켰으며 相異한 分析上의 目的에 따라서 部門別乃至 全體의in 總計에 包含될 수도 있으며 除外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国富가 가지는 하나의 特性은 銘心하고 있어야

한다. 즉 모든 資產의 價值는 그것의 使用에 의하여 예상되는
将来所得의 흐름에서 비로소 發生된다고 하는 点이다.

2. 国富의 所有 및 使用部門

自由企業体制 即 市場經濟下에서는 生產的인 有形資產의 大部分
이 個人企業部門에 依하여 所有되고 있다. 그러나 公共所有 資
產의 相當部分 역시 個別 經濟의 生產에 寄与하거나 直接 消費
者에게 用役을 供給하는데 使用된다. 마찬가지로 耐久消費財나
家計資產도 그들이 個人所有이거나 企業으로부터 賃借하였거나 間
에 直接 家計에 對하여 用役을 提供하여 준다. 法人이나 非營
利團體가 保有하고 있는 資產도 마찬가지로 生產의이므로 国富에
包含되어야 한다.

結局 여러가지 形態의 資本이 企業·政府·家計의 세 가지 主要
部門間에 所有되는 樣式이 相對的으로相當히 變化되어 왔는데
이는 耐久消費財의 開發, 賃貸借契約의 普及, 政府活動의 相對的
拡張에서 그 一部要因을 찾아 볼 수 있다. 國民經濟計算에 関
한 基本規則中의 하나는 重要的 總計值가 어떤 制度의 變化에
도 不變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財貨를 国富에 包含시킬 것인가의 与否에 関한 基本의
基準은 広範하다. 即 그 基準은 直接的이건 間接의건 財貨가
消費者에게 滿足이나 効用을 提供하거나 또는 豫見할 수 있는
将来에 提供되리라 期待되는 것이면 된다.

3. 国富統計의 實際的 또는 潛在的 利用

經濟統計에 있어서는 統計의 使用 目的에 따라 諸概念과 定義는 물론 推計方法까지도 規制된다는 것은 常識의인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國民經濟計算을 構成하는 各 部分의 細分化 程度가 一定하지 않을 때의 広範하고 概括的인 推計에 關하여서만 部分的으로 妥當하다。

이러한 性質때문에 國民經濟計算은 많은 用途와 利用者를 為하여 도움이 되도록企劃된다。 이러한 点에서 볼 때 國民經濟計算은一般的 目的을 지닌 統計이다。

異質의인 統計利用者들의 要求는 각各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그要求가 反對일 수도 있으므로 國民經濟計算이 모든 用途에 全部 놓 같이 充足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用途를 미리豫見할 수도 없다。 여러가지 用途가 일단 나타나면 새로운 統計가 利用可能하게 되며 그것을 接하게 된다。

그럼에도 國民貸借對照表의 推計나 所得과 生產計定을 補完하기 為하여 企劃된 国富統計 등을 計劃함에 있어서 主要한 潛在的 用途를 고려함은 所望스러운 일이다。 이를 潛在的利用은 諸用途間에 或은 理想과 統計的 可能性間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体制, 概念, 方法 등의 選択에 영향을 미친다。

利用者가 自身의 必要에 따라 系列을 再調整할 수 있도록 部分을 細分한다던가, 選択의 系列를 몇가지 方法 (經常価値, 原価, 不變価値) 으로 同時に 提示한다든지 利用者들이 自身의 目的을 為하여 주어진 系列의 妥當성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도록 資料나 方法을 詳細히 記述하여 주는 것 등은 特히 重要하다。

4. 国民經濟計算의 一般的인 用途

概括的인 經濟統計는 첫째 一定時點에 있어서 或은 一定期間동안의 어떤 "크기"나 "相互關係"를正確히 把握하기為한 分析에 利用된다. 統計에 依存한 經濟機能의 理解는 直接 政策樹立의 基礎로서 또는 그 反對로 改善의 여지가 있는 것이건 또는 그것이 直接的이전 間에 政策樹立을為한 基礎로서의 計劃立案에 利用될 수 있다.

直接的으로 利用되는 경우 統計는 是正을 要하는局面을 提示하여 준다. 또 統計로부터 얻어진 相互關係나 「모델」은 選択的인 諸政策의 効果를 밝혀줌으로써 어느 것을 選択할 것인지를暗示하여 준다. 經濟에 어떤 影響力を 作用하는 政策樹立의 根柢로써 巨視經濟的 統計를 主로 利用하는 者는 政府機關 特히 聯邦準備銀行을 包含한 聯邦政府의 여러 機關들이다.

国民所得, 国民生產의 計算이 改善됨에 따라 이러한 統計는 政府機關, 個人會社에서 長短期性 巨視經濟的 計劃의 틀로 漸次 利用되어 왔으며 다른 여러 機關에서는 이들에 對應하는 微視經濟的 變數를 事業計劃에 使用되어 왔다. 이러한 計劃은 期待되는 變化에 適應하기為한 政策樹立을 하는데 있어서 各層에서 行해져 왔으며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는 때때로 이러한 諸計劃이 是正策을 要하는 開發途上의局面을 提示한다.

地域別 層化를 多樣화할 때도 여기에서 部門別 또는 產業別 国民貸借對照表와 国富統計의 利用만을 論議하는 것은 이와 같은 前後關係에 緣由한다. 이러한 統計는 經濟的 知識을 넓히고, 經濟變動의 緩和와 成長의 促進을 고려한 計劃 및 政策樹立의 立

案上 経済分析을 더욱 더 깊이正確하게 하는데 有用하다.

5. 分析의 方向

個個의 実質的 国富의 分析은 여러가지 基準에서 行하여 질 수 있다. 한 時点의 資產은 다음과 같은 即 一部門別, 資產形態別, 所有者別, 事業体規模別 그리고 収入吳 所有財產의 資產規模別 国富構成의 相關比較를 可能하게 한다. 나아가서 그밖에 項目에 対한 構造의 関係도 研究될 수 있을 것이다.

地域의 分析과 다른 国家와의 国富比較를 想定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個個의 여러 變數들에 關하여 地域間・國家間比較가 可能하여 질 수 있다. 또한 部門別 統計의 内訳은 個別單位의 特性이 对比될 수 있는 標準形態로서의 構成團体(家計, 企業, 非營利團体, 政府團体)들에 依하여 利用될 수 있다. 年年의 国富 目錄은 (概括的인 基準에서의 每年の 評価) 一定한 項目的歷史的 變化, 一定 地域에서의 構造變化, 全體經濟나 그 部門에 있어서 国富와 이와 関聯된 變數와의 関係를 밝히고 同時に 모든 이러한 項目들의 部門間 變化의 比較를 위하여 利用된다. 이러한 分析基準의 要約的 記述이란 国民所得計算과 一致하도록 마련된 체계적인 国富評価에 依하여 만들어 질 수 있을 知識의潛在的인 增加를 暗示한다. 會計學的手法은 經濟의相互關係를 研究하는데 있어 有用한 評價法이 될 수도 있다.

第 2 節 分 析 上 利 用 的 範 囲

國富에 对한 分析上 具体的인 類型은 아래의 여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다섯개는 有形資產에 關한 것이고 여섯번째는 主로 国民 및 部門 貸借對照表上의 金融項目에 關한 것이다. 利用 그 自体는 国富의 評価에 있어서 바람직한 細目別 分類를 示唆한다.

1. 主濟的 統計外 構造 研究

여러가지 分類法에 依한 全体的인 国富 總額은 時間의 變化에 따른 總量과 構造變動의 分析 및 國家와 地域間의 相關的 動態의 比較를 可能하게 한다.

分類는 資產과 部門의 類型 產業上 所有 및 使用의 類型과 関聯되고 또한 生產部門에 있어서의 企業 및 事業體의 資產規模別 그리고 家計部門에 있어서의 家計의 資產規模別과 関聯된다.

이러한 分類는 經濟成長 過程에서의 構造變化 뿐만이 아니라 經濟發展의 相異한 段階에 있는 國家間의 構造上의 差異도 比較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所得과 生產의 觀點에서 볼 때 普遍的 分析에 重要性의 一面을 더 하여 준다. 왜냐하면 어떤 種類의 資產(例: 家計와 政府)은 所得과는 아무런 関聯이 없고 또한 여러 部門에 있어서의 資產構造는 創出된 所得構造와 對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國富總額 및 構造의 比較나 現實分析은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長期計劃 및 事業計劃을 위하여 基礎를 마련하여 준다. 家計의

富分配는 消費者 行為를 研究하는데 있어 所得分配를 補完하여 준다.

事業体 및 企業의 富分配는 能率研究에 도움을 줄 것이다。國家의 相對的 安定力を 評価하기 為한 여러 国家의 現実成長率, 現資本量 그리고 經濟的인 現產出量은 中요한 統計가 된다。國富의 評価는 非常時에 있어서 全體的인 그리고 安定的인 產出量을 為한 現行 潛在力評価에도 도움을 준다。

國富의 構造는 國民產出量 뿐만 아니라 国家의 經濟力과 厚生의 比較에 對하여도 重要한 質的인 面을 提供하여 준다。例를 들면 軍需品의 生產 및 武器研究 및 發達에 配定된 資本量의 相對的 成長과 規模는 重要한 決定的 要素가 되는 것이다。

2. 生產性 및 能率研究

全体經濟에 있어서 部門別 產業別 實質資本量과 產出量間의 評価는 產出量 単位當 資本材 使用의 變化 및 水準을 意味한다。

資本係數(資本-產出量比率)와 그것의 逆으로서의 資本生產性(產出量-資本比率)은 評価가 다른 여러 形態의 資本에 따라 測定될 수 있다。資本生產性은 總體的인 生產性 比率을 낳기 為하여 다른 投入要素(勞動原材料)對 產出比率과 結合될 수 있고 그래서 生產機能은 相異한 期間이나 時點에서 測定된다。統計的인 生產機能이나 總生產性의 變化는 產出单位當 實質 코스트나 投下資源의 純節約分을 나타내어 結局 이것은 期間中 生產能率의 增大를 가리킨다。 만약 生產성이 勞動者 1人當(人時) 產出量의 立場에서 測定된다면 資本裝備率은 勞動生產性의 變化를

説明하는데 도움을 준다。近來에 와서는 經濟나 產業上의 効果를 높이기 위한 測定에 더하여 個人企業이나 政府機關에서도 그들 스스로의 生產性 測定을 하여 왔다。이들은 管理統制道具로써 役割하며 生產性 測定이나 公表는 能率에 대한 関心을 促進시킨다。生產性 変動原因은 產出資本比率과 關聯된 變數—即 研究開發의 程度, 產業構造, 景氣変動, 利益率 그리고 生產規模에 대한 다른 生產性 比率—to를 分析함으로써 밝혀 질 수 있다。이러한 分析은 個人經濟 또는 國民經濟의 目標를 向하여 生產性增大를 위한 政府樹立의 資料로 利用된다。

經濟的 總量과 構造(单位原価, 販売価格 및 產出量)를 根拠로 한 生產性 変動의 効果에 대하여도 研究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事業計劃을 為한 基礎로써 또는 國民들에 影響을 주는 技術的 經濟的 變化를 取扱하기 위한 政策立案을 為한 基礎로써 利用된다。

3. 一般需要 分析

經濟學者들은 여러 部門의 資產所有面에 있어서 바람직한 規範을 위하여 調整過程에 力点을 두기始作하였다。家計部門에서 流動資產과 그것의 所得에 대한 関係는 消費-貯蓄 決定에 영향을 준다。이것은 마치 企業가 自身의 注文과 購買比率이 販売量과 (毎月의 供給量) 在庫量의 現實的 및 理想的 比率에 依하여 明白히 영향을 받는 것 처럼 그들은 投資決定에 있어서도 固定資本과 產出量의 現實的 및 理想的인 比率 関係에 영향을 받는다。이리하여 經濟學者들은 部門別 存在量과 総量關係를 観

察함으로써 經濟計劃이나 支出率(成長率)의 安定을 為한 政策立案에 도움을 받고 있다.

4. 資本的 市場의 分析

資本-產出量(資本係數)은 여러가지 分析과 長期計劃을 為한 基盤을 마련하여 주는데 即 이것은 產出에 對應한 部門別, 資本財類型別 總量으로서의 新規資本 所要量의 推定을 可能하게 한다. 나아가서 耐用年数 또는 寿命推定과 對應되는 經過年數別 資本財 價值의 評価는 基礎가 되어 代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策定하는데 준다. 資本財 購買計劃은 몇가지 觀點에서 有用하다.

会社, 非營利團體, 政府機關은豫算節次의 部分으로서 그려한 計劃을 必要로 하며 다음으로 그것은 財政의 所要額推定을 為하여도 必要하다. 建設会社나 現在 판매를 계속중인 資本財 生產業者는 長短期에 걸쳐서 展望이 엿보이는 市場의 開拓에 깊은 関心을 갖고 있다. 모든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 때 資本支出 計劃은一般的인 經濟豫測上 주요한 構成要素를 이루며 높은 水準의 需要所得 및 雇傭을 維持하기 위한 国家政策의 바탕으로써 必要하다.

5. 収益率의 比較

評価된 資產價值는 그것에 해당하는 財產所得으로 나누어 질 때 資本収益率의 評価를 意味하게 된다. 嘗利 經濟下에 있어서 収益率의 水準 或은 变化는 總投資, 總所得 그리고 總雇傭量에

關聯된다. 収益率의 產業間比較는 興味있는 일이고 特히 統制 받은 產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려하다. 水準과 比率의 差異는 原因과 結果라는 両面에서 結合된 要素들에 關聯된다. 後者 中에서 投資率의 関係가 더욱 重要하다.

個別企業의 収益比率은 產業의 平均収益比率과 比較될 수 있다. 產業間의 比較에 있어서는 資產価値를 合理的으로 時価로 換算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것은 価格水準의 インフレ 或은 デフレ에 基因하는 過少 或은 過大 減価償却의 利益에 対한 영향을 除去하기 為하여 利益에 関한 減価償却 評価調整의 必要를 惹起시킨다. 利益率 分析은 投資決定을 為하여 有用한 基礎가 되며 그리고 公共的 効用의 調節에도 関係가 된다. 全般的収益率의 推移 및 變動은 所得과 払拂政策 立案에 있어 中心이 된다.

6. 財務分析

아래에 열거된 여러가지 財務分析은 国民貸借対照表는勿論 모든 部門에서 行하여 진다. 이것들은 金融 및 貨幣政策樹立의 責任을 맡은 機関에 対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金融機関의 管理에 따르는 政策 및 事業計劃의 基礎로서도 有用하다.

가. 資產構造

大衆들이 貨幣를 選好하고 있는 資產中의 그 比重과 그리고 総去來 및 所得에 対한 貨幣保有와의 関係는 金融循環分析 및 貨幣政策을 為하여 重要하다. 뿐만 아니라 流動性의 程度에 依하여 分類된 여러 種類의 資產의 回転速度도 또한 그려하다.

나. 負債構造

負債満期의 期間別 形態에 對한 知識이 貨幣金融分析과 經營管理를 為하여 必要하다. 그리고 資金의 總體的인 可用資源과 利用은 金融市場狀態의 分析과 必要한 政策樹立에 있어서 重要하다.

다. 負債에 對한 資產의 関係

消費者나 政府 그리고 企業部門에 있어서 有形財產 負債比率은 負債의 健全性 如否를 評価하는데 있어 収益-利潤의 関係比率을 補充하여 준다.

負債-資產比率은 現実의이며 循環의인 金融 發達의 分析에 있어서나 계회된 負債償還義務의 觀點에서 債還請求를豫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 財務活動의 比重

財務上 相互關係比率(貸借対照表에서 金融資產에 對한 有形資產의 比率은 經濟內에서 発生하는 不均衡을 밝혀 주는 手段이 된다.)

第 3 節 部門別 및 產業別 利用面

• 政府資產部門

政府 및 各級地方團體에 있어서의 資產目錄은 資產管理 即 在庫品目의 購入과 処分에 있어서 絶對 不可欠한 것이며 나아가서

長期的인 資本豫算의 樹立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合理的인 豫算樹立에 있어서 減価償却 및 投下資本利子의 算定이야 말로 實質費用의 推定을 為하여 必須不可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 意思決定을 為하여서도 必要하다. 資本「스톡크」 및 「서어비스」의 推計는 納稅者에 있어서는 納稅의 反對給付로서 自身이 享受하는 「서어비스」에 對하여 보다 鮮明한 認識을 가져다 줄 것이다.

所管区域내에 있어서 免稅의 恵沢을 입는 一定部門의 富에 對한 推計는 租稅當局者에게 既定課稅에 對한 보다 分明한 理解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總資產의 把握은 資產稅라는가 遺產稅其他 資本収益稅 등과 같이 어느 特定課稅에 있어서의 政策樹立이라든가 事業計劃의 効果를 判斷함에 있어서相當한 重要性을 갖는다.

政府 내지 各地方團體級에 있어서 機能에 따라 費用이나 產出量에 関聯시켜서 資本을 推計한 것은 低水準地域(例를 들자면 学生 1人当 公立学校收容程度)의 기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類似한 単位間의 比較를 可能하게 할 수도 있다.

勿論 聯邦政府가 遂行한 일은 各機關뿐만 아니라 類似한 기능面에서 다른나라의 中央政府와도 比較가 가능한 것이다.

國防의 觀點에 있어서도 國富의 增大 및 構造上의 比較는相當한 意義를 갖게 된다.

1. 純外國資產

一國에 있어서 外國資產에 對하여 把握한다는 것은 經濟成長과

發展에 있어서 外國資本이 차지하는 역할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後進國의 經濟發展을 分析함에 있
어서 重要한 것이다, 外國資本은 後進國의 境遇 重要한 역할을
担当하기 때문이다.

収益의 推計와 더부여 外國純資產(특히 直接投資의 境遇)의
推計는 投資에 대한 相對的인 収益率을 計測할 수 있음에 따라
國際的 資本移動을 説明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先導하기
도 할 것이다.

美国内의 外國資產 및 美国의 海外投資에 대한 正確한 「데이
타」는 美国의 國際收支 分析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對外資產 및 對外負債의 構造는 流動性의 相對的 程度에 依하여
국際收支의 評価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이룬다.

調査 実務者가 지적하고 있듯이 對外資產負債「데이타」의 拡充
은 國際收支推計에 있어서 統計上의 誤差를 减少시킬 수 있을
것이며 金의 國際移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要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家 計

家計部門에 있어서 有形 및 無形資產의 推計는 以前에 金錢的
資產에 基準을 두고 推計하였던 것 보다 家計部門의 国富의 分
配 정도를 보다 正確하게 把握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資產所
有形態는 消費者의 支出 내지 質蓄行為의 보다 完全한 分析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약간의 經過年數別 資產「데이타」는 이미
各種의 商工組合들에 依하여 市場分析의 必要性 때문에 蒐集된

바 있다. 家計資產이 消費者의 所有物의 内容을 밝혀 주는 限
이는 分析에 이 바지하게 된다.

政府의 立場에서 보면 家計資產의 推計는 耐久財의 減価償却뿐
아니라 모든 有形資產에 投下된 利益의 推計를 可能하게 함으로
써 個人所得과 消費에 對한 보다 正確한 分析을 可能하게 하여
준다.

4. 企 業

各 產業에 있어서 企業이나 事業을 經營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可能한 限 그들의 生產性이라든가 収益率 내지 同種產業間 또는 外國의 企業이나 產業과 自己의 여러가지 資本比率 (Financial Ratio) 을 比較하는데 関心을 가질 것이다. 各 產業에 機械裝備를 供給하는 사람들은 各 產業에 있어서 機械裝備 狀況이라든가 그들의 使用年數, 成長率 等에 関心을 가질 것이다. 經濟分析에 関心을 가지는 者들은 國富總體에 對한 個個 產業의 相對的 比重의 變化와 餘他 関聯事項에 関心을 둘 것이다.

그러나 各 產業에 있어서도 國富統計는 特別한 関心이 뒤따른다. 한편 公共施設과 같은 資本集約的인 產業의 경우 負荷要因이라든가 그것이 生產性에 영향을 미치는 바와 같이 能力設備에 對한 利用率의 變化에 特別한 関心을 가진다.

「서서비스」 產業에 있어서 非營利部門等은 現在 거의 아무런 資料가 蒐集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의 相對的 重要性을 評価하기為한 資產 「데이터」의 蒐集에도 関心을 기우리고 있다.

어떤 產業에 있어서는 產出量과 이와 關聯이 있는 変數關係를 보는 것이 分析上 有益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仮令 坪當 農業生產量이라든가 家畜當 収益이 計算되는 것이다.

輸送部門에서 보더라도 여러가지 形태의 車輛當 積荷量이라든가 乘客数는 設備能力과 比較하여 意義를 가질 것이다. 한편 小売業의 境遇는 店舗 坪當의 販売額이 計算되기도 한다.

第 4 節 国富와 社會計定

1. 国富와 社會計定

近年의 国富推計는 富(Stock)와 所得(Flow)間의 関係에 重点을 두고 있음이 常例이다. Stock와 Flow와의 交互連関의 解明 或은 国富를 国民計定의 테두리 안에서 追求하자는 等이 그것이다. Flow와 Stock의 関聯은 한 말로 말하여 "Flow는 Stock로부터 發生하여 다시 Stock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国民所得統計上의 減価償却 및 在庫變動은 곧 国富增減과 直接 関係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国富와 国民所得과의 対比 즉 資本係數를 求하여 相互關係를 究明하려는 움직임이 發展되어 왔으며 現在에도 經濟分析上에 많이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係數가 单只 国富와 国民所得의 対比에 不過하므로 거의 無意味하다는 論者도 있긴하다. 그 理由는 当該年の 国民所得全体가 既存의 有形固定資產의 蓄積量에만 依하여 產出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萬一 產出能力의 觀點으로 본다면 產出能力이 있는 資產과 그로부터 產出된 生產을 対比함이

所望스럽게 되고 있는 有効需要의 観点에서 보면 所得發生的 資產과 그로 부터 發生한 所得과를 対比함이 理論的 意味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最近에는 能力資本係數 또는 部門接近에 依한 實績資本係數等이 經濟分析의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国富와 國民所得과의 関係는 넓게 보아서 社會會計上 国富는 國民所得과의 関係에서 推計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社會會計上에서의 国富의 位置를 明確히 함으로써 国富와 國民所得과의 関係를 밝혀두고자 한다.

社會會計의 体系는 3個의 去來를 가진다. 이에 따라서 經濟分析은 3個의 領域으로 分割되고 있다. 즉 中間生產去來, 純生產(所得)去來 및 貸借去來가 그것이다. 그런데 一國全体로서 이들 3個去來를 統合하면 中間生產過程 貸借關係는 二重計算의 除去란 方針에 依하여 相殺되므로 結局 純生產(所得)去來만이 남게 된다. 왜냐하면 中間生產去來는 企業의 内部去來로서 (主로 原料의 販売 및 購入) 經濟全体로 보면 兩者의 金額은 一致되어 結合過程에서는 相殺되게 된다. 貸借關係 역시 經濟全体란 立場에서는 相殺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緣由하여 純生產을 對象으로 하는 所得分析에서는 中間生產過程과 貸借關係는 取扱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經濟를 하나의 全體로서 볼 경우이며 萬一 部門分割을 行하여 例컨대 企業을 產業別로 個人을 消費世帶와 非當利團體로 区別한다면 中間生產物 또는 貸借關係는 無視할 수 없다. 中間生產을 部門別로 取扱하는 것이 產業聯關表에 依한 投入產出分析이며 貸借關係의 그것이 金融聯關表에 依한 金融分析인 것이다.

2. 国民貸借対照表

새로운 国富推計는 貸借의 相互依存關係를 나타내는 国民貸借対照表로 부터 導出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国民貸借対照表上에 서의 国富의 位置를 確定시키기 위하여 社会會計上 3個의 領域의 連関에 接近하여야 한다.

国民貸借対照表는 国全体의 모든 經濟單位의 貸借対照表를 結合한 것이다. 經濟單位를 集約的으로 分割하면 個人(消費世帯, 民間非營利團體), 企業(法人, 個人企業, 政府企業), 国(中央, 地方)의 3單位로 나눌 수 있다.

家計는 最終單位이며 企業은 中間單位다. 企業, 国에 있어서는 貸借対照表가 作成되어 있는 境遇가 많으나 家計에는 貸借対照表作成의 必要性이 거의 없다. 이들 3單位의 定義 그기에 包含되는 資產, 負債의 各項目의 定義 또한 그들의 評価基準은 實際로 統一되어 있지 않음이 常例이다. 따라서 国民貸借対照表의 作成은 어디까지나 理論的으로 構成되어진 것 즉 加工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国富를 国民所得과의 關係에서 導出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結局 国富라는 것은 国民貸借対照表上의 総資產에서 金融債務를 差減한 純資產(Net Worth, 自己資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国富는 国民貸借対照表의 1項目이 되는 것이다.

国民貸借対照表의 構成內容은 다음 表로 要約된다.

国民貸借対照表

資 産 (A)	負 債 (B)
実物資産 (T)	金融債務 (L)
金融資産 (F)	純 資 産 (W)

여기에서 注目하여야 할 것은 国富가 貸借關係의 變化에는 関係 없이 所得의 収支變動과 金融關係의 變化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다는 点이다. 그 理由를 살펴보자.

$$\textcircled{1} \quad \Delta T = I \quad \dots \dots \dots \quad I = \text{投資}$$

$$\text{또한 } \Delta W = S \quad \dots \dots \dots \quad W = \text{貯蓄}$$

一国全体로서 (對外關係를 無視하고) 는

$$\Delta T = \Delta W \text{ 가 된다.}$$

$$\textcircled{2} \quad \text{所得計定의 각 部門에서 經常收入 (Y) 과 經常支出 (X) 과의 差는 資本收支의 差 } (S - I) \text{ 와 같다.}$$

$$\text{즉 } Y - X = S - I \text{ (이 때 消費를 C라 하면)}$$

$$Y = C + I \quad \text{따라서}$$

$$Y - X = (Y - C) - I$$

$$\textcircled{3} \quad \text{貯蓄과 投資의 差는 金融資產과 金融債務와의 差가 같다.}$$

$$S - I = \Delta F - \Delta L$$

以上에서 ①과 ②에 依하여서 国民貸借対照表와 所得分析과의 関係가 明確하여지며 ②와 ③에 依하여 所得分析과 金融分析과의 関係가 밝혀져서 ③과 ①에 依하여 国富는 金融分析에 聯関하게 된다. 国富 (W)의 増減을 要約하면

$$Y - X = S - I = \Delta F - \Delta L = \Delta W - \Delta T \text{ 이다.}$$

다음에 国民貸借对照表를 3個의 經濟单位에 依하여 보면 그構成内容은 다음과 같다.

(A) 個人

資 产	負 債
有 形 資 產	個人에 对한 負債
在 外 債 權	企業에 对한 負債
通 貨	對 外 負 債
個人에 对한 請求權	歸 屬 項 目
企業에 "	持分權 (equity)
" 持分權	
歸 屬 項 目	
其他無形資產	

(B) 企 業

資 产	負 債
有 形 資 產	個人에 对한 負債
對 外 資 產	企業에 对한 負債
通 貨	對 外 資 產
個人에 对한 請求權	歸 屬 項 目
企業에 对한 請求權	持 分 權
持 分 權	持分權의 評価差額
歸 屬 項 目	
其他無形資產	
持分權의 評価差額	

(c) 国

資　　産	負　　債
有　形　資　產	對　外　負　債
無　形　資　產	國　　　富
對　外　資　產	諸　資　產　評　価　差　額
諸　資　產　評　価　差　額	

以上의 것은 個人과 企業의 資產, 負債를 一国의 資產, 負債로
結合시키는 方式이나 政府를 独立시키고 金融機關을 独立시키는
것이 合理的이다. 金融機關을 独立시키면 各 經濟單位의 保有通
貨는 資產側에 記錄되어 中央銀行의 發行殘高는 負債側에 計上되
어 両者의 金額이 一致됨으로써 国家全体로는 相殺되고 金準備만
남게 된다. 持分權은 領面価額과 時価와의 사이에 差額이 생기
는 것도 困難点이긴 하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資產, 負債의 両側에서 評価差額이 생기
는 것이다. 그러나 国家全体로서는 이같은 評価差額의 純額이
資產, 負債의 어느側에던 남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評価差額
은 事実上 究明되기가 힘든다. 그 理由로서는 国富가 異時点性
이라는 特性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政府를 独立部門으로 하여 作成된 힉스의 英国貸借对照表을 紹
介하면 다음 表와 같다.

国民貸借対照表(英國)

単位: 10億파운드

個人(表1)

資産	負債
土地 1.0	負債 1.5
建物 6.5	純資產 40.5
設備 2.0	
耐用消費財 1.5	
公債 10.0	
株式 15.0	
海外投資 1.0	
現金・預金 5.0	
42.0	42.0

法人(表2)

資産	負債
設備 10.5	株式 15.0
個人への貸出 1.5	銀行預金 5.0
公債 7.0	
海外投資 1.0	
20.0	20.0

政 府(表3)

資 产	负 債
建物, 設備 4.0	公 債 22.0
金 準 備 0.5	純 資 產 -17.5
4.5	4.5

위 表에서 본 바와 같이 国民貸借対照表는 個人, 企業, 政府의 各 貸借対照表를 集計함으로써만 全体貸借対照表의 作成을 期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글드스미스도 말한 바와 같이 企業과 国民經濟計算의 立場間에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貸借対照表의 作成은 대개 ① 歷史的 記錄의 保存을 위하거나 ② 經濟的 効果의 測定을 위하여서나 ③ 定期的인 残額調査 等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①의 경우는 물론 企業이전 社会全体간 다 함께 適用되는 것이지만 ②와 ③에서 差異가 생기는 것이다. 企業의 經濟的 効果測定은 純利潤의 極大化 特히 資本과 去來額의 比較로서 純利潤을 測定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社会에 있어서는 純利潤이 目標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②의 經濟的 効果는 經濟厚生의 測定에 있는 것이다.

또한 定期的인 預額調査는 企業에 있어서는 未回収費用의 測定을 위한 것이나 社会에 있어서는 거의 無意味한 것이다.

이같이 国民貸借対照表의 利用性 및 合理性에 対한 論議는 지금도 여러나라 学者間에 研究되고 있는 바다. 그러나 社会經濟

单位의 全資產의 構造 国富의 分布狀態 債權債務의 相互連関等을
分析하기 위하여 또 社会全体經濟单位의 資產負債의 関係를 通하
여 引出되는 純資產을 確定하기 위하여 国民貸借対照表의 作成이
要望되는 것이다.

물으로 本国富調査가 끝나면 国民經濟計算의 国民所得, 国際收支
資金循環, 產業聯關分析等 諸統計를 發展시키고 있는 韓國銀行(政府
資產支部)에서 国民貸借対照表의 作成을 試圖할 것이 所望스럽
다고 하겠다.

第 5 章 附 表

第 5 章 附 表

第 1 節 物 價 倍 率

物價倍率은 適用對象資產의 價格變動을 나타낸 것이다。 資產評價를 위한 物價倍率에는 對象資產自身의 實態價格에 依한 實態價格倍率과 對象資產의 價格變動把握의 手段으로서 資產의 原價를 分析하여 價格變動率을 求하는 原價倍率의 두가지가 있다。 原價倍率이란 資產의 價格을 間接的으로 把握하는 것으로서 資產의 原價構成을 分析하여 労賃, 経費, 利潤等의 構成比率을 算定하여 이들 各單位의 價格變動을 構成比에 依하여 總合하는 것이다。

以上의 兩種倍率에 있어서 事實上 實態價格에 依한 物價倍率이 多少 未備點이 있으나 国富評價를 위한 價格變動의 指標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實態價格을 体系적으로 把握할 수 없는 경우에는 原價倍率을 作成하여 實態倍率을 補完하고 있다。 여기서 原價倍率이 内包하는 價格變動指標로서의 問題點을 言及하면

- (1) 原價構成의 分析에서 各年次別로 繼續하여 同 構成比를 把握함이 困難 하며
- (2) 原材料의 使用額, 労賃의 支給額等은 把握 可能하나 財產自身의 需給關係로 因하여 發生하는 利潤率의 變動把握이 어렵고
- (3) 経費 一般管理費와 物價變動과의 關係를 把握함이 어려운 点等으로 因하여 原價倍率은 原材料와 労賃間의 움직임을 總合함에 그치고 資產自身의 價格變動과 合致된다고는 볼 수 없

는 것이다. 物価倍率에 関한 理解를 돋도록 数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現在 t 期에 取得한 資產価値 및 一定单位當의 価格을 各各 v_t, p_t 라고 하고 統一된 評価時點에 있어서의 同一種類의 資產의 衛值 및 単位當 価格을 v_o, p_o 라고 한다면 이들 関係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_o = \frac{p_o}{p_t} \cdot v_t \dots\dots\dots\dots (1)$$

(1) 式에서 p_o/p_t 가 物価倍率이며 이를 각各의 期間에 결쳐서 製成한 것이 物価倍率表이다.

그리고 (1) 式에서 $\frac{p_o}{p_t} \cdot v_t$ 가 再取得価格이 된다.

物価倍率作成에 있어서 가장 所望스런 資料로서는 既存의 価格 資料가 어느程度 利用될 것이냐에 対한豫備検討인 것이다. 즉 統計作成機關別 品目乃至는 部門別 또는 原材料 및 労賃에 関한 価格資料等에서 어느 統計系列를 어느程度 利用하는가? 라는 問題 解決이 先行条件으로 处理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価格資料가 韓國銀行調查第1部의 全國都壳物価指數를 大宗으로 其他의 資料는 거의 없는 実情에서는 本物価倍率을 作成하는 作業이 특히 困難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韓國銀行의 資料가 1) 그다지 길지 않는 時系列인 点과 2) 部門別接近이 아직도 試圖되지 못한데 基因된 総合指數的性格을 지닌 点等을勘案할 때 더 많은 努力과 研究가 切実히 要請되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 特히

日本의 경우를 보더라도 資料不足이란 隘路에도 不拘하고 物価倍率作成을 完了 国富評価의 基本指標로 利用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以下에서는 向後의 物価倍率作成에 參考가 되도록 日本의 1955 年度 国富調査를 위한 物価倍率 作成作業에서 整理된 資料處理 利用等의 内容을 紹介하고자 한다.

日本의 物価倍率

1. 実態価格資料

우선 対象資産의 実態価格에 関한 重要資料(表1)를 보고 다음에 資産別利用資料를 본다.

가. 建物

1) 実態価格倍率

勸銀의 木造建築費指數가 主로 利用되었는데 이 指數는 全国都府県庁所在地의 新築家屋의 時価를 算定한 것이므로 建物自身의 価格變動을 表示하고 있다.

2) 原価倍率

全般的으로 새로이 作成하였다. 그 理由는 既存의 資料가 建物을 構造別로 指數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技術進歩에

(表1)

資產項目別	資料名	調査機関名	調査機間	性質	率	率	上	上	率	率	倍	倍	倍	倍	價
建物	全国平均木造建築費指數 東京木造建築費指數 主要都市標準建築費指數 建築費指數 鐵筋モルタル - 三建設建築費指數 建築動態統計에 의한建築費指數 建築平均物価指數	勸業銀行 建築学会建築委員會 建設公業詳當研究會 谷勸業建築會 建設水清會	1938年以後 1946年以後 1958年～1952年 1938年以後 1946年以後 1914年以後	同 同 同 同 同 同	美原 原 原 原 原 原	原 原 原 原 原 原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率	率	上	上	上	上	
機械器具	機械與器具外価格修正倍率表 電氣計測器価格指數 化學機械產業機械外価格 主要紡織機械価格推移	G.H.Q 通產省機械局 產業機械工業會 日本纖維機械工業會	1900年～1950年 1926年～1949年 1930年～1949年 1934年～1949年	同 同 同 同	美 美 美 同	原 原 原 態	倍 倍 倍 價	上 上 上 上	率	率	上	上	上	上	
車輛運搬具	鐵道車輛新製屯当単価 自動車國產車価格指數	國有鐵道工作局 通產省重工業局	1921年以後 1950年以後	同 同	同 同	同 同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船舶	大型引け貨物船舶指數 鋼造船価格調書 計劃造船 木造船建造価格	運輸省船舶局 同 同 運輸省海運調整部	1915年以後 1931年～1950年 第1次～9次 1950年以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依한 建物構造가 多種化되고 있는 実情에 비추어 既存의 資料는 原価構成比率의 決定에 대한 參考資料로서만 利用되었다.

나. 機械 및 装置

위表(表1)에서 본바와 같이 協會에서 作成한 資料가 있으며 日銀의 都壳物価中에서도 若干의 資料가 있지만 系列이 不連續이며 包括範囲가 좁고 또 採択한 品目이 極히 部分的인 点等에 비추어 倍率을 새로이 作成하였다.

다. 船舶

鋼造船에 있어서는 運輸省船舶局의 鋼造船価格 및 大型di-셀 貨物船舶指數가 使用되었다. 그러나 木造船에 있어서는 既存 資料의 未備点을 認定 새로운 原価指數를 作成했다.

라. 車輛 運搬具

鐵道車輛에 있어서는 國鐵工作局으로 부터 車種別 型式別 斤當單位를 求得하여 利用하였다. 다음으로 自動車에 있어서는 既存資料를 無視하고 自動車価格의 照会調査를 實施하여 作成하였다.

마. 其他

그밖의 資產에 대하여는 全部 原価倍率을 作成하였다.

2. 原材料 및 労賃의 價格 資料

実態倍率의 利用이 困難한 項目에 對하여는 原價倍率을 作成하였다.

가. 原材料의 價格 資料

下表(表2)에서 보는 諸資料가 利用되었다. 價格 資料의 性質로서는 都壳物価와 小壳物価가 있는데 原價倍率은 都壳物価를 中心으로 作成되었다. 그런데 統制經濟下에서의 實際價格의 變動이 下表의 價格 資料에 適確히 表示되었는지의 与否가 問題로 提起된다. 日銀의 都壳物価가 1935年以後의 實際價格變動을 表示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對하여서는 同物価系列과 對替可能한 資料가 必要하게 되어 万一 對替系列이 없을 때는 다른 適正資料의 利用이 不可避한 것이다. 多幸이도 日本에서 는 鋼材를 包含한 建築材料의 價格變動에 關하여서는 清水建設 株式会社調査의 資料에 依하여 實際價格의 움직임을 把握할 수 있었다.

(表2)

資料名	調査機関	調査期間
東京物価品別表	貨幣制度調査会	1873年～1893年
東京重要品卸売品別表	日本銀行	1887年～1910年
東京物価品別高低累年表	大蔵省	1892年～1923年
東京卸売物価	日本銀行	1900年～1954年
卸売物価統計表	商工省(商工会議所)	1900年～1943年
東京市場価格	清水建設株式会社	1914年～1954年

4. 労賃資料

勞賃變動把握을 위한 資料로서는 明治元年(1868年)以後 繼
統的인 統計調査가 実施되어 왔다. 別表(表3)에 揭記된 9
개의 資料가 労賃資料로 利用되었는데 大正13年(1924年)까
지는 職種別調査였기 때문에 職種別을 葉種別로 옮기기 위한
手續이 一斷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別表中の 資料를 利用함
으로써 労賃의 變動把握이 容易하게 이루어졌다.

3. 個別物価倍率의 作成

個別物価倍率의 作成单位는 耐用年数表에 準拠하여 決定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作成方法에 関하여 日本이 1955年 国富調
査를 위하여 作成한 個別価格倍率作成方法을 옮겨놓고자 한다.

資料名	調査機関	調査期間	備考
明治初期東京職業別賃金表	東京商工会議所議事要件録	1868年～1874年	職種別賃金
東京職業別平均賃金	貨幣制度調査会	1873年～1893年	同上
東京市内諸職賃金高低	省	1892年～1917年	同上
東京業別平均賃金	商工省（商工会議所）	1900年～1943年	大正14年(1925年)以後産業別
産業別一人一日平均賃金	内閣統計局	1925年～1946年	産業別賃金
産業別現金給与額	労働省	1947年～1954年	同上
労動統計	内閣統計局	1927年～1939年	各種資料의 集録
建設工業賃金	株式会社	1947年～1954年	職業別賃金
労動省告示基準賃金	清水建設基準局	1948年～1953年	同上

가. 建物

建物에 있어서는 構造別分類에 依하여 鉄筋콘크리 - 트造, 鉄骨造, 煉瓦造, 石造, 木造等 6個種의 物価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경우 鉄骨, 鉄筋콘크리 - 트造는 鉄筋콘크리 - 트造에 그 리고 木造, 몰탈造 혹은 土造等은 木造에 包含시켜 생각하였다.

1) 鉄筋콘크리 - 트造

原価倍率作成上 어떤 建物을 対象標準建物로 보느냐는 것은 어려운 問題다. 이를 위하여 各種建物中에서 中位程度의 建築費原価構成比率을 比較 檢討하여 東京都主税局의 1954年度 再現建築費種別基準表에 依拠 各種鉄筋콘크리 - 트建物의 中位程度의 原価構成을 보면 다음表(表4)와 같다.

이들 各種建物은 種類에 따라 附屬設備의 規模에 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設備에 準拠하여 생각해야 하므로 이들을 除外하고 基礎工事와 主体工事が 되는 軸組架構造의 構成을 보면 다음表(表5)와 같다. 이같이 基礎工事 主体工事が 차지하는 比率은 住宅 아파 - 트等이 낮은데 反하여 工場, 倉庫等과 같이 内部構造가 簡易한 것이 높으며 事務所建物이 中間에 位置하고 있다.

또한 建築의 움직임을 主導하는 것은 역시 事務所建物이라 생각되므로 個別物価倍率作成의 標準建物로서는 事務所建物을 択하기로 하였다.

(表4)

工事別	住宅(2級)	事務所(2級)	事務所(3級)	工場(3級)	倉庫(2級)	劇場(3級)
設計管理手続費	0.94%	1.25%	1.11%	1.02%	0.75%	1.12%
設工事	4.70	4.68	4.30	5.28	3.96	4.27
工工事	5.37	7.02	7.37	7.83	9.23	7.64
扳基礎						
軸組架構費	15.83	12.27	16.91	23.42	22.21	28.80
鋼骨及び筋工事	21.43	21.79	19.63	27.17	30.06	15.68
運賃費	2.69	21.18	1.84	4.09	3.58	2.25
防内	水工事	2.01	1.40	1.11	1.23	1.70
外	装工事	19.40	15.35	10.23	7.13	6.20
	工工事	1.72	0.75	2.28	0.73	2.09
鑄金物	1.07	0.94	1.18	1.29	1.47	1.35
建工具	8.59	7.02	7.05	8.29	4.75	4.57
硝子	0.93	0.46	0.36	0.72	0.19	0.36
建物附屬設備	14.37	22.63	24.84	8.85	10.74	19.66
附屬及び工事費	0.95	2.25	1.78	2.94	3.09	2.64
總工事費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表5)

工事別	住宅	아파-트	事務所	工場	倉庫	劇場
基礎工事	6.27%	9.07%	9.82%	8.59%	10.34%	9.51%
鉄骨 및 鉄筋工事	18.49	15.86	22.50	25.69	24.88	35.82
콘크리-트工事	25.03	28.16	26.12	29.81	33.68	19.52
附属設備를除한工事費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原価構成比率의 決定)

鉄筋콘크리-트의 倍率은 原価倍率을 採用하였으며 計算方法으로는 라스파이레스式 그리고 倍率計算을 위한 加重은 全國建設業会와 其他 2個 研究会의 共同研究인 「1952年 6月現在의 標準建築費의 構成費目 및 Weight」를 利用하였다. 이 加重表에서는 各種 使用材料나 勞務費의 内訳이相當히 細分化되어 있으나 長期的인 價格資料의 利用可能範囲를 생각하여 同種것을 集合시켰다. 그 構成費目別加重值는 다음표(表6)와 같다.

(倍率의 算定)

倍率의 算定은 貨幣制度調査会等의 原材料價格資料와 職種別勞賃資料로서 個別價格指數를 作成하여 表5의 Weight로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物價倍率을 算定하였다.

(表6)

構成費用	構成比率
砂，砂利	74.6
セ멘트	139.0
石材	29.0
瓦，スレート	61.5
鐵材	213.0
亜鉛鐵板	18.7
木板	128.7
硝子	17.4
塗料	16.1
材料計	698.0
大工官	40.6
在人夫	40.3
勞賃計	221.1
全工事費	302.0
	1,000.0

2) 鐵骨造, 煉瓦造, 石造, 木構造

이들에 관한 資料는 利用可能分이 없어 原価倍率作成을 위하여 構成比率을 算定하였다.

(表7)

工事費別	鉄骨造	煉瓦造	埠尋工造	石造
	工事建2級	藏建2級	住宅2級	藏2級
砂，砂利	3.9	20.1	56.3	27.7
セメント	8.9	170.3	144.2	76.0
煉瓦		272.6		
埠尋工			156.7	
石灰		11.7	13.7	18.3
石材				284.3
瓦，スレート	88.1	49.2	27.2	57.3
鉄材	513.7	99.1	138.6	94.8
亜鉛鐵板	9.3	4.0		4.8
木材	46.9	117.5	230.0	91.7
硝子	18.3		12.4	
塗料	14.4		4.7	
材料計	703.1	744.5	783.8	796.6
大工	9.7	25.3	47.4	26.6
在官		24.9	51.2	58.1
人夫	286.9	205.3	117.6	118.7
労賃計	296.6	255.5	216.2	203.4
全工事費	1,000.0	1,000.0	1,000.0	1,000.0

(原価構成比率의 決定)

이들 建物들에 对하여는 既存 Weight 表가 없음으로 東京都主 稅局의 再現建築費鑑別基準表의 工事費別構成表를 檢討 하여 標準建物을 選定하였다. 다시 材料使用率을 가지고 1954年 8月現在의 時価로 換算하여 다음과 같이 原材料 労賃別構成比率(表7)을 決定하였다.

(倍率의 算出)

鉄筋콘크리트와 같은 方法으로 算出하였는데 算出年次는 建物의 経過年数를 參考하여 決定하였다.

3) 木造

木造建物에 있어서는 実態倍率로써 勸銀의 木造建築費指數가 1938年以後 作成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補完하는 方法을 강구하였다. 原価倍率로서는 谷博士의 建築費指數가 1900年以後 作成되어 있다. 谷博士의 指數는 建築学会, 建設工業研究會 共同研究의 Weight를 使用하여 1) 原材料에 있어서는 日銀都壳物価 2) 労賃에 있어서는 商工省資料를 利用하였다. 그러나 補完指數로서 이들 指數를 採択한다면 1938年以前 까지 遷及하게 되는데前述한 日銀指數의 弱點이 있기 때문에 谷博士의 指數를 (1900年까지는) 採択하되 1900年以前은 谷博士의 Weight로서 1873年까지 算定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음表(表8)와 같은 原価構成比率이 나왔다.

(表8)

費 目	構成比率
砂，砂利	26%
木 材	48.8
釘	1.1
亞 鉛 鍍 板	1.4
板 유 리	1.6
疊 表	1.8
瓦	8.1
大 工	28.7
在 官	6.0
合 計	1,000

4. 構築物

構築物의 耐用年数分類로서는 鐵筋콘크리트造, 콘크리트造, 石造, 煉瓦造, 土造, 金屬造, 木造等의 構造別分類와 함께 特別히 鐵道軌道用, 遊園地用, 鋪裝道路等 用途別 分類도併用되었다. 物価倍率作成을 위한 分類도 耐用年数表의 分類에 依하였으며 物価倍率作成單位로서는 鐵道軌道用 鋪裝道路用에 関한限 個別物価倍率을 作成했으나 그外는 構造別分類에 依하였다.

構築物은 施行地의 地質等에 左右되어 基礎工事費等의 上・下限이 크므로 標準原価構成比率乃至 標準工事費의 算定은 困難하다. 그러나 構造別物価倍率의 作成에서는 建物에 準하여 倍

(表9)

鉄道新設 1 杆当原単位構成

(丙線中間線) 1929年3月

費	目	単位	使用量
原 材 料	普通鋼材	屯	0
	軌 条	"	80
	鐵 柄	"	23
	其 他	"	16
	計	"	119
	銅	"	0.3
	鐵 錫	塊	2.50
	木 材	石	1,310
	枕 木	丁	1,800
	火 菓	箱	120
勞 務 費	燃 料	立	2,000
	モ ビ ル	"	200
	車 軸	"	300
	石 炭	屯	13
勞 務 費	勞 務 者	人	20,700

率을 作成 하였다。

1) 鉄道用軌道用

鉄道用軌道用構築物에 있어서는 国有鐵道建設部에 照会하여

新線 1 杆当에 对한 建設原单位構成을 以어 原価構成比率을 作成하여 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原価单位構成으로부터 原価構成을 算出하면 다음表(表10)와 같다.

이 原価構成을 가지고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原価倍率을 作成하였다. 倍率作成의 年次로는 地方鐵道로서 現存하는 最古의 것이 1881年7月5日 開業한 南海電鐵阪堺線이기 때문에 1881年度까지 作成年次를 邊及하였다.

(表10)

鐵道新設 1 杆當原價構成

(丙線中間線)

費	目	原 價	構 成
原 材 料	普通鋼材	5,125 千円	21.9 %
	銅	1.05	0.5
	セメント	2,150	9.2
	木材	6,328	27.1
	火薬	600	2.6
	石油	61	0.2
	石炭	104	0.4
勞 務 費	勞 賃	8,902	38.1
工 事 費 計		23,375	100.0

(構造別로 分類된 構築物)

鐵筋콘크리 - 트造, 콘크리 - 트造, 煉瓦造, 土造, 金屬造, 木造의 構造別 分類에 依한 構築物의 物価倍率에 있어서는 實態価格倍率의 採択이 困難함으로 原価倍率을 作成하였다.

構築物은 同一한 構造를 가진 경우에서도 施設의 所在場所에 따를 与件 例컨데 地盤의 強弱等에 따라 같은 煉瓦造의 턴넬이지만 工事費의 構成內容은 현저하게 差가 난다. 이 点 建物과 比較하여 構成內容의 變動이 크다. 그 理由로는 最大變動要素는 鐵筋콘크리 - 트造 혹은 煉瓦造等의 上層段階工事보다도 基礎工事에 있다. 콘크리 - 트造, 煉瓦造, 石造等 工事는 建築工事에서는 같은 方法으로 原価構成比率을 算出하여도 無妨하다. 따라서 變動이 큰 基礎工事에 있어서는 完成工事의 20% 水準의 費用이 드는 것으로 計算키로 하였다. 이 같은 方法으로 算定한 各種構造의 構築物의 原価構成比率은 다음表(表11)와 같다.

이 原価構成比率을 가지고 LasPeyres 算式에 依해 原価倍率을 作成하였다. 作成年次로서는 施設의 經過年數를 보아 決定할 수 밖에 없으나 一但 原材料價格資料가 있는 分에 限하여 算出하였다. 且 耐用年数表에서 庭園은 土造建築物로 보고 处理하기로 하였다.

2) 鋪裝道路

鋪裝道路에 있어서는 日本道路建設業協會 価格調査委員會作成의 各種 鋪裝道路工事価格表(東京地方標準)에 依하여 原価構成比率을 作成하였다. 同価格表에 依하여 鋪裝道路의 中間物로서 아스팔트콘크리 - 트道를 採択하여 그 100 平方杆當의 原価構成

과 基礎工事의 原価構成과를 合算하여 原価構成比率을 作成하였다。 이 原価構成比率을 가지고 LasPeyres 算式에 依하여 物価倍率을 作成하였다。

(表 11)

建築物, 構造物의 原価構成比率

1954年8月現在

費　目	鉄筋콘크리트造	콘크리ット造	煉瓦造	石　造	土　造	鉄骨造 (金屬造)	木　造
材　料							
鋼　材	29.8%	%	2.0%	2.9%	%	64.7%	2.3%
セメント	33.0	55.0	17.0	9.1		7.7	
砂, 砂利	14.4	24.0	1.1	0.6		3.3	
煉　瓦			44.1				
石　材				43.2			
燃　料					0.1		
木　材							52.3
勞　賃	21.3	18.7	35.8	44.2	97.9	24.3	45.4
器具損料	1.1	1.6	2.0				
動　力　費	0.4	0.7					
工事費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12)

鋪裝工事代表工種原価構成比較

費　　目	아스 팔트 乳劑鋪裝	아스팔트 콘크리트 鋪裝	콘크리트 鋪裝	콘크리트 鋪裝
材　料　費	53.8 %	48.0 %	50.3 %	54.8 %
役　務　費	9.0	14.4	13.9	14.7
勞　務　費	11.5	9.8	8.3	6.4
諸　經　費	5.7	9.3	9.3	6.2
雜　　費	3.4	1.8	1.5	1.3
計	83.4	83.3	83.3	83.4
營　業　費	16.6	16.7	16.7	16.6
合　　計	100.0	100.0	100.0	100.0

아스 팔트 콘크리트鋪裝에 있어서의 原価構成比率을 算定했으나
採択品目이 너무 多種細細하므로 項目整理上 包括하였다.

다. 其他 構築物

耐用年数表에는 其他 構築物로서는 그 内訳에 木造 및 其他
로 区分되어 있다. 木造에 있어서는 木造構築物의 物価倍率을
準用하기로 하고 其他에 있어서는 構造別区分이 알 수 있는
것은 각각 그 構造의 物価倍率을 適用하였다. 그러나 構造別
区分을 모르는 것도 實查로 判明될 수 있을 것이 豫想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物価倍率의 作成이 必要해진다.

라. 機械 및 装置

機械 및 装置에 있어서는 物価倍率作成单位로서 機械와 装置로 分類하였다. 機械에 있어서는 器具運搬具, 小舟艇等 同質의 인 것으로서 別個의 物価倍率을 作成하기가 困難한 것을 一括하여 機械器具로서 物価倍率을 作成했다. 装置에 있어서는 耐用年數表를 檢討한 結果 温室, 貯藏設備等 建物에 準하는 것, 仕込槽, 索道設備等 特別한 構築物에 準하는 것, 硫安製造設備等 機械와 같이 생각되어 지는 것 等이 混在되어 있음으로 物価倍率의 適用에 있어서는 機械와 같이 생각되어진 것을 機械器具와 包括하여 取扱하였다.

機械器具의 物価倍率로는 앞서 본 既存의 価格資料는 어디까지나 部分的 資料로서 調査年次가 1950年以前에 限定되어 있어 利用이 不可하다. 또한 實態価格調査의 対象으로 看做되는 機械는 每年 繼續하여 製造되는 機械에 限하기 때문에 小規模인 것 例를 들면 汎用모-타, 農機具 또는 紡績機械等 特殊機械에 限定된다. 機械器具의 物価倍率로서는 實態倍率을 作成하기는 困難하였다. 그러나 原価倍率을 作成할 경우 代表機種의 选定도 容易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機械器具의 原価構成比率을 算定하는 대신 機械器具 工業의 原価構成比率을 算定했다.

(原価構成比率의 算出)

機械의 物価倍率算定을 위한 原価構成比率를 決定하기 위하여 機械器具工業의 投入額으로부터 原価構成比率을 유도하여 그것을 가지고

產出物의 原価構成比率을 생각하여 工業統計表 및 工場統計表를 利用했다. 1955年以前의 工場統計表에서는 燃料의 使用高 뿐으로原材料의 使用額은 求할 수 없으므로 1929年以後의 工場統計表 및 工業統計表를 利用하였다. 機械器具工業으로부터 電球, 容器, 造船, 鉄道車輛, 自動車等을 除外한 部分의 出荷額(生產額) 原料費, 動力費, 労賃 그밖의 것의 比率은 다음表(表13)와 같다.

(倍率의 算出方法)

倍率은 戰前基準 및 戰後基準의 두개의 ラス파이 レス算式에 依한 倍率을 Link 係數로 接続했다. 戰前後의 兩倍率의 作成에서 原材料費 内容을 細分하기는 困難하므로 工業統計表에 収錄된 項目에 依했다. 이 경우 原材料의 價格指數를 어떻게 하여 決定하느냐? 가 問題가 된다. 1948年以後의 動態統計調查에 依하면 主要原材料로서는 各種 機械와 더불어 普通鋼 혹은 特殊鋼이 있어 鐵鋼이 占하는 比率이 壓倒的으로 크므로 鐵鋼의 價格變動을 가지고 原材料의 價格變動을 代表도록 했다. 戰後指數에서는 燃料費가 原材料費 가운데 包含되므로 꼭같이 動態統計調查結果에 의하여 区分하여 作成했다.

마. 船舶

1) 鋼造船

鋼造船에 있어서는 運輸省船舶局調査에 의한 大型 디-젤貨物船平均船價와 中速貨物船船價推移表를 利用하여 1915年以後의

(表 13)

工業統計表에 의한 機械器具工業의 原価構成比率

年次	出荷額	原料使用額	動力消費額	労賃	其他費用 及利潤
1929 年	100%	39.1%	6.0%	16.4%	38.0%
1930	100	41.9	6.5	18.0	33.5
1931	100	38.0	5.1	16.5	40.4
1932	100	38.5	4.3	18.8	38.7
1933	100	41.2	4.1	16.5	38.2
1934	100	41.3	4.3	16.1	38.3
1935	100	42.4	3.5	14.8	39.3
1936	100	36.7	2.9	13.1	47.3
1937	100	44.4	2.2	11.2	42.2
1938	100	36.7	2.8	9.7	50.8
1939	-	-	-	-	-
1940	-	-	-	-	-
1941	100	37.1	2.1	13.0	47.8
1942	100	30.8	2.0	9.4	57.8
1943	資料 없음				
1944	同上				
1945	-	-	-	-	-
1946	100	36.4	3.2	29.8	30.7
1947	100	37.4	3.8	29.3	29.4
1948	100	52.4		26.4	21.2
1949	100	54.4		29.8	15.9
1950	100	51.2		33.8	15.1
1951	100	62.0		18.9	19.1
1952	100	59.5		19.5	21.0

実態倍率을 作成하기로 했으나 1914年以前에 있어서는 機械器具의 倍率로서 補完하였다. 實態倍率作成을 위해 利用된屯当 船価는 다음 表(表14,15)와 같다.

2) 木造船

木造船에 있어서는 運輸省海運局의 木造船船価가 利用不可能 하므로 原価倍率을 作成했다.

(表14)

大型니-젤貨物船屯当 平均船価

年次	平均船価 \$/GT	年次	平均船価 \$/GT	年次	平均船価 \$/GT
1915年	180	1927年	225	1939年	600
1916	260	1928	-	1940	635
1917	600	1929	220	1941	675
1918	1,050	1930	200	1942	750
1919	450	1931	185	1943	830
1920	450	1932	185	1944	904
1921	130	1933	215	1945	920
1922	200	1934	295	1946	7,120
1923	180	1935	320	1947	34,500
1924	225	1936	340	1948. 7	48,000
1925	225	1937	475	1948. 11	79,000
1926	225	1938	575		

(表 15)

中速貨物船屯当船価推移表 7,000 G/T 5,000 HP 디-젤

年 月	平 均 船 価 ¥/G T
1949年 8月	72,400
" 年 9 "	76,200
1950年 1 "	80,700
" 年 10 "	87,000
1951年 1 "	126,000
" 年 10 "	154,000
1952年 4 "	156,000
" 年 12 "	166,000
1953年 2 "	150,000
" 年 8 "	134,000

(原価構成比率의 決定)

木造船의 原価構成에서는 機帆船, 漁船에 대한 平均의 原材料工員數, 経費의 比率 等으로부터 1954年 8月現在의 原材料의 価格, 労賃을 木造船会社等에 照会하여 原価構成比率을 決定하였다.
 木船의 原单価構成等에 依하여 算出한 原单位構成比率은 다음(表 16)과 같다. 이 原单位構成으로부터 다음 表와 같은 原価構成比率이 算出된다. (表 17)

(表16)

木造船의 原単位構成

費　　目	機帆船總屯当	漁船總屯当
(1) 木　　材	10 石	14 ~ 16 石
(2) 製　　材　　費	木材費의 28 %	木材費의 28 %
(3) 釘　　類	50 kg	70 kg
(4) 金物類(鋼板等)	50 kg	80 kg
(5) 工員數　　造船工 雜工	(20 ~ 25) 7 工	25 ~ 35 11 工
(6) 築装器具備品	(1) + (2) + (3) + (4) + (5) × (31.8 % ~ 37.8 %)	
(7) 間　　接　　費	(1) + (2) + (3) + (4) + (5) × (21.2 % ~ 25.2 %)	
(8) 一　　般　　管　理　費	(1) + (2) + (3) + (4) + (5) + (6) + (7) × (20 % ~ 23 %)	
(9) 利　　益	(1) + (2) + (3) + (4) + (5) + (6) + (7) + (8) × 1.00 %	

(表17)

費　　目		機帆船總屯当		漁船總屯当 ^b	
材 料	木　　材	33,280 円	54.7 %	43,264 円	52.4 %
	釘　　類	4,100	6.7	5,740	6.9
	鋼　　材	4,000	6.6	6,400	7.7
	造　　船　工	16,500	27.1	22,500	27.2
	雜　　工	3,010	4.9	4,730	5.8
直　接　費　計		60,890	100.0	82,634	100.0

(物価倍率의 算出)

以上의 構成比率을 가지고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算出하였다.

이 경우 倍率作成의 年次로서는 機帆船에 있어서는 50年程度 使用되는 것도 있지만 漁船은 大体 7年에 更新되어 길어도 15年 使用될 狀態이므로 倍率의 作成에 있어서도 機帆船 50年 漁船 15年의 期間으로 算出하였다.

3) 小舟艇

渡船, 보-트, 모타보-트等의 小舟艇에 있어서는 実態価格의 把握도 容易치 않아 原価構成에 있어서도 明確한 資料가 없으며 法人企業의 処理에 있어서도 船舶으로서가 아니라 備品으로서 処理되는 것이 적지않다. 따라서 個別倍率을 作成하지 않고 備品에 準하여 取扱했다.

四. 車輛運搬具

1) 鉄道車輛

鐵道車輛에 있어서는 国有鐵道工作局調查의 1910年 新製車輛専当単価가 있는데 이에 依하여 実態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資料에 依하면 車種別로는 蒸氣機関車, 客車, 電動車, 附隨車, 貨車의 6種의 価格變動을 把握할 수 있으므로 이를 総合하여 鉄道車輛으로서 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倍率의 適用対象은 法人企業이 中心이 됨으로 総合에서 는 1952年 3月末의 地方鐵道 및 軌道의 車種別保有車輛數와 1954年度의 各車種別 1輛専當 新製価格等에 依하여 車種

別分布価格을 決定하여 이 比率에 依拠 総合했다. 이려한
方法에 따라 算出한 車種別分布比率은 다음과 같다. (表18)
이 分布比率을 Weight로 하여 各車種別單価의 個別指數를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1921年까지 實態倍率을 作成하였다.
1920年以前에 있어서는 機械器具를 使用하여 補完하였다.

(表18)

車種別	分布輛數	一輛當單價	分布額	分布比率
蒸氣機関車	輛 433	千円 26,000	百万円 11,258	% 4.6
電氣機関車	246	64,200	15,793	6.4
客車	1,152	9,541	10,991	4.4
電動車	8,280	21,800	180,504	73.0
附隨車	1,389	9,541	13,252	5.4
貨車	10,625	1,450	15,406	6.2
計	22,125	13,750	247,204	100.0

2) 自動車

自動車에 있어서는 通產省의 國產車價格指數가 1950年以後
作成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不充分하므로 自動車會社나 取
扱會社 等에 照会하여 1934年以後의 價格變動을 調査하여
이에 依하여 實態倍率을 作成하였다. 各車種의 個別價格指數
를 總合하는 方法으로는 鉄道車輛과 함께 分布額의 比率에

依하였다. 그러나 1953年 3月末現在의 車種別分布輛數와 1954年 8月現在의 1台当 平価新車価格等에 依하여 車種別分布価額을 算定했다. 이 方法에 依하여 算定되어진 分布比率은 다음(表19)과 같다.

이 分布比率을 가지고 각 車種의 個別価格指數를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1934年까지 物価倍率을 算出했다.

(表19)

車種別	分布輛數	一輛當單價	分布価額	分布比率
貨物普通車	142,356	千원 912	百万원 129,814	% 30.8
貨物小型四輪	50,428	750	37,820	9.0
貨物小型三輪	223,249	318	71,028	16.9
乘合車	25,095	849	21,318	5.1
乗用普通車	60,369	1,745	105,315	25.0
乗用小型四輪車	29,594	648	19,174	4.6
乗用小型三、二輪車	37,486	269	10,071	2.4
軽自動車	168,189	155	20,069	6.2
合計			414,609	100.0

3) 其他 車輛運搬具

이 中에 包含되는 것은 大体로 機械器具工業의 所產에 屬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機械器具의 物価倍率을 適用하였다.

사. 器具 및 備品

器具, 備品에 属하는 것은 그 個個의 単価도 高고 耐用年数도 짧은 것이 많아 雜品的性格을 지녔기 때문에 그 標準的인 것을 選定하기가 困難하다. 企業會計上의 处理도 消耗品과 境界를 짓기가 困難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個別物価倍率의 作成은 困難하나 그 取扱上 器具와 備品으로 分類하였다.

1) 器具

器具에는 工具 器械가 있다. 이들은 大体로 機械器具工業의 所產으로 機械와 合하여 機械器具의 物価倍率로서 作成하였다.

2) 備品

備品은 什品 容器 漁網 裝備品等 그 種類가 極히 많아 個別物価倍率의 作成은 到底히 不可能하여 一般物価를 가지고 価額修正을 하는 것 以外는 方法이 없다. 一般物価變動의 測定에는 普通日銀都壳物価指數가 採択되어 있음으로 이에 依拠하였다. 日銀의 都壳物価도 戰時中の 實際物価를 反映하지 못한 弱点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것은 別途方法이 없었다.

第 2 節 資產分類 및 耐用年数表

I. 資產의 分類基準

가. 資產의 分類原則

本表에 있는 資產分類는 原則的으로 1968年 1月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現行 法人税法 施行規則別表인 「固定資產耐用年
数表」에 準拠하였다. 따라서 配列, 区分등에 있어서는 稅法耐
用年数表의 그들과多少 다른 点이 있으나 줄거리는 거의 同
一하다. 또한 資產別로 表示되어 있는 耐用年数도 稅法上의
耐用年数를 그대로 採用하고 있다.

4. 資產의 分類方法

資產은 固定資產과 流動資產으로 2大分하고, 固定資產은 이
를 다시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仮計定, 動植物로 8区分하였다. 流動
資產은 原材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으로
4区分하였다. 이들의 分類方法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1. 固定資產

11. 建 物

111. 住 宅

112. 非住宅

113. 建物附屬設備

12. 構築物

121. 交通施設

122. 發電 및 送配電施設

123. 水利 및 治水施設

124. 其他施設

13. 機械 및 裝置

14. 船舶

141. 鋼 船

142. 木 船

143. 其他船舶

15. 車輛 및 運搬具

151. 軌道車輛

152. 自動車

153. 航空機

154. 其他車輛 運搬具

16. 工具・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植物

2. 流動資產

21. 在庫資產

211. 原材料

212. 半製品 및 在工品

213. 完製品 및 商品

214. 貯蔵品

다. 資產의 集計單位

이번 国富統計調査에 있어서는 上記한 바 있는 有形固定資產

과 流動資產 中의 在庫資產만을 調査한다. 따라서 有形固定資

產 中의 土地, 無形固定資產, 移延計定등은 調査에서 除外되며,
流動資產에 있어서도 現金・預金, 外上壳出金, 有価証券등 在庫資
產 以外의 것은 모두 調査에서 除外된다.

이 資產分類에 있어서는 「1. 固定資產」과 같이 한자리 数字로 시작하는 경우, 이를 大分類項目이라 부르고, 「11. 建物」
과 같이 두 자리인 경우에는 中分類項目, 「111. 住宅」과 같
이 세자리 数字로 시작하는 資產은 이를 小分類項目이라 부른
다.

이 小分類項目 아래에 構造 및 用途, 細目등의 작은 分類가
있다. 例를 「111. 住宅」의 경우에 들면, 構造 및 用途에
따라서 「A. 鐵筋콩크리트造 또는 鐵骨鐵筋콩크리트造」, 「B.
煉瓦, 石造 및 부록造」, 「C. 鐵骨造」등의 7個 区分이 있고,
그 밑에 각각 細目이 있다. (A. 鐵筋콩크리트造 또는 鐵骨鐵
筋콩크리트造의 경우에는 (1)住宅 (2)觀光호텔 (3)旅館등의 細目이 있다)
이번 調査에 있어서는 調査票 (建物의 경우 有形固定資產調査
票 (A))의 株式에 따라서 細目까지를 記入하고 그에 따른
耐用年数를 記載하도록 되어 있다.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有形固定資產調査票 (A)

分類番号 및 名称	構造 및 用途	細 目	耐用年数	68年	67年
(111) 住 宅	鐵筋콩크리트造 또는 鐵骨 鐵筋콩크리트造			千원 5,000	千원 5,000
		觀光호텔	40		

註：68年、67年등의 欄에는 当該年度의 取得価額을 第一上行에 記載하게 되어 있는데, 調査票 記載에 관해서는 調査票裏面의 記入要領을 參照하십시오。

이와 같이 調査票에의 記載는 細目까지 하나 이 細目別로 集計하는 것은 業務量으로 보아 勘當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렇게 하는 実益도 적으므로 集計는 小分類項目 즉 例를 들면 「111. 住宅」을 最小單位로 한다. 따라서 7個의 構造로 되어 있는 모든 住宅이 「111. 住宅」 하나로 集計되고, 住宅, 非住宅, 建物附屬設備 등 세가지 小分類項目을 合한 것이 「11. 建物」이라는 中分類項目으로 集計되며, 다시 建物 以外의 固定資產을 合하여 「1. 固定資產」이 表示되고, 固定資產과 流動資產을 合하여 法人部門의 国富가 集計되는 것이다.

그러나 「13. 機械 및 装置」, 「16. 工具・器具 및 備品」, 「17. 建設假計定」, 「18. 動植物」등은 中分類에서 그치고 小分類項目이 없다. 小分類項目이 없는 경우에도 構造 및 用途, 細目등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区別에 따라 調査票에는 記載를 하되, 集計는 中分類부터 시작한다. 즉 機械 및 装置의 경우에는 機械 및 装置 하나로 計數가 나오는 것이다. 流動資產에 있어서도 最小集計單位는 小分類이다.

2. 耐用年数의 適用方法

固定資産中 機械 및 裝置를 除外한 모든 資產(建物, 構築物, 車輛 및 遷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假計定, 動植物등)을 共通資產이라 부른다. 이러한 資產은 모든 產業에서 共通으로 保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共通資產, 機械 및 裝置, 流動資產의 順으로 耐用年数 適用上의 留意点을 摘記해 둔다.

가. 共通資產

1) 建物

税法耐用年数表에서는 建物과 建物附屬設備의 耐用年数가 따로 定해져 있다. 本表에서는 建物안에 住宅, 非住宅, 建物附屬設備의 区分을 두고 있다. 建物附屬設備가 建物안에 包含되고는 있으나 本表上에서도 別揭하고 있으므로 實質적으로 分類가 달라진 것은 税法上의 建物을 本表上에서 住宅과 非住宅으로 分離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것도 税法上의 建物의 細目에서 「住宅」에 該當하는 것을 끌라내어 別揭한데 不過하다. 耐用年数는 税法上의 耐用年数 그대로이므로 適用上 別로 疑義가 없을 것으로 본다.

2) 構築物

本表에서는 構築物을 交通施設, 發電 및 送配電施設, 水利 및 治水施設, 其他施設로 4 区分하고 있다. 이것이 税法上의 区分과 다른 点은 水利 및 治水施設을 別揭하고 있는 것 程度인데, 이는 税法上의 構築物의 細目 가운데서 이에 該當하는 것을 끌라내어 别揭한데 不過하다. 耐用年数는 모두

税法과同一하다.

3) 船舶

本表에서는 船舶을 鋼船, 木船, 其他船舶으로 3区分하고 있는데, 이 것은 税法上의 分類와 類似하므로 適用上의 疑義는 없을 것이다.

4) 車輛 및 運搬具

本表에서는 이를 軌道車輛, 自動車, 航空機, 其他車輛 및 運搬具로 4区分하고 있는데, 税法上에서 別揭되어 있는 航空機를 車輛 및 運搬具에 包含시켰을 뿐, 餘他는 税法의 分類와 類似하다.

5) 工具・器具 및 備品

税法上에서는 別揭되어 있는 工具와 器具 및 備品을 便宜上 合쳤을 뿐 내용은同一하다.

6) 建設仮計定

資產分類의 하나로서 表示되어 있을 뿐 耐用年数는 없다.

7) 動植物

税法上의 「牛馬・果樹의 使用 또는 収穫可能年数表」와同一하다.

十. 機械 및 装置

機械 및 装置는 税法의 「事業別固定資產」에 該當한다. 共通資產 즉 建物이나 車輛등은 어느 產業에서나 使用되지만 機械나 装置는 事業에 따라 그 내용이 判異하므로 事業에 따라

分類하는 것이 普通이다. 稅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事業別固定資産 耐用年数表(甲)

一連番号	事業別	番号	用途別設備	細目	備考	耐用年数
3	石綿鉱業	0301	石綿鉱業設備		鉱業権을 除外한다	8
11	輸送用機械 製造業	1103	自転車 또는 同部 分品 및 附屬品 製造設備	鍍金設備 其他의 設備		10 12

即 稅法에서는 事業別, 用途別設備別, 細目別로 機械 및 裝置의 耐用年数를 策定하고 있다. 그런데 이 「事業別」은 韓國標準產業分類上의 大, 中, 小, 細分類가 混合되어 있어 (石綿鉱業은 細分類中의 項目에 不過하고, 輸送用機械製造業은 中分類이다) 統一性이 欠如되어 있다. 그리고 一連番号는 本調査에서는 不必要하다. 따라서 本表에서는 「事業別」을 標準產業分類上의 中分類로 統一하고 「一連番号」 대신 中分類番号를 붙이고 「番号」는 削除하였다. 事業의 配列도 標準產業分類를 따랐다. 稅法에서는 全產業의 機械 및 裝置에 대하여 耐用年数를 策定한 것으로 되어 있다. 換言하면 稅法上에 別掲되어 있지 않은 事業의 機械裝置 耐用年数는 事業別固定資產 耐用年数表의 末尾에 있는 「前掲以外의 事業의 設備」의 耐用年数를 適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解釈에는 無理가 있으므로 別掲되어 있지 않은 產業中分類의 耐用年数는 다음과 같이 处

理한다.

14. 監業 : 監業의 主要資產은 監田인데 이것은 土地로 看做하여
除外한다. 其他の 設備는 共通資產에서 該當하는 것을 찾아
그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22. 煙草製造業 : 該當 事業体가 專壳厅 뿐이므로 同序에서 使用
하고 있는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52. 水道・衛生施設서어 비스業 : 水槽, 上水道, 下水道 등은 共通資
產에서 찾아 記載하고, 機械 및 裝置가 있는 경우에는 法人
이 使用하고 있는 耐用年數에 따르고, 法人이 耐用年數를
定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前掲以外의 事業」 「前掲以外의
事業設備」로 看做하여 다음과 같이 处理한다.

主로 金屬製인 것 18年

其他의 것 8年

61~65. 商業(全部) : 都壳業, 小壳業, 金融業, 保險業, 不動產業으
로構成되는 商業에는 機械裝置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있는 경우에는 本表上의 類似한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適用
하며, 類似한 機械裝置를 発見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处理한다.

主로 金屬製인 것 18年

其他의 것 8年

81. 政府서어 비스 :

82. 社會서 어비스業 : } 現業官厅이나 이 分類에 屬하는 法人이
83. 企業서어 비스業 :

保有하는 機械裝置는 本表上의 類似한 事業의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類似한 機械裝置를 発見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处理한다.

主로 金屬製인 것 18年

其他의 것 8年

그리고 機械裝置의 調査票(有形固定資產調査票(B))上의 記載에 있어 留意할 点은 分類番号의 記載方法이다. 本表上에 있는 番号는 前述한 바와 같이 產業中分類 番号인데 이것은 事業의 発見을 돋기 위한 것이고 資產分類番号는 아니다. 따라서 機械 및 裝置의 資產分類番号인 「13」을 記入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機械 및 裝置에 共通되는 番号이므로 便宜上 調査票上에 印刷를 해 두었다.

다. 流動資產

流動資產은 資產分類로서 나와 있을 뿐 耐用年數는 없다.

부

록

제 1 절 정부자산부문 조사개요

1. 조사연혁

정부부문자산조사는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국부통계조사 본부에서 1969년 3월에 마련한 「1968년 국부통계조사지침」은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을 다음과 같이 5개 소유주별로 구분한 다음,

- 가. 정부소유자산
- 나. 법인소유자산
- 다. 개인기업소유자산
- 라. 가계보유자산
- 마. 대외순자산

정부소유자산 및 대외순자산은 한국은행에서 법인소유자산은 한국산업은행, 개인기업소유자산은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가계보유자산은 경제기획원에서 각각 분담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자산부문의 조사를 담당한 한국은행 조사제2부에서는 동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 즉 국부통계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등 실무자적인 면을 연수케 하였으며 정부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및 법규, 자료의 수집방안, 각종 대장의 정비현황 및 작업량을 파악하는 등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1968년 11월에 부산 및 경상남도 일원에 걸친 시험조사를 치루어 조사궤도를 뒤은 후 다음과 같은 조사체계로서 각 조사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1969년 6개월간(3월~8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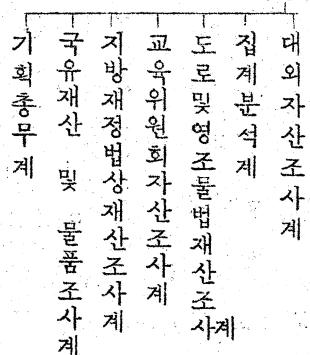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계는 1970년 7월에 완료하였다.

본 조사는 시험조사를 통하여 확정한 13,600여 개처에 달하는 조사대상처를 파악하여 각 대상처의 조사원(공무원)에 대한 강습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정도를 높임과 동시에 작업량이 많은 대상처에 대하여는 별도의 훈련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돋도록 하여 조사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와같이 하여 회수된 조사표는 여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전자계산조직(IBM 360)을 사용하여 결과를 집계하였다. 또한 조사체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자산의 특수성에 쫓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산이 귀속한 법에 따라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자산조사상의 특수점은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관계기관의 많은 협조아래 이루어진 점이다.

조사 제 2 부 장

한국은행 국내각 지점의 기획조사계		각 시·도·군의 통계과와 제 정부관계 각 통계기관
-----------------------	--	--------------------------------

연관분석과



2. 조사 목적

정부자산조사의 목적은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중 일반정부,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등 모든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정부소유자산의 실태를 다각도로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있다.

3. 조사 시점

1968년 12월 31일.

4. 조사 근거

지정통계 제21호의 1

5. 조사 범위

정부자산조사는 「1968년 국부통계조사지침서」에서 정립된 국부의 개념에 해당하는 정부소유의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의 지역적 범위

조사의 대상 객체는 국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는 모든 정부관계 기관으로서 정부자산조사의 실시 지역은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모든 영역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국내의 행정구역과 각 정부기관이 주재하는 외국지역이 조사 실시 지역이었다.

위에서 국내에 소재한다는 뜻은 정부관리기업인 경우 우리나라

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내에 본사, 본부등의 사업활동의
장소적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관리 기업의
구성원인 사원, 중역, 주주등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었더라도 혹은 자본 또는 출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외
국인의 출자에 의하여 운영되더라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 조사 객체의 범위

정부자산조사의 조사 객체는 정부 전기관과 정부관리기업이다.
정부 전기관이란 입법, 사법, 행정의 정부기관을 일컬을 뿐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띤 조합, 연합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기업 즉 업이란 주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정부가 「정부관리기업」으로 정한 한국은행의
39개 기업을 일컫는다. 그런데 40개 국영기업은 소유주체별로
는 정부자산에 속하나 경제활동면에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성격
을 띠고 있다. 이에따라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편의와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자산 조사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
은행이 분담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결과의 공표는 정부자산부문
에서 하기로 하였다.

소유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담당 조
사한 국영기업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은행 담당조사의 국영기업

- ① 한국은행
- ② 한국산업은행
- ③ 중소기업은행

- ④ 국민은행
- ⑤ 한국주택은행
- ⑥ 대한손해재보험공사
- ⑦ 한국조폐공사
- ⑧ 한국증권거래소
- ⑨ 조흥은행
- ⑩ 한국상업은행
- ⑪ 한일은행
- ⑫ 제일은행
- ⑬ 서울은행
- ⑭ 대한석탄공사
- ⑮ 대한석유공사
- ⑯ 한국광업제련공사
- ⑰ 대한조선공사
- ⑱ 한국외환은행
- ⑲ 대한광업진흥공사
- ㉑ 농어촌개발공사
- ㉒ 한국신탁은행
- ㉓ 국제판광공사
- ㉔ 대한주택공사
- ㉕ 대한준설공사
- ㉖ 한국수자원개발공사
- ㉗ 한국투자개발공사

㉗ 해외개발공사

㉘ 한국수산개발공사 등 28개처

2) 한국산업은행 담당조사의 국영기업.

① 한국전력주식회사

②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③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④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⑤ 인천증공업주식회사

⑥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⑦ 충주비료주식회사

⑧ 호남비료주식회사

⑨ 대한염업주식회사

⑩ 대한통운주식회사

⑪ 대한항공

⑫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 12개처.

다. 조사대상자산의 범위

정부자산부문은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자산조사지부의 일반자산처럼 관리체계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각각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이에 의하여 통일되고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이번의 조사에서는 정부의 모든 기관이 소유하는 자산을 관리 구분에 따라 국유재산법소관자산, 물품관리법소관자산, 지방재정법소관자산, 교육위원회소관자산, 영조물법인자산, 도로자산의 여섯개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를 각각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유재산법 소관자산

국유재산법이란 1959년 제정, 공포된 법률 제405호를 일컬는다. 국유재산법 소관자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된 아래에 열거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

나) 선박부료,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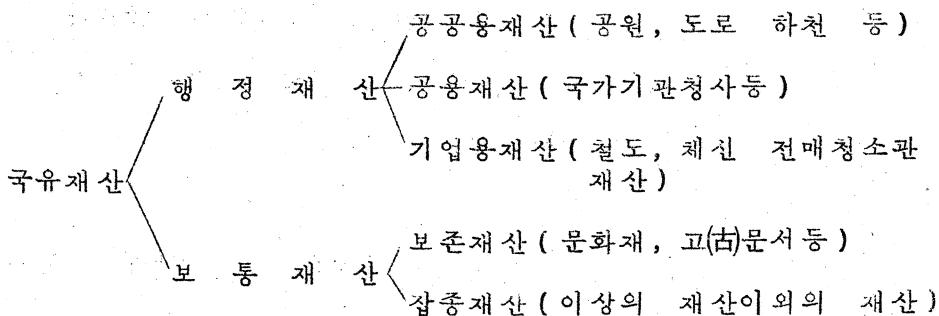
다)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用)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라)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바)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또 국유재산을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소관 재산중에는 이번 국부통계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부문 즉 토지, 자연림, 문화재 및 무형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도로도 국유재산의 일종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에서는 첫째, 국부개념상 국부자산으로 보지 못할 토지와 자연림, 문화재 그리고 무형자산등은 비록 국유재산이지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대종을 이루는 도로는 조사면의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부문으로 조사추계하였기 때문에 국유재산부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세째로, 직접적인 방위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국방자산은 경제적 측면으로 본 기여도나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대상이 된 국유재산법 소관자산을 종목별로 보면 전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및 장치 그리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될 성격의 자산인 건설가계정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좀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분류와 국부통계조사 고유의 비교는 아래와 같으며 동표에서 국유재산법상자산의 조사대상여부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2) 물품관리법 소관자산

물품관리법의 태두리에 포함되는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중 아래에 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일컫는다.

가) 현금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다)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유부동산의 종물)과
동항 제2호 (선박, 부표, 부잔표,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및 제3호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用)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에 적혀 있는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상의 물품속에는 군수품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번의 조사에서는 방위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군수품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품의 일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수품은 통상품과 전비품으로 2 대별하여 군수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위에서 지적한 방위목적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물품은 전비품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대상은 군수품중 전비품을 제외한 통상품만이 선정되었다. 물품중의 군수품은 성격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수관리법의 규제를 받고는 있지만 동법의 규제범위는 거의가 전비품이며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통상품은 거의 전부가 기타의 물품과 같이 물품관리법을 그대로 준용토록 되어 있다.

물품관리법에서는 모든 물품을 중요물품과 중요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물품이라 함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시행령 제43조) 물품의 품목당 단가가 1만원 이상인 것인데 중요물품의 종류 및 설명은 아래와 같다.

중 요 물 품 분 류 표

품 목	설 명
전 기 기 계	전동기, 회전변류기, 변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정류기, 피전기, 축전기, 배전반, 개폐기, 차단기, 전기보이라, 발전용증기판, 발전용증기타-빈, 발전용 수차, 전동공구, 전동기기, 전자석, 전기로, 용

품 목	설 명
통신기계	접기, 전해장치, 기타 전기기계, 전신기계, 전화기기, 교환기기, 반송중계기기, 무선기기, 기타 통신기계.
공작및목공기계	선반, 연반반, 치절반, 평삭반, 형삭반, 견삭반, 거반, 제개기계, 목공기계, 기타 공작 및 목공기계
토목기계	파헤치는 기계, 기초공사기계, 토목용 운반기계, 토목용 기증기, 권상기, 정지기계, 쇄석기계 선별기계, 콩크리트기계, 포장기계, 토목용 공기 압축권 및 펌프, 기타 토목용 기계 및 화차.
시험및측정기계	금속재료 시험기, 정밀측정기, 광학검사기, 전기기계, 전기 측정기, 기타 시험기기 및 측정기기
하역운반기기	기증기 (토목용 제외), 권상기 (토목용 제외), 콘베야 (토목용 제외), 에레베타 (토목용 제외) 삍도 (토목용 제외), 지약기 (토목용 제외), 천차대, 전차대, 기타 하역운반기계.
산업기기	증기관 및 동부속품 (선용 및 발전용 제외), 타빈 (발전용 제외), 증기기관 및 내연기관 (선용 및 발전용 제외), 전도장치 (선용 제외), 범용펌프 (선용, 토목용 제외), 변압기 및 송풍기 (선용 및 토목용 제외), 원자로 단압기, 퇴, 로-루, 용접기계 (전기용접기 제외), 철판 (토목용 제외), 철탑, 제철기계, 용광처리기, 화학기계, 파쇄기 및 마쇄기 또는 선별기 (토목용 제외),

품 목	설 명
선박용기기	동동 및 공기조절장치(선용제외), 인쇄기계, 제판기계, 제본기계, 재봉틀(가정용 제외), 제화기계, 방직기계, 기구, 농업용 트랙터 선박관 및 동부분품, 선박용 증기기관, 선박용 내연기관, 추진용 주전동기, 추진용 발전기, 선용 휠, 선용 냉동기, 선용양화기, 선박관용 강압통풍장치, 복수장치, 선용 전도장치, 기타 선박용기기
차량 및 궤조	경편 기관차, 자동차(농업용 트랙터 제외), 화차, 기타 차량 및 궤조(토목기기에 속하는 것은 제외).
의료기기	의료기계 및 장치, 의료기구, 기타 의료용 장치 및 기구.
선박	선박.
특수용도기기	총기, 총기탄환용기계, 감시용기기, 기타 특수용도의 기기.
잡기기	타 품목에 속하지 않는 기계 기구

따라서 물품관리법 소관의 자산이라도 국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 및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물품과 경제재로 간주하기 힘들고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예술품, 서적, 골동품등은 군수품과 같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지방재정법 소관자산

지방재정법의 규제아래에 있는 자산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의 자산은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이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무형자산등 국부의 범주에 벗어나는 자산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의 대상에서는 국유재산의 경우와 꼭 같이 무형자산 등이 제외되었다.

한편 공유재산의 용도별 구분은 국유재산과 같이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및 보통재산(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종류 및 종목도 국유재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재정법의 규칙 아래에 있는 두 번째의 자산은 지방재정법상의 물품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과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재정법상의 물품중에는 금융자산인 현금, 유가증권 등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타 모든 사항은 국유재산법 소관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관자산의 조사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4) 교육위원회 소관자산

교육위원회란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지방자치 단체(시·도·군)와 교육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 단체(시·도·군의 교육구)로 크게 나눌수 있다. 그런데 교육구자치 단체 즉 각 시·도·군의 교육위원회는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소관자산도 사실상 지방재정법상의 재산과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교육위원회 소관자산의 방대성 및 자산형태의 동일성에 비추어 이번 조사에서는 독립된 조사대상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객체면에서 보면 문교부가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 및 기타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학교는 당 지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므로 당 지부에서 담당 조사하였다.

5) 영조물법인 자산

영조물법인이란 사회공익이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인적, 물적 요소로서 구성된 국가, 공공단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공법인이다. 따라서 넓게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영조물법인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컫는 영조물법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주식회사 등의 40개 국영기업과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조합등의 공공조합 그리고 반공연맹, 재향군인회등의 공공단체이다. 영조물법인을 독립부문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혹은 교육위원회재산과는 소유주체의 성격 및 재산관리체계가 상이하므로 조사면의상 독립시킨 것이다.

6) 도로자산

도로는 국유재산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를 별도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도로의 관리체계가 중앙 및 지방정부

로 분장되어 있어 물량단위의 수집에 있어 충복조사의 가능성이 컸을 뿐 아니라 취득시기 및 취득시 금액의 조사수집이 곤란하며 도로의 성질상 항상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상의 통일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도로의 추계범위 및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도로의 정의와 추계대상 범위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등을 일컫는다.

도로상의 도로부속시설(도로원표, 이정표등)과 도로와 상호효용을 겪하는 구축물(제방, 연제, 호안등)등도 도로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도 도로에 포함시켰으며 교량의 종류는 ①강교, ②철근콘크리트교량, ③식조교량, ④목조교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런데 사도는 물량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도로의 구분

도로는 인정노선등급, 포장상태 및 소재지역의 3구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로의 구분

구 분	도로종류	비 고
인정노선	1. 고속도	
등급별	2. 1급국도	
	3. 2급국도	

구 분	도로종류	비 고
	4. 특별시도 5. 지방도 6. 시 도 7. 군 도	
포장	1. 포장도	아스팔트
상태별	2. 사리도 3. 미개수도	콩크리트 석부
지역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9개 자도	

라. 조사대상자산의 분류

조사대상자산으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등과 같은 내구설비와 원재료, 원료등과 같이 소비 혹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상품등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있다. 이같은 사용목적상의 상이점에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을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또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건설가계정, 동물, 식물등의 9개 중분류로 나누었으며 재고자산도 원재료, 반제품 및 재공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의 4개 중분류로 나누었다. 그러나 정부 부문

조사에서는 물품관리법 소관의 자산은 동법의 분류방법 (중요물품 분류표 참조)에 따라서 조사표에 기재케 한 후 집계단계에서 조사본부의 국부자산분류로 전환시켰다. 한편 내용년수의 결정은 조사지침이 정한 세법상의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자산부문중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기계 및 장치」는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기관단위로 별도로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자산부문조사에서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국부통계조사본부가 정한 세법상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는 각 정부관서의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를 연구 검토한 후 별도로 정부부문자산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조사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조및용도	세목	내용년수	
유형고정자산	기계및장치	1. 철도업용			22	
		2. 체신사업용				18
		3. 기타일반관서용	A. 원동장치			20
			B. 변동장치			20
			C. 작업장치			10
			D. 동식인기계 기구			5
	E. 공장기계			17		
	F. 잡기계기구			10		

6. 조사방법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추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법인·개인등과 같이 소유자주의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때문에 추계의 기초자료는 소유주체에 따른 자산의 내용, 관리상황 그리고 추계상 이용가능 자료의 유무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 소유주체별로 제일 적격한 방법을 택하였다. 한국은행이 담당한 정부자산부문의 조사는 자계식 전수조사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처별로 선정한 조사원(조사표기입자)은 조사대상처의 자산 관리 담당 직원인 것이다.

한편 자산중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은 국부통계조사본부에서 통일적으로 결정한 재조달가격방식을 따랐다. 재조달방식(총괄편 참조)이란 취득시기에서 평가시기(1968년 12월 31일)까지의 물가변동율을 적용시켜(취득시 가액×물가배율) 총국부(Gross)를 산출한 후 다시 동기간의 감가정도를 감안(총국부×잔가율)함으로서 국부(Net)액 즉 재조달가격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재조달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①취득시기 ②취득시가격 ③취득시점 현재 평가자산의 신품여부 ④물가배율 ⑤잔가율중 다섯개 정보가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 다섯개의 정보중 뒷편의 평가치표인 물가배율과 잔가율은 이미 작성되어 있으나 앞의 세가지 정보는 조사상 수집가능한 부문과 불가능부문이 있게 된다. 따라서 취득시기, 가액, 신품여부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자산부문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실제재고 즉 장부상 가액자체를

평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원칙을 조사본부에서 정하였는데 정부자산부문의 재고평가도 장부상의 가액 자체를 그대로 재고평가액으로 취급하였다. 그런데 정부자산부문중 도로자산에 대하여서는 이 상에서 본 조사의 방법(평가방법을 중심으로)과 틀리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도로자산이 지난 특수성에 비추어 재조달방식을 도입·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기인한다.

7. 도로자산의 추계

도로는 국유재산의 한 부분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독립된 조사대상자산부문으로 취급하여 추계하였다. 도로의 추계는 우선 순도로(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물량자료 즉 도로의 연장, 폭원, 건설시기 등을 수집한 후 이를 물량자료에 해당하는 기준건설단가를 적용하여 순도로의 물가작업을 마친 후 교량평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따랐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순 도로

순도로라 하면 교량을 제외한 도로를 일컫는다. 따라서 순도로의 추계작업은 두개 구분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 바 순사리도 추계와 포장부분추계가 그것이다.

1) 순사리도의 평가방법

순사리도의 물량자료수집은 첫째 도로연장-교량연장으로 순도로연장을 구한 후 순도로의 평균로폭을 구하여 순도로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다음에 순도로 면적당 건설단가를 적용하여 순사리도의 평가액(Gross)을 구한다. 순사리도의 총평가액을 순평가액(Net)으로 계산하는 작업 즉 감가상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frac{1}{2}$ Gross = Net라는 Fifty Percent method를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도로가 개보수를 끊임없이 실시하는 대체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포장부분 평가방법

포장부분도 포장도연장과 포장로폭으로부터 포장면적을 구한 후 포장건설단가를 적용하여 Gross 개념의 평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도 Fifty percent method를 적용하였다.

나. 교량.

교량의 평가는 개별교량별 자료 즉 건설시기, 건설가격, 교량종류 등등을 구하여 기타 국부의 평가방법과 꼭 같은 재조달가격을 적용하였다.

제 2 절 대외자산 부문

1. 국부통계와 대외순자산

국부통계는 국내에 있는 실물자산을 일정의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자본「스토크」는 한나라 국민경제 내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국부통계는 봉쇄경제 (Glossed Economy)의 관점에서 추계되는 통계조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한나라의 경제는 그것이 완전히 고립된 입장에서 경제활동이 시종된다고 할 수는 없고 많던 적던간에 일정한 수준에서 다른 나라와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국부통계조사의 본래 목적이나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가 가지는 실

물보유잔액을 파악하는데 있다면 국부통계조사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산상태의 파악을 위하여서도 대외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의 국민경제에 있어 대외경제거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이같은 대외관계는 「흐름」의 통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에 흘러 주로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로 편제되었다. 물론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대외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느니만큼 그 기간동안의 거래관계의 과정과 그 귀결을 밝혀주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비록 일정시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할지라도 대외자산의 상태를 「스토크」의 측면에서 구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대외관계를 한편에서는 「흐름」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토크」로 계측함과 아울러 이들 두가지 통계를 서로 조정·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부통계조사에 있어서도 모든 경우 대외자산 상태를 감안하고 있다. 이것이 국부조사에서 대외순자산 통계이다.

한나라의 대외관계는 그 나라의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고 또한 「유출」과 「유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대외자산은 엄밀히 말하여 대외자산과 부채의 양면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대외자산조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조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상호관계를 대비하여 순자산을 산출하게 된다. 국부통계조사에서 궁극적으로 소요되는 대외자산은 바로 이 대외순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국부통계에 있어

대외순자산이란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대외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액을 가르키게 되며 다른 말로는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순자산(Net worth)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순자산을 조사하게 되었는 바 조사를 위하여 미리 설정한 조사 요령과 이에 따른 실제 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보기로 한다.

2. 대외순자산 조사요령

가. 대외순자산의 정의

대외순자산은 우리나라의 국부를 구성하는 중요 항목의 구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타난 대차관계이므로 다른 부문이 유형자산을 조사하는데 대하여 무형자산인 채권, 채무를 조사의 대상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의 대외적인 자산도 있고 반대로 부채도 있으므로 그 구성항목은 대외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져 되며 실제조사는 궁극적으로 대외자산 총액에서 대외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상하게 된다. 말하자면 대외순자산은 일정시점의 대외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나. 대외자산·부채의 범위 및 구분

대외자산·부채의 조사에 있어서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와 그 자산·부채의 소유자의 구분문제 그 밖에 표시통화등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대부분 국제적인 관계와 외국환 내지 외자관계법체계에 반영된 기준에 따라 협행 「외국환관리법」이나 국제수지의 폐제방법과 동일한 규칙을 따랐다. 그것은 대외거래가 복잡한 관계를 가지는데다가

국제적인 일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경우와 같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국제수지편제방침에 따르게 된 것이다. 특히 대외자산과 부채는 그 소유주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수가 있는 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주체의 구분 방법은 이 밖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경제통계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국적에 관계없이 그 주체의 경제활동과 그 결과가 어떠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에서는 거주자주의가 비교적 합리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러거래는 모두 거주자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다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외자산조사의 주요대상의 하나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 등의 외자는 관계법규가 국적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거주자주의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개의 외환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이나 부채도 있다. 이 자산과 부채도 미 「달러」화로 환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대외자산과 부채를 조사하는데 있어 중복 또는 누락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 혹은 단기의 기간 구분을 3년으로하여 나누었다. 3년이라는 분류기준은 잔존기간 즉 조사시점 현재에서 해당 자산·부채의 소멸시기까지의 기간이 아닌 발생에서 소멸까지의 상황기간을 내지는 자산·부채의 존재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 조사기준시점 및 방법

대외순자산의 조사시점은 국부통계의 실물자산 조사부문과 맞추

어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하였고 다행히 다른 외환통계도 이 기준으로 맞출 수가 있었다. 대외순자산의 추계는 기존통계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용토록 하였고 그렇지 못한 일부통계는 별도로 조사하여 대외자산과 부채를 산출하였다. 특히 통계기준이 다른 대외자산과 부채의 통계들은 본 조사지침에 맞게 조정하였다. 외자도입의 국적주의는 본 조사의 거주자주의에 맞게 재분류 하였고 미영여농산물의 원화예치금은 미불화로 환가한것 등이 그것이다. 대외자산을 차별에 그리고 대외부채를 대변에 나열한 대외대차대조표 형식으로 편제한 뒤에 대외순자산을 산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자산·부채의 사용자를 조사하느냐 소유자를 따라 조사하느냐하는 문제가 있으나 산 조사부문에서 소유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아니라 본조사의 성격에 맞추어 소유자주의를 따랐다.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대외순자산의 조사도 국부통계의 일환이므로 국민경제내의 대외적인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대외자산과 부채의 소유자에 대한 조사기준은 주로 거주자의 원칙을 따랐다. 그것은 이와 같은 거주자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의 기초통계 상호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편리할 뿐더러 「흐름」의 통계인 국제수지표의 기준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되는 경제활동의 본거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 거주자(Residents)의 주요예.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자연인

- 국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 입국후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파견국군
-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지사·지점·출장소 등.

2) 비거주자 (Nonresidents)

- 거주자이외의 개인과 단체로서 정확히 표현하면 거주자를 제외한 기타 세계의 거주자 (Residents of the rest of the world)이다.

마. 주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제기준으로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계가 결제기준으로 집계되어 이 기준에 일치시키기 쉬운 이 가지는 외에도 비교적 타당한 기준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제기전에 이미 자산이나 부채로 확정된 부문은 기준이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사도록 하였다.

○ 금은 「온스」(31.1035 g)당 35미불이 국제금공가로 평가하였다. 금의 경우에는 중앙통화기구의 화폐금융 (Monetary Gold)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비화폐금융 (Nonmonetary Gold)은 대외순자산의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유가증권을 액면가격으로 평가하고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미상환잔액만을 액면가격으로 평가하였다.

○ 외자도입 (재정차관·상업차관·비거주자직접투자)은 물자도착기준으로 파악하였다.

○ 미불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가할 때의 환율은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적용하였다.

○ 국제기구출자금은 기준환율 (Basion rate of foreign exchange)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가하였다. (「외국환관리규정」 제2조)

○ 불화이외의 외국동화로 표시된 기초통계를 미불화로 환가할 때에는 조사시점 현재의 IMF평가 (Far Value)를 적용하였다.

제 3 절 법인자산부문

1. 조사연혁

국부의 현재액을 포착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서구의 선진제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부조사가 연달아 실시·공표되었으며 현재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 광범하게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이래 처음으로 1968년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법인자산조사」도 1968년 국부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2. 조사목적

법인자산조사의 목적은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중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재조달가액을 원칙적인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법인자산액을 추계함으로써 법인자산의 존재량, 분포, 구성등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1968년 우리나라 국부의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시점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1968년 12월 31일을 조사기준시점으로 하였으며 조사실시는 1969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 까지 30일간에 실시하였다.

4. 조사 근거

이 법인자산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21 호의 2로 지정된 통계조사이다.

5. 조사 범위

196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법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가. 조사의 지역적 범위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우리나라 주권이 사실상 미치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하였다.

나. 조사 객체의 범위

이 조사의 조사 객체는 조사기준시점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객체인 법인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등의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및 조합등의 법인(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휴업중에 있거나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아직 설립중에 있어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국가로 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 즉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조합.

○ 대한산림조합, 토지개량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생산성
본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마사회, 수출조합, 벤호사회,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교육연합회, 한국반공
연맹, 군사원호대상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협연초생산
조합.

2) 다음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
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신탁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3) 영조물 법인

○ 국제판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무역
진흥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대한해운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대한
준설공사, 한국투자개발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항공공
사, 한국수산개발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4) 국영기업체중 다음의 중요정부 출자기업

○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대한중석광업주식
회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
사, 충주비료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대한염업주식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5) 외국법인

다. 조사대상자산의 범위

이 조사는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조사대상자산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산의 범위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하였다. 따라서 재고자산 이외의 유동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등)과 무형고정자산은 제외되었다.

6. 조사방법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법인의 본사 또는 본점에 대하여 소정의 조사표에 의하여 조정의 사항을 사업체별로 자세식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가. 조사단위 및 보고단위

이 조사의 조사단위는 사업체이고 보고단위는 법인의 본사 또는 본점으로 하였다.

나. 조사표

1) 조사표의 종류

이 조사에 사용된 조사표의 종류는 「법인조사표」, 「유형고정자산조사표」, 「재고자산조사표」의 3 가지이다(부록<3>참조)

2) 조사사항

가) 법인에 대한 일반적 사항

법인자산조사결과의 보정과 분석을 위하여 조사시점·현재 법인에 대한 다음 사항을 「법인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① 법인명칭

- ② 본사 또는 본점 소재지
- ③ 설립 년 월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⑤ 조직 형태
- ⑥ 결산기
- ⑦ 최근 결산서 공고신문명
- ⑧ 자산재평가 유무 및 재평가 년 월
- ⑨ 자산액 총괄
- ⑩ 사업내용
- ⑪ 관할 사업체 명부
- ⑫ 대차대조표
- ⑬ 조사표 작성근거

나) 유형고정자산 조사

유형고정자산의 조사는 조사대상법인이 조사기준시점 현재 소유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 1건마다 취득 연차별로 취득가액을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부록()>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① 조사자산의 범위

유형고정자산의 조사범위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였으며 토지는 토지종류별(대지, 임야지, 논, 밭, 기타)로 면적만을 조사하였다.

조사자산의 범위에 포함여부가 모호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한계를 지었다.

④ 미완성의 자산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미완성의 자산은 다음의 자산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① 공사가 완료되어 겸수인도를 받은 자산으로서 아직도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 법인이 직영공사 또는 자가제조로 취득한 자산

㉢ 제작 또는 건설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그 원재료 또는 자재등을 현물지급할 경우 그 지급 원재료 또는 자재등의 대가가 건설가계정 상에 계상되어 있을 때에는 그 대가액

④ 할부매입 고정자산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이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용에 제공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자산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할부로 매출한 고정자산은 아직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자산에서 제외하였다.

⑤ 타인의 전물에 시공한 조작물

전물을 임차한 경우 차주가 그 전물을 개조 모양변환 등을 조작을 가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조작물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대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작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기본적 지출로 보아 차주인 법인의 자산으로 조사하였다.

② 조사자산의 단위

유형고정자산조사는 자산 1건마다 취득연차별로 조사하였으며, 자산의 단위는 물리적으로 파악되는 1개의 재화가 아니고

그 재화에 대한 투하시기가 다른 각각의 자본적 지출을 각각 1개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조사단위로 하였다.

즉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한개의 재화라 하더라도 그 재화에 대하여 투하시기가 다른 자본지출 예를 들면 1965년에 하나의 전물을 구입하여 1967년에 개축을 하고 1968년에 증축을 하였다면 각 연도의 자본지출을 각각 하나의 조사단위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종류·품질·구조의 재화에 대한 동일연차의 자본지출, 예를 들면 1968년중 같은 종류의 자동직기 500대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조사하였으며 또한 공구·기구 및 비품에 속하는 자산에 있어서 내용연수가 같은 것은 취득연차별로 일괄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그 소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즉 수익적 지출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구입설치비 및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자본적 지출로 본 경우

-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② 에레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③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 ④ 재해등으로 인하여 전물, 기계, 설비등의 별실 또는 폐손에서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④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위의 예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 가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의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의 예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조사사항

① 자산의 종류

자산분류는 원칙적으로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에 준거하여 분류하였다.

④ 구조 및 용도분류

① 주거용 (111), 비주거용 (112)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연와, 석조 및 부록조, 철골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간이목조
등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② 건물부속설비 (113)는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또는
까스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의 설비 명칭을 조사하였다.

③ 구축물은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 시설, 발전용 또는

송배전용시설,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시설, 경기장 또는 유원지 용시설, 정원을 제외하고는 전물과 같이 구조별로 조사하였다.

④ 기계 및 장치는 용도별 설비별로 조사하였다.

⑤ 선박은 강선·목선별로 어선, 유조선, 약품조선등의 선박종류의 명칭을 조사하였다.

⑥ 차량 및 운반구는 궤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기타 차량등의 차량 종류명을 조사하였다.

⑦ 공구 기구 및 비품, 어구 및 어선용구는 용도별 종류명을 조사하였다.

⑧ 동물, 식물은 종류별로 조사하였다.

⑨ 세 목

자산의 구조 및 용도를 보완하고 내용연수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조사하였다.

⑩ 신품 중고의 구분

해당 자산이 취득 당시에 신품이거나 중고품이거나를 구분하였으며, 자산이 중고품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신축 혹은 신조로 부터의 경과연수를 조사하였다.

⑪ 연차별 취득가액

「구조 및 용도, 세목」란에 기입된 자산에 대하여 취득연차에 따라서 해당 자산별로 취득가액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취득연차에 취득 또는 투자(개축비등)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으로 중고품의 경우에는 중고품을 취득한 때에 지급한 가액을 조사하였다.

생산고 비례법에 의하여 자산의 감가를 측정하는 광업용자산(예: 강도등)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란에 「(광업용)」이라 표시하고 「내용연수」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취득가액 합계액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사하였다.

④ 자산의 사용

대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용자에 따라 자가사용, 정부, 법인, 비법인, 기계와 같이 5개부분으로 구별하였으며 대여했을 경우에는 대여처의 사업내용도 동시에 조사하였다.

⑤ 취득가액(연도) 불명 또는 전부화자산

① 취득가액 불명자산

조사한 자산의 취득연도는 알고 있으나 취득가액을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는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신품가격 또는 신조가격을 「재취득가액」으로 임주하여 조사하였다.

② 취득연도 불명자산

조사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알고 있으나 취득 연도를 모르는 자산은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종고인 상태 그 대로의 시가평가액을 조사하였다.

③ 취득가액과 취득연도 불명자산

취득가액과 취득연도 모두 모르는 자산은 196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시가평가액」을 조사하였다.

④ 진부화자산 및 재해에 의해서 특별상각의 대상이 된 자산

위의 자산의 경우는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평가액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진부화라 함은 발명 또는 발견에 의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또는 그 설비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잠소에 의한 설비의 가치하락등의 경우에만 한하였다.

ⓐ 토지면적

대상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 임야지, 논, 밭, 기타 별로 면적만을 평수로 조사하였다.

ⓑ 재고자산조사

재고자산은 조사시점 현재 조사대상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고자산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① 조사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법인이 외부의 영업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화이거나 수출입 또는 수송중인 화물이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하였으며 1968년 12월 31일을 전후하여 조사대상법인이 판매 또는 구입한 재화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아직 발송하지 않았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습이나 계약 내용에 있는 법인의 경우 미완성 및 완성공사 지출금은 재고자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사대상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류는 재고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② 재고자산의 조사방법

재고자산 조사는 원칙으로 조사기준시점 현재 법인이

실시한 재고조사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만일 조사대상법인이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⑨ 조사기준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실시한 재고조사의 장부가액 (예컨대 1968년 9월 또는 1969년 3월에 실시한 재고조사의 장부가액)

⑩ 실지 재고조사를 행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시점 현재의 장부가액

⑪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시점 현재의 시가평가액

③ 조사사항

① 자산의 종류

재고자산은 중분류를 원재료 반제품 및 재공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중분류안에 다시 품목별로 조사하였다.

② 품 목

조사대상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명에 따랐다.

③ 단위

각 품목별로 그 품목에 속하는 재화의 수량을 보통 상용적으로 쓰이는 단위로 하였다.

④ 수량

각 품목에 속하는 재화의 수량을 측정 기입하였다.

⑤ 장부가액

전술한 「재고차산조사방법」의 원칙에 의하여 각 품목

별 금액을 조사하였다.

㊂ 각 품목별로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평가액을 조사하였다.

제 4 절 개인자산부문

1. 조사의 연혁

본 개인기업의 자산조사는 1968년 국부조사의 일환으로 3차에 걸쳐 시험조사 <68.7.18, 68.8.19, 69.2.8> 를 거쳐 1969.3.18 개최된 통계위원회의에서 조사내용을 확정하였고 69.4.20부터 20일간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 조사 목적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일환으로서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 <이하 개인기업으로 약칭함> 가 소유내지 사용하고 있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조사하고 그자산을 재조달 가격과 재취득 가격으로 구분 평가 추계함으로써 국부추계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시점

1968년 12월 31일

4. 조사근거

개인기업자산조사는 통계법에 의거한 지정통계조사(지정통계)

21-3호)로서 실시하였다.

5. 조사범위

가. 조사지역의 범위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모든 영역에 걸친다.

나. 조사대상업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모든 업종

다. 조사업체의 범위

조사업체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각종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로 하며 그중 별도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 18,386개와 일부 전수조사업종의 사업체 6,352개를 포함하여 총 24,738개를 실사의 대상으로 하였음

라. 조사자산의 범위

개인기업이 소유 내지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이상의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6. 조사방법

가.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 업종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하였다.

나. 소유자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 면접식 타계주의를 채택하였다.

7. 조사대상업체의 선정

개인기업자산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사업체수가 방대하여 표본조사방법과 전수조사방법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수조사업종은 다음 3개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정책자료에 크게 이바지되는 수요업종

둘째·사업체수가 적은 반면 자산액이 큰 업종

세째·표본조사로써 추정이 곤란한 업종

* 전업종에 걸쳐 정확한 최근의 사업체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표본동·읍·면동 조사구에 대하여 사업체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조사대상업체선정을 위한 표본설계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기로 한다.

가·표본설계의 기본조건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 즈음하여 충족되어야 할 기본 조건으로 아래의 5항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첫째·주어진 예산규모내에서 최대의 정도(精度)를 얻도록 하며.

둘째·예산규모와 작업량으로 보아 600,000 개로 추정되는 모집단사업체중 약 25,000 개 정도를 조사한다.

세째·조사원은 400 명으로 하며 실사기간은 20 일간으로 한다.

네째·제표능력 및 제표기간

다섯째·추정치는 도별, 산업종분류별, 규모별(혹은 자산소분류별)로 얻도록 한다.

나·표본설계의 기본계획

표본설계의 기본조건을 만족하도록 표본을 설계함에는 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며 또한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이 조사가 통계조사로써 처음인 만큼 이의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표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더욱이 표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반면 추정하고자 하는 유별은 많았지만 국부통계조사가 처음 실시되는 통계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표본설계에 있어서는 설계작업량과 조사량보다는 정도를 높이고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추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다원적 표본설계방식을 택하여 표본설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중분류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표본설계에 있어서도 표본추출방법 틀 (frame) 추출단위, 충화의 기준은 공동으로 사용되었다.

다.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은 명부표본법과 집락표본법에 의하는 것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업종별로 사업체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모집단의 명부는 물론 그의 측정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주는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또 집락추출법에는 4개의 방법이 있으나 이 조사의 작업량과 규모를 참작하여 그중 충화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조사에서는 충화단순 집단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이 때 2단의 추출단위로서는 (사업체인 경우와 사업체의 집합인

집락으로서의 조사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작업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2 단의 추출단위로서 조사구를 택하였다.
이상을 표로서 나타내면 (표 1) 과 같다.

		추 출 단 위	틀
2 단집락	1 단	대 조 사 구	총별 대 조사구
추 출 법	2 단	표본(조) 조사구	대조사구별소조사구

라. 추출단위와 틀

1) 추출단위

가) 일차추출단위

원칙적으로 1 차추출단위는 동·읍·면등의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자료관계상 경계가 명확치 않는 것은 통합하여 별도로 하나의 1 차추출단위를 만들었다.

나) 2 차추출단위

1 차추출단위 안에 있는 사업체를 2 차추출단위로 하였다.

2) 틀

가) 1 차추출단위의 틀

1 차추출단위의 틀로는 전국의 동·읍·면등의 행정구역의 명부를 이용하였다.

나) 2 차추출단위의 틀

2 차추출단위의 틀로는 1 차추출에서 뽑은 표본 동·읍·면에 대하여 사업체 전수조사를 행한 다음 거기서 얻은 사업체 명부를 사용하였다.

마. 총화

총화방법에는 2단 집락추출법의 경우에는 사전총화방법과 사후총화방법의 두가지가 있으나 이 조사는 그 성격상 즉 지역별·산업별 특성치를 얻어야 하므로 제1차 추출단위를 총화하여 추출한 다음 표본1차추출 단위내에서 제2차추출단위를 추출하는 사전총화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각 산업종분류를 표본설계의 특성으로 하여 특성 하나하나에 대하여 총화작업을 독립적으로 행하였는 바 그 구체적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특성을 갖는 동·읍·면의 집단과 갖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고

둘째·특성을 갖는 집단을 다시 시도로 분류하고

세째·시·도를 사업체수에 의하여 총화를 하였다.

이 경우 도에 따라 약간 다르나 총화의 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총화의 기준

총 번 호	총의 분류번호	총 의 기 준
1 총	01	1 - 5개의사업체를갖고있는 동·읍·면
2 총	02	6 - 9 "
3 총	13	10 - 19 "
4 총	14	20 - 49 "
5 총	15	50 - 89 "
6 총	16	90 - 199 "
8 총	27	200 - 499 "
9 총	28	500 - "

바. 표본수의 결정

표본수의 결정방법으로는 목표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의 추출율로서 표본을 추출하는 Sample census Method를 택하였다.

즉 주어진 예산규모내에서 결정된 약 25,000 개의 표본사업체가 추출되도록 제1차추출단위 및 제2차추출단위의 추출율을 모수 (Parameter)에 관계없이 결정하였는데 표본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제1차 추출단위

제1차추출단위의 표본배정은 업종, 충내 1차추출단위당 평균 사업체를 기준하여 2차추출단위와 관련하여 배정하였다.

2) 제2차 추출단위

예산과 기타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업체를 약 25,000 개로 하였으면 이를 업종별로 배정할 때 사업체수와 업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웨이트를 주어 배정하였다.

사. 표본추출

1) 1차추출단위의 추출작업

표본설계의 특성 χ_i ($i = 1, 2, \dots, 32$)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i = 1, 2, \dots, 32$ 의 χ : 를 갖는 동·읍·면 집단충내 사업체수총에서 배정된 수 만큼의 동·읍·면을 독립적으로 뽑고 우단위총에 대하여는 표본을 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은 각 χ_i 에서 독립적으로 뽑은 표본 동·읍·면의 합이 된다.

2) 2 차 추출 단위의 추출 작업

표본 동·읍·면의 사업체조사에서 얻은 사업체명부를 다시 도별 사업체수 총별로 정리한 다음 이를 틀로하여 이틀에 서 배정된 표본사업체수만큼 임의로 추출하였다.

아. 추정 방법

가) 도별·업종별 총계

$$x^1 h_i = \sum_{j=1}^{8} \frac{Mhij}{mhij} \cdot \sum_k \frac{Nhijk}{nhijk} \sum_e x_{hijkl}$$

나) 도의 총계

$$x^1 i = \sum_{h=1}^{32} \sum_{j=1}^{8} \frac{Mhij}{mhij} \sum_k \frac{Nhijk}{nhijk} \sum_e x_{hijkl}$$

다) 전국업종의 총계

$$x^1 h = \sum_{i=1}^{11} \sum_{j=1}^{8} \frac{Mhij}{mhij} \sum_k \frac{Nhijk}{nhijk} \sum_e x_{hijkl}$$

라) 전국총계

$$x^1 = \sum_{h=1}^{32} \sum_{i=1}^{11} \sum_{j=1}^{8} \frac{Mhijk}{mhijk} \sum_k \frac{Nhijk}{nhijk} \sum_e x_{hijkl}$$

여기서

$x^1 hi$ h - 중분류

i - 도의 총계

$Mhij$ h - 중분류

총내모집락수

i - 도 j - 사업체수

$m_{hij} \dots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
 총내표본집락수

$N_{hijk} \dots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총
 K - 표본집락내의 사업체수

$n_{hijk} \dots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총
 K - 표본집락내의 표본사업체수

$X_{hijkl} \dots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총
 k - 표본집락내의 표본사업체수
 ℓ - 표본사업체특성치

단. 상업에 있어서만 특별조사구 추계치를 상기 추계치에 합산하였음

2)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병행한 업종

$$X_{hi} = \bar{X}_{hi} + [전수조사특성치의 합]$$

여기서 \bar{X}_{hi} 는 ①의 방법과 같이 한 표본조사분의 추정치

3) 전수조사업종

$$X_{hi} = 전수조사 특성치의 합$$

자. 표본오차

$$V^2 \chi^2 h = \frac{1}{\chi^2 h} \left[\sum_i \sum_j (1 - f_{hij}) \frac{m_{hij}}{f^2 h_{ij}} s^2_{hij} \chi^2 \right]$$

$$s^2_{hij} \chi^2 = \frac{\sum_{i=1}^L (\chi_{hij} - \bar{\chi}_{hij})^2}{m_{hij} - 1}$$

차 · 조사오차

이상의 표본오차 이외에도 오차는 조사의 각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오차는 그 크기를 수치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예상되는 각 단계에서의 오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조사대상파악에서 오는 오차

둘째 · 조사불능에서 오는 오차

세째 · 면접에서 오는 오차

8 . 용어의 정의

가 · 개인기업부문자산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공장 · 상점, 기계등의 개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법인격을 갖지 않는 모든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나 · 농림 수산업

개인기업부문조사에서는 농림 수산업을 규모로 보아서 기업성을 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조사하고 규모로 보아 일반가계적인 성격이 농후한 농림 수산업은 가계부문에서 조사하고 그중 소득 창출과 판매가 깊은 내구생산재와 동식물을 분리하여 개인기업부문에 첨가하였다.

제 5 절 가계자산부문

1. 조사의 연혁

국부통계조사중 가계자산부문조사는 기타부문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의 역할을 하고 개인기업부문조사와 시차를 두고 조사하여 두부문에서 상호 조사누락 또는 중복을 없애도록 68년 10월 31일을 기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68.10.5 개최된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8.11.7부터 20일간 조사하였다.

2. 조사의 목적

본조사는 각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가계자산과 농가 및 어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가구를 조사하여 국부통계조사중 가계소유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조사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1968년 10월 31일 현재

나. 조사기간

1) 준비조사

1968 : 11.7 ~ 11.9 (3일간)

2) 실사

1968 : 11.11 ~ 11.20 (10일간)

4. 조사의 법적 근거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지정통계 제21호의 4 호에 의한 것이다.

5. 조사의 범위

가. 조사지역의 범위

우리나라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전 영역

나. 조사 객체의 범위

1) 대상가구

전국에 거주하는 전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가구란 같은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적인 생활 단위를 말한다.

단·다음의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 단신으로 가제를 영위하는 가구

나) 군대의 시설내, 교도소, 유치장 및 소년원에서 거주하는 가구

나) 기숙사, 양노원, 학숙소, 기타 수용소 등의 집단가구

라)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등의 외국인 관리 및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가구

2) 대상자산

조사대상자산은 소유자주의에 의하여 조사기구의 자기 소유 자산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주택 건물과 내구 소비재만을 조사하였다.

가) 전 물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는 주택은 물론 다른 장소에 공가·대가·신축중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계용 주택 및 비주택 전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단·여기서 말하는 전물에는 지상전물만을 말하고 대지는 제외하였다.

나) 내구소비재

품 목	대 상 범 위
1. 장 농	시가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구입가격)
2. 화 장 대	3,000 원 상당 이상
3. 찬 장	
4. 탁 자	
5. 침 대	
6. 재 봉 기	
7. 한 복	신품으로 취득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8. 양 복	것으로 시가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구입가격) 3,000 원 상당 이상
9. 오 바	
10. 수퍼, 목도리	시가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 구입가격)
11. 시 계	3,000 원 상당 이상
12. 카 메 라	
13. 전 축	
14. 녹 음 기	

품 목	대 상 범 위
15. T V 수상기	
16. 라 디 오	
17. 전기 냉장고	
18. 전기 아이롱	
19. 스토브	
20. 선풍기	
21. 전기 빙사	
22. 에어콘	
23. 열총	
24. 피아노	
25. 올겐	
26. 응접셀	
27. 자전차	
28. 오토바이	
29. 승용차	
30. 금폐물	

다) 내구생산재 및 동식물

품 목	대 상 범 위
31. 원동기	
32. 양수기	
33. 분무기	
34. 살분기	
35. 제승기	

품 목	대 상 범 위
36. 입 칙 기	
37. 우 마 차	
38. 탈 곡 기	
39. 어 선	
40. 어 망	
41. 유 우	
42. 한 우	
43. 왜 지	
44. 유 산 양	
45. 탈	
46. 감 나 무	
47. 밤 나 무	

다. 조사사항

1) 가구에 관한 사항

가) 가구소재지

나) 가구의 영농구분

다) 가구주의 산업

라) 가구인원수

2) 건물에 관한 사항

가) 가구의 거주종별

나) 건축구조

다) 층수 및 건축연평수

라) 건축시기 (층·개축포함) 및 구입시기

마) 구입시에 있어서의 경과년수

3) 내구소비재 및 내구생산재에 관한 사항

가) 품종

나) 신·고구분

다) 수량

라) 시가

6. 조사방법

전국의 전가구 중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약 13,600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조사표에 의거 면접 조사하였다.

가. 표본설계개요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2단추출방법으로 1966년 인구 센서스에서 사용된 조사구를 제1차 추출단위로 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제2차 추출단위로 하여 총 13,600 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층화의 방법은 1966년 인구센서스에서 부대조사로 수집된 조사구별 특성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약 40,000 조사구를 385개의 집단으로 층화하였다.

층화의 자료로 사용될 조사구의 특성을 항목에 대하여 수집되었다.

1) 서부에서

가) 농가율

나) 자택율

다) 가구수

라) 지역적 특성

(즉 상가가구, 공장지구, 일반주택가구, 공영주택가구 및 난민주택지구)

마) 시장과의 거리

바) 지형(산 혹은 평가)

사) 대학과의 거리

하) T.V 의 소유물

2) 군부에서

가) 농가율

나) 가구수

다) 광산의 유무

라) 어업협동조합의 유무

마) 의사의 유무

바) 주산물 및 특산물

사) 시장의 유무 및 시장이 서는 빙도

아) 면사무소까지의 거리

자) 기 타

나. 평가방법

1) 건 물

원칙적으로 주택건물은 건조한 시기와 구조 및 건평수를 조사하여 평가기준표에 의거 추계하였고 건조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주택은 시가로 평가하였다.

2) 치정 품목 (내구소비재)

원칙적으로 시가로 조사하였는데 이 때의 시가란 조사시점 현재의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가격을 말함으로써 평가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시 조사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충분히 주어 가능한 한 통일을 기하였다.